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1-10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Ⅰ 중소벤처기업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ONTENTS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금융 지원 / 3

제1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7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8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16
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21
1-4 신성장기반자금 ····· 24
1-5 재도약지원자금 ····· 27
1-6 긴급경영안정자금 ····· 32
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35

제2장 신용보증 지원 ····· 39
2-1 신용보증 ····· 40
2-2 기술보증기금 ····· 44
2-3 지역신용보증재단 ····· 47
2-4 매출채권보험 ····· 50

제2부 기술개발 지원 / 55

제3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 59
3-1 창업성장기술개발 ····· 60
3-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64
3-3 산학연 Collabo R&D ····· 68

3-4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71
3-5 연구기반 활용 ····· 74
3-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77
3-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81
3-8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 85
3-9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88
3-10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91
3-1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 ····· 94
3-12 미세먼지 저감실용화 기술개발 ····· 97
3-13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지원 ····· 100
3-14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 103
3-15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 106
3-1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108
3-17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 112
3-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115
3-19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118
3-20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 121

제4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 125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126
4-2 뿌리기업 지원사업 ····· 132

제5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 139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140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 143
5-3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146
5-4 스마트 마이스터 ····· 148
5-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 150
5-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152
5-7 기술보호 역량강화 ····· 154
5-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158

CONTENTS

제3부 인력 지원 / 165

제6장 인력 양성 ····· 167

6-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168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 171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취업맞춤반) ····· 174
6-4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 177

제7장 인력유입 촉진 ····· 179

7-1 내일채움공제 ····· 180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183
7-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185
7-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 187
7-5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190
7-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192
7-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194
7-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196
7-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198
7-1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200

제4부 판로 지원 / 201

제8장 중소기업에 유리한공공기관 납품제도 ····· 205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206
8-2 직접생산확인제도 ····· 209
8-3 계약이행능력심사 ····· 211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 213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215
8-6 공공구매론(loan) ····· 216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 218

제9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 221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22
9-2 성능인증제도 ····· 226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228

제10장 마케팅, 홍보 지원 ····· 231
10-1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 232
10-2 혁신제품 유통플랫폼 ····· 235
10-3 온·오프라인 유통망진출 지원 ····· 237
10-4 정책매장(아임쇼핑) 운영 ····· 240
10-5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243
10-6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246

제5부 수출 지원 / 249

제11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다양한 수출지원 ····· 251
11-1 수출바우처 ····· 252
11-2 수출컨소시엄 사업 ····· 256
11-3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 259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261
1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64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267
11-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270

CONTENTS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 273

제12장 여성기업 지원 ····· 275

12-1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276
12-2 여성창업경진대회 ····· 279
12-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281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283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287
12-6 TV 홈쇼핑 판매지원 ····· 290
12-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292
12-8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 294
1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296
12-1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298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300

제13장 장애인기업 육성 ····· 301

13-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302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304
13-3 장애인 창업 육성 ····· 307
13-4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 310
13-5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 312
13-6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 314
13-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 316
13-8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318

제14장 지역기업 지원 ····· 321

14-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322
14-2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324
14-3 지역특화산업육성 ····· 327
14-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지원 ····· 332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 335
14-6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338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제1부 창업기업 지원 / 343

제1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 345
1-1 예비창업패키지 ····· 346
1-2 창업성공패키지 ····· 348
1-3 초기창업패키지 ····· 352
1-4 창업도약패키지 ····· 354
1-5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357
1-6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 359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361
1-8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365
1-9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367
1-10 창업성장기술개발 ····· 372

제2장 창업저변 확대 ····· 377
2-1 청소년 비즈쿨 ····· 378
2-2 창업에듀 ····· 380
2-3 메이커 문화 확산 ····· 381
2-4 실전창업교육 ····· 383
2-5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385
2-6 도전! K-스타트업 ····· 387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389
2-8 K-스타트업 ····· 392

CONTENTS

제3장 창업지원 인프라 ····· 393
3-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394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396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398
3-4 창조경제혁신센터 ····· 400
3-5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402
3-6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404
3-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406

제2부 **재도전기업 지원 / 409**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 411
4-1 재도약 지원자금 ····· 412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415
4-3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 417
4-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419
4-5 재도전성공패키지 ····· 421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소상공인 / 425

제1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 429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430
1-2 상권정보시스템 ····· 433
1-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436
1-4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438

제2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 439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 440
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442
2-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444
2-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446
2-5 나들가게 육성 ····· 449
2-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452
2-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455
2-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458
2-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461
2-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463
2-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465
2-1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467
2-1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469
2-1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471
2-15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 473
2-16 백년가게 육성사업 ····· 476

CONTENTS

제3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 479
3-1 희망리턴패키지 ····· 480
3-2 재창업패키지 ····· 483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485
3-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487

제4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 489
4-1 소공인특화자금 ····· 490
4-2 성장촉진자금 ····· 492
4-3 일반경영안정자금 ····· 494
4-4 청년고용특별자금 ····· 496
4-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498

제2부 전통시장 / 501

제5장 전통시장 지원 ····· 503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504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507
5-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509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 512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514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518
5-7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522
5-8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525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 528
5-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530

제3부 보증지원 제도 / 533

제6장 보증지원 제도 ····· 535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536
6-2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539
6-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542
6-4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544
6-5 플러스 모바일 보증 ····· 547
6-6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 549
6-7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 551
6-8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554
6-9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557
6-10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560

부 록 ····· 563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 564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568

CONTENTS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기 타 / 571

제1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 573
1-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574

제2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 577
2-1 거래 공정화 ····· 578
2-2 성과공유제 ····· 584
2-3 협력이익공유제 ····· 587
2-4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 589
2-5 상생결제제도 ····· 591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 593

제3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 595
3-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 596
3-2 벤처기업 확인제도 ····· 598
3-3 이노비즈 확인제도 ····· 602
3-4 메인비즈 확인제도 ····· 605
3-5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608
3-6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 610
3-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613

부 록 ····· 617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 618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 621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626

제 1 편

중소기업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1 부

금융 지원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 **200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3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4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만 지원됩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 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장기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3년이내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횟수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8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16
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21
1-4 신성장기반자금 ····· 24
1-5 재도약지원자금 ····· 27
1-6 긴급경영안정자금 ····· 32
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35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4조 5,9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5,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3,3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1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전략산업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 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고용인원 1인당 0.2%p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자금상담) 신청예약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지원금(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⑦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소재·부품·장비 대중소상생모델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u><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u>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⑩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 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예외)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⑬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⑭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은 횟수산정 예외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융자신청은 온라인신청예약 → 자금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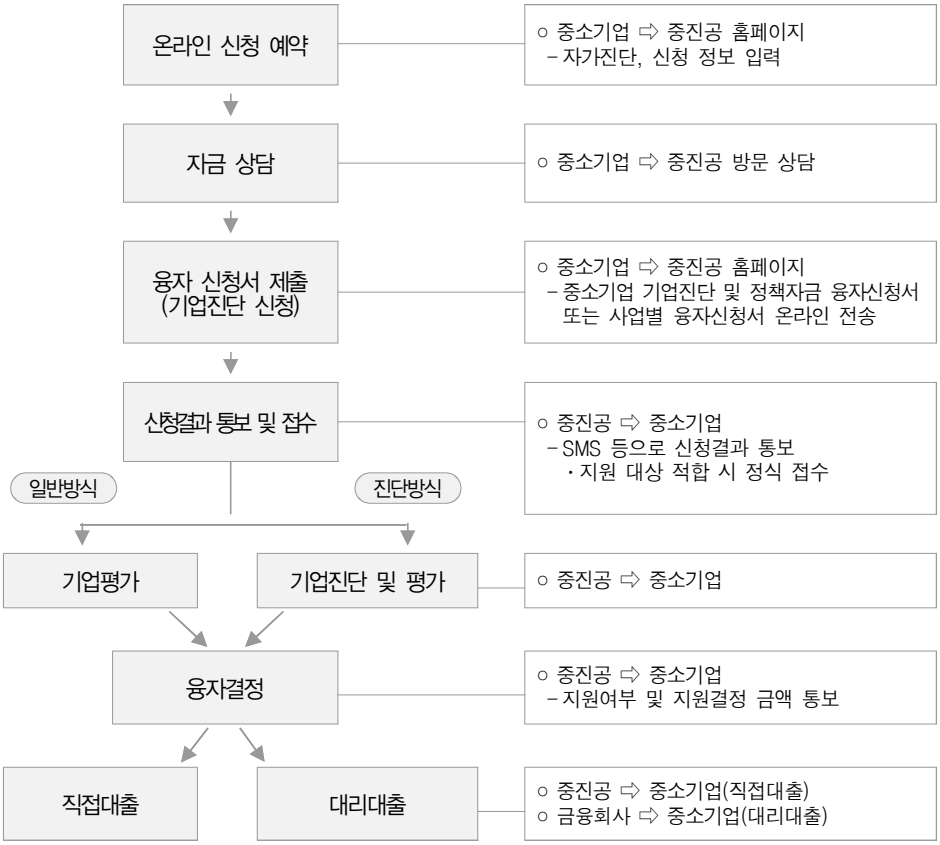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정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2조 5,5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002개사 중 10,1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 · 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 · 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 · 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 · 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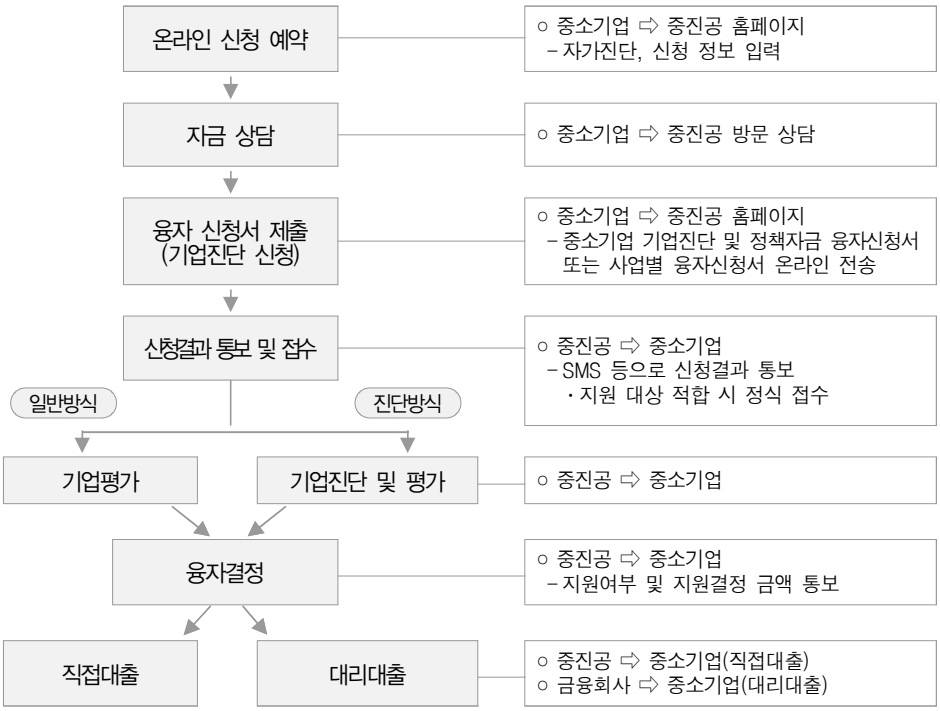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2,000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2019년 성장공유형대출 6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2.6억원

지원 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스케일업금융

✓ (융자조건) 대출기간 : 3년 이내 (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동화 후 자금지원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처리 절차

○ 성장공유형 대출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 투자심의위원회 (내부 위원회)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ed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4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13,3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820개사 중 1,69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1억원

지원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 · 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일본수출규제 품목 생산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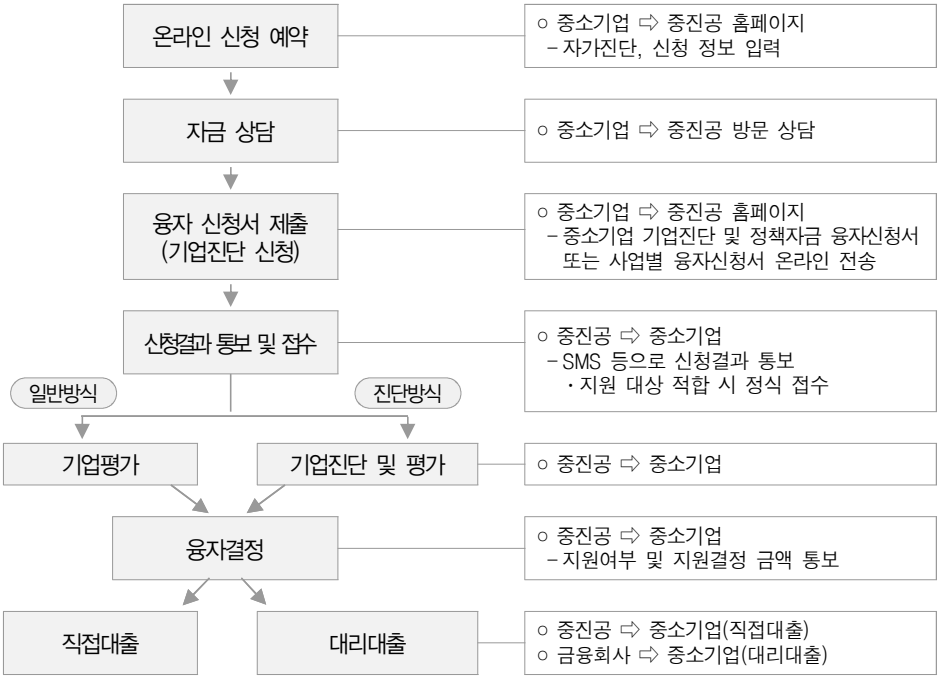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5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100억원

* 사업전환자금 96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구조개선자금 24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종업원 5인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⑥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단,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본사 : 055-751-9624, 9625, 9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6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 규모 1,0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13개사 중 1,11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융자 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피해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일본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단,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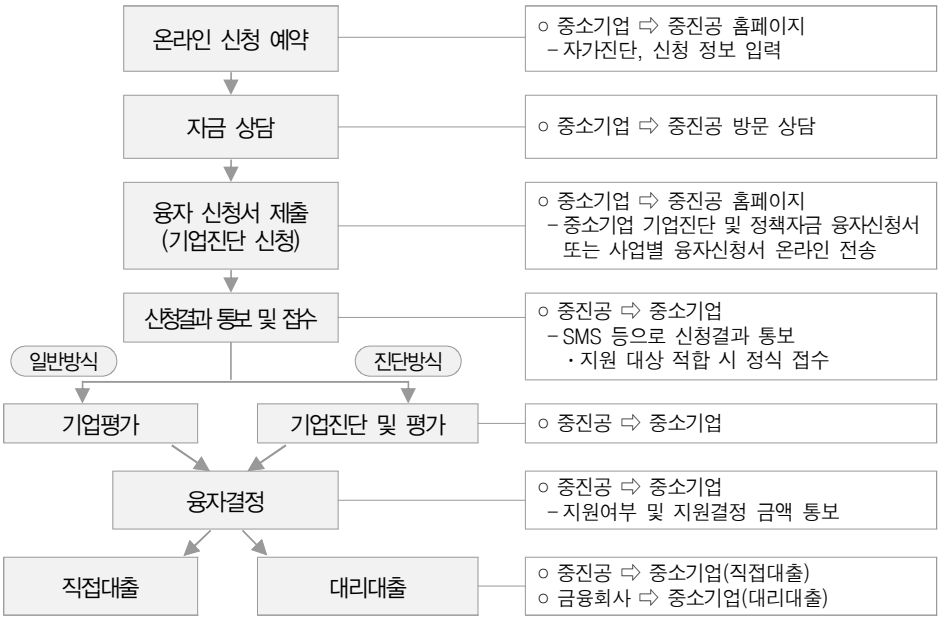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 · 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2,000억원

* '19년 지원현황 : 1,439개사 신청기업 중 1,335개사 선정지원(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1억원)

지원 대상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차세대 글로벌기업(직전년도 수출 300만불 이상) 육성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융자 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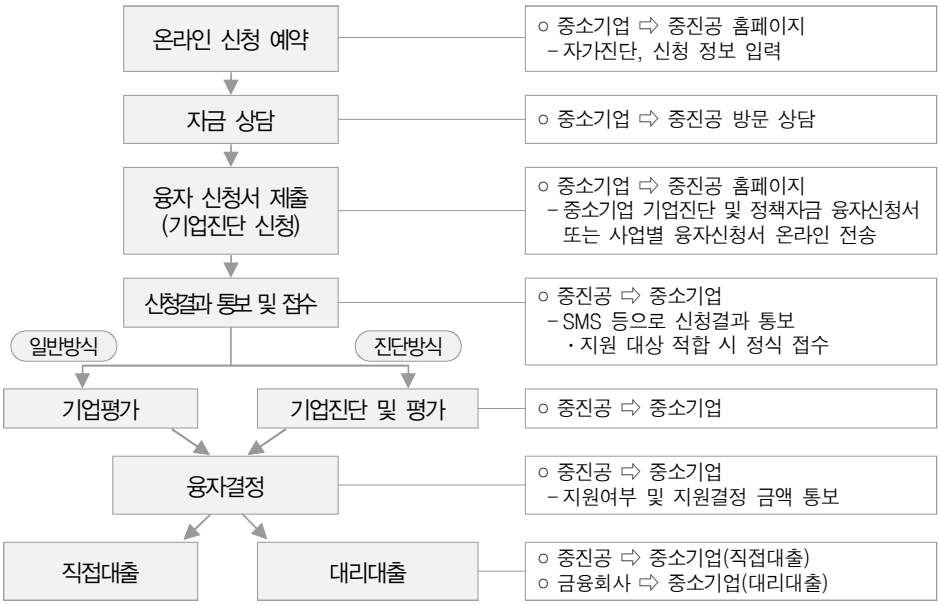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장

신용보증 지원

2-1 신용보증 ····· 40
2-2 기술보증기금 ····· 44
2-3 지역신용보증재단 ····· 47
2-4 매출채권보험 ····· 50

2-1 신용보증

|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9.3조원으로 운용예정

* '19년 지원규모(11월말) : 47.5조원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사실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년 기술보증 잔액 22.2조원으로 운용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별도)

* '19년 11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2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제외)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7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26.4조원)

* 햇살론사업자 포함(공급 0.3조원, 잔액 0.9조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 절차

보증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기업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기업대표자 상담 원칙)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및 거주주택) · 금융거래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등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및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A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저신용 무등록 사업자	■ 접수서류 후 지역신보에 송부 *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보

2-4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제한 사항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 험 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보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구 분		온라인 간편보험	온라인 심플보험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보험한도	보험계약자	200백만원	10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자의 구매자별	10~50백만원	20~40백만원	10백만원
	구매자 한도	30~200백만원	60~100백만원	30백만원
보 험 료 율		1.0~1.5%	1.1~1.5%	1.0~1.5%
신 용 등 급		(10등급 중) 7등급 이상	<좌 동>	등급산출생략
신용도 취약기업		가입 불가	가입 가능	가입 가능

○ **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성 보험**(B2B PLUS+보험) 출시

- (상품내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계약자가 B2B Plus+보험에 가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보험대상)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보험계약자) 당기말 현재 영업실적 1년, 신용등급 AR12 (UR7) 이상인 제조업
- (구매자) 당기말 기준 2개년 이상 재무제표를 보유한 AR11(UR6)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계약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ㅇ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ㅇ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제2부

기술개발 지원

함께 알아보는 기술개발지원

Q **LED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휴대폰용 LED 부품 개발 의뢰를 받아서 판매처는 확보되었는데, 저희 회사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A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 · 중견기업 등)로부터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발급받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참조)

Q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Q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A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Q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A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 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Q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A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참조)

Q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Q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A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3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화자문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3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3-1 창업성장기술개발 ····· 60
3-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64
3-3 산학연 Collabo R&D ····· 68
3-4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71
3-5 연구기반 활용 ····· 74
3-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77
3-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81
3-8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 85
3-9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88
3-10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91
3-1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 ····· 94
3-12 미세먼지 저감실용화 기술개발 ····· 97
3-13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지원 ····· 100
3-14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 103
3-15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 106
3-1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108
3-17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 112
3-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115
3-19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118
3-20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 121

3-1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4,598억원(신규 1,815억원, 계속 2,78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핀오프, 벤처 · 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TIPS 과제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5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디딤돌 창업과제(641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 · 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단,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기업 제외)

○ 전략형 창업과제(71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459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 · 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 · 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TIPS 과제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

○ 재도전R&D 사업이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 강화, 지원 요건(매출액 20억원미만) 추가 설정

현행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과제
창업기업과제	선도형 창업과제
	혁신형 창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

개선
TIPS 과제 (성장 단계)
▲ Scale-up / ▼ 차단
전략형 창업과제 (검증 단계)
▲ Scale-up / ▼ 차단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 초기)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디딤돌 창업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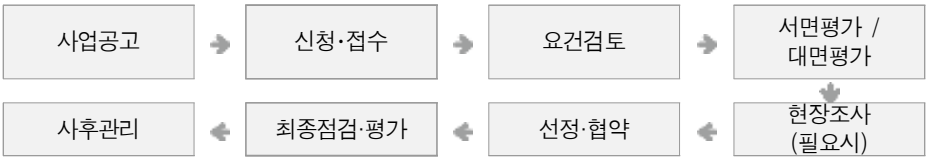

< 전략형 창업과제 >

< TIPS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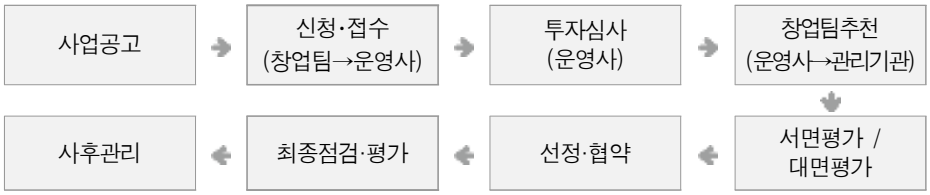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
-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 R&D는 2개 R&D 동시수행을 제한 (총 4회 졸업제 적용)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Q **디딤돌 창업과제 內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3-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025억원(신규 1,096억원, 계속 929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750개 중 520개 선정지원(3.4: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공고방식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15% 이상	2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계약서		65% 이내	35%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大 1:1, 中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수시접수*)

* 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 수요처 부담금 확대 : 수요처 부담 비중 상향(15%→20%) 및 현금 부담비율 60% 적용(5%→12%)

* 다만, 사전에 수요처와 구매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부담비율 상향 및 수요처 부담금 면제(정부 65%, 주관기관 35%, 수요처 0%)

○ 공동투자형(민관공동투자)

■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고, 과제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를 최대 3년 24억원* 까지 확대

* 정부출연금 12억원 + 투자기업출연금 12억원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20.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 기타 서류 등

처리 절차

< 지정공모과제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RFP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RFP 선정 (전문기관) →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 선정평가 (전문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자유응모과제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과제 제안 (중소기업) → 구매동의서 등 발급 (수요처, 투자기업) →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 선정평가 (전문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3-3 산학연 Collabo R&D

|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 규모 317억원(신규 317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제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 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 산학협력 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 · 기술 · 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 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 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화 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 ② 신청·접수 (전문기관) → ③ 선정평가 및 협약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 ④ 과제 수행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0% 과제만 2단계 사업화 R&D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예비연구 신청 시에 예비연구 수행 계획만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예비연구 신청 시에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단계 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작성하시면 되며, 상세계획은 1단계 예비연구 수행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어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 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4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선도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 규모 63억원(신규 63억원)

지원 대상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 전문연 연구기관

○ (참여기업) 사전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2단계)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 지원
- (3단계)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 한도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사전진단) 희망기업 진단	기업진단, 2백만원	100% 이내
(2단계, 기술개발) 산연협력 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75% 이내
(3단계, 사업화)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최대 1년, 1.5억원	65% 이내

* 주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하며 1단계 지원금은 기업진단을 주관하는 선도연구기관에 지급
* 3단계(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는 `19년에 2단계(산연협력 기술개발)를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도연구기관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단계 R&VD 지원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산연협력 적합도, 기술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단계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연협력 적합도, 2단계 개발결과물의 사업성, 기술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 ② 신청·접수 (전문기관) → ③ 선정평가 및 협약 (중소기업, 선도연구기관) → ④ 과제 수행 (중소기업, 선도연구기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는 선도연구기관에서 발굴한 과제를 자체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선도 연구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A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2~3월 중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용어설명

선도연구기관 :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위해 출연연·전문연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인프라 및 사업 추진역량 등이 우수한 기관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 창출을 추가한 '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3-5 연구기반 활용

| 연구장비, 장비전문인력의 공동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규모

132억원

지원 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 장비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대학 ·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지원제외 기업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60~70%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 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 이용실적의 10%를 연구기반 활용촉진비로 지급

○ (지원 내용) 장비 이용료 총액의 60~70%

구 분	기 준	지원 비율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부담금)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7,142천원 (2,142천원)	100,000천원 (30,000천원)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8,333천원 (3,333천원)	116,666천원 (46,666천원)

* 해당 금액까지 발행 시 국비 지원 한도는 공유확산형 500만원, 연구집중형 7,000만 원임.(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을 합산하여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신청·접수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신청 완료 후 요건검토 완료까지 7일 내외 소요

○ 공유확산형

① 참여기업 신청 (중소기업) → ②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Check List) 작성 (중소기업) → ③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 확인 / 선정 (전문기관)

○ 연구집중형

① 참여기업 신청 (공유확산형 참여기업) → ② 참여기업 추천 (운영기관) → ③ 추천서 검토 및 선정 (전문기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유확산형은 연구 장비를 활용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연구집중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Q **연구집중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유확산형 참여기업 중 운영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집중형 지원목적에 타당한 기업으로 추천을 받아야 참여 가능합니다.

3-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3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73억원(신규 120억원, 계속 153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393개 중 34개 선정지원(11.6:1)

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기획지원이 완료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수행기관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0백만원	90% 이내	10% 이상(현금)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 연차별 지원한도 없음(예 : 1년, 6억원 등 가능)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20.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성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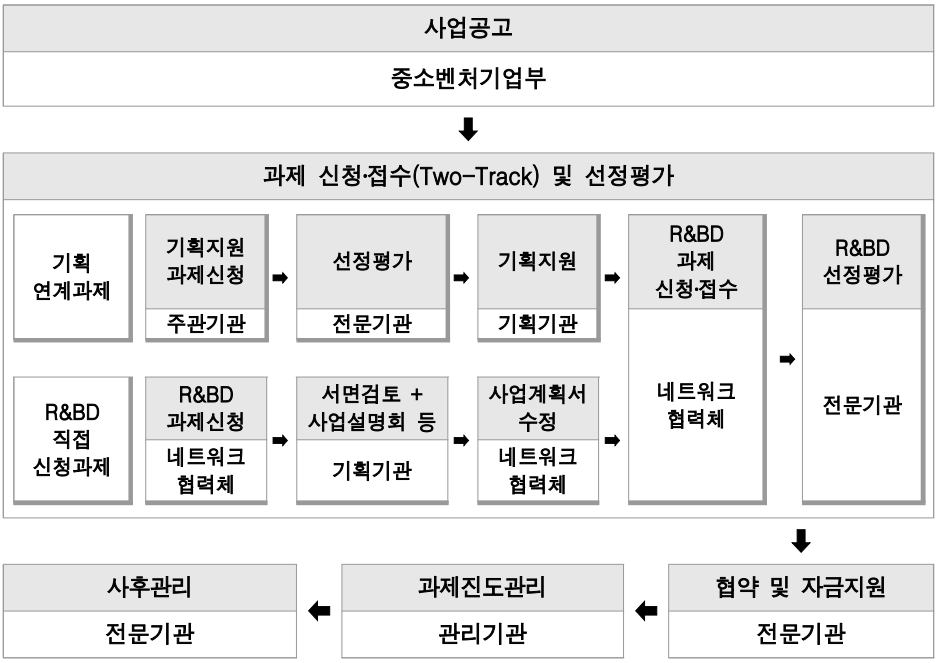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4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3-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혁신형R&D 및 현장형R&D 지원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지원 규모 총 396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98억원)

* 기획평가비 14.6억 및 회계연도 일치과제 98.5억 포함

○ 혁신형 R&D(213개 기업, 133억원)

○ 현장형 R&D(423개 기업, 16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제품·공정개선) 1,846개 기업 신청, 690개 기업 신규 지원
(뿌리기업공정) 343개 기업 신청, 101개 기업 신규 지원

지원 대상

○ (혁신형 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 (현장형 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혁신형 R&D(신규 133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조직(산 · 학 · 연)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공정혁신R&D지원

* 최대 2억원 한도(연 1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2년

○ 현장형 R&D(신규 164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최대 5천뭔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1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정혁신에 특화된 공정 R&D로 개편 : 제품공정개선, 뿌리기업공정기술 개발 → 혁신형R&D , 현장형R&D

○ 상 · 하반기 신청 · 접수 진행: 2, 7월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혁신형R&D	'20년 1월	'20년 2월, 7월 (2회 신청·접수 예정)	'20년 3월~8월	'20년 4월~10월
현장형R&D	'20년 1월	'20년 2월, 7월 (2회 신청·접수 예정)	'20년 3월~9월	'19년 4월~11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형R&D)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서면평가 후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등에 대한 현장심층평가

○ (현장형R&D)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등을 현장에서 평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등

처리 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신청서류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온라인 접수, smtech)
↓	
요건검토	전문기관
↓	
서면평가(혁신형R&D만 해당)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현장평가	전문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	
과제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	
과제관리, 최종점검	관리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6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 042-388-0761~076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3-8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AI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동력 확보

기존 제품 · 서비스에 AI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신제품 · 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 ·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49억원(신규 14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기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보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참여기업 등) 참여기업으로 AI전문기업 필요시 참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3-9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 기술 조기확보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 · 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 규모 125억원(신규 12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최대 2년, 8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75% 이내)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 · 부품 · 장비 분양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테브크릿지(Tech-Bridge)란?**

A 대학 · 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5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Q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KTRS 평가: 기보의 대표 기술평가모형(특허권 보유)으로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33개 소항목으로 구성

3-10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기획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컨설팅 연계 지원

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등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R&D 기획 · 수행 단계까지 기술개발과 규제 컨설팅 연계 지원

지원 규모 총 95억원(신규 기획과제 160개, R&D 60개 과제)

지원 대상

○ (기획기관) 시험 · 평가 · 인증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

*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리스트 공개 예정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이노비즈(Inno-Biz)기업

③ 벤처기업

* 신기술, 융복합, 기술적용, 인허가, 제품인증, 기준 복잡 등의 규제가 엄격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 분야를 중점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획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 규제내용·절차 검토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방법을 검토·제시할 수 있는 기관

- (1단계 : 과제기획)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제 내용 및 절차와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종합 검토 등 규제 대응 기획지원
- (2단계 : 과제수행) 선정과제에 대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 R&D 수행과 동시에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과제기획	3주 이내, 5백만원	100% 이내
(2단계) 과제수행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 (1단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단계별 평가 주요내용

○ (1단계 과제기획) 기획대상 서면평가 → 기획과제 선정

- 기술규제의 애로사항, 사업추진 역량, 기술개발의 요약, 기대효과 등을 평가

○ (2단계 R&D지원) 대면평가 → R&D 지원과제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 ② 신청·접수 (전문기관) → ③ 선정평가 및 협약 (중소기업) → ④ 과제 수행 (중소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기획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A 시험, 인증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을 지정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공고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Q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기술규제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에 선정된 기업 중 선정평가를 통해 약 37%정도 과제만 2단계 R&D+규제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구과제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나요?

A 네, 중소기업과 기획기관이 협의하여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면 됩니다.

3-1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

| 신산업분야 신기술 발굴 및 자회사 설립 · 육성지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확충

지원 규모 총 72억원(신규 10개 컨소시엄)

지원 대상 대학·연구소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예시) : 기술지주회사 (1개)+ 자회사(4개)

○ (주관기관) 기술지주회사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 (참여기업) 상기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기반의 신산업분야 발굴 및 자회사(출자회사) 설립 · 육성, 자회사(출자회사)의 사업화 R&D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	최대 3년, 30억 (컨소시엄당 연간 10억원 내외) * 참여기업에 85% 이상 지원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0년 1월	'20년 2월	'20년 2월~3월	'20년 4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과제 선정평가)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 역량 · 기획 · 활동 · 성과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증빙자료 포함)
-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증빙자료 포함)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 ② 신청·접수 (전문기관) → ③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④ 협약 및 과제 수행 (주관기관, 참여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알려줘요! 중기씨

Q **주관기관(기술지주회사)와 참여기업(자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출연(연) 등의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회사이며, 자회사는 기술지주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Q **주관기관(기술지주회사)과 참여기업(자회사)의 구성 및 사업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A 주관기관이 투자한 회사(자회사) 중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이 우수한 기업 4개사 내외와 협약하여 신청하고, 정부출연금 85% 이상을 참여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Q **연구과제 신청은 참여기업이 하나요?**

A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 사업비를 받아 참여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3-12 미세먼지 저감실용화 기술개발

| 국민생활공간 및 중소형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국민생활 밀착공간 및 중소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개선효과 증대

지원 규모 103억원 (신규 10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대응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제조 연소사업장의 오염원 제거기술 및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저감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배출 규모 4종, 5종 중소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 밀착공간(식당, 학교,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 개선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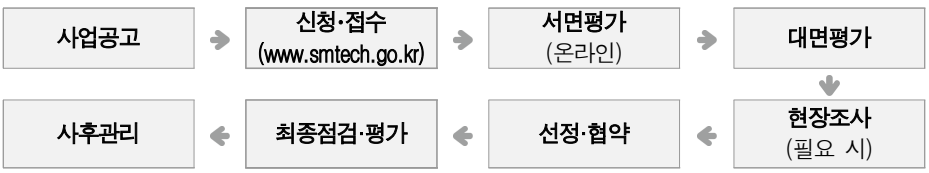

문 의 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미세먼지 배출업소 규모(1종~5종)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10톤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Q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공고문은 '19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어설명

미세먼지 대응기술 : 미세먼지(PM10, PM2.5) 및 관련 원인물질(SOx, NOx, VOC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술

3-13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모델을 개발하여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총 62.5억원(신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참여기업 및 위탁개발기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전략분야 설정 (품목지정)

-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사업성과 기술성이 높은 전략분야 지정

○ (2단계) 서비스 개발 지원 (R&D)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R&D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 비중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빅데이터기반 서비스 개발	최대 2년, 5억원 이내	65% 이내	35% 이상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6월	'20년 6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데이터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데이터 분석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BM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의 적정성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

○ (사업성) 사업화 전략 및 수익모델의 적절성, 과제 종료 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운영 방안 등,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업화의 적정성을 검토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 ·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 절차

① 품목지정	→	② 사업공고	→	③ 과제신청·접수	→	④ 선정평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⑧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⑦ 과제 진도관리	←	⑥ 서비스R&D수행	←	⑤ 협약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		수행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92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데이터 관련 업종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업종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모니터링, 시각화 등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본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활용 가능한 공공, 민간데이터 뿐 아니라, 자체보유데이터 및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3-14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 지역 대학을 활용한 맞춤형 R&D 종합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

지원 규모 60억원(신규 60억원)

지원 대상

○ (주관 운영기관)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권역별 1개씩, 총 5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수행 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핵심연구인력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지원제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사업수행 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 · 연구인력 · 장비 · 기술이전 ·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단계) 산학협력 기술역량 분석 : 산학협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전문가 공동으로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 1단계에서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중소기업 파견인력과 대학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

<지원 한도>

구 분	개발 기간 및 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기술역량 분석(기업진단)	1개월, 2백만원	100% 이내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최대 2년, 3억원	75% 이내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 운영기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맞춤형 R&D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관 운영기관 추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협력 적합도, 개발기술의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고용 친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선정평가 및 협약	④ 과제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중소기업, 주관 운영기관	중소기업, 주관 운영기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지원내용 중에 맞춤형 R&D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여건에 필요한 R&D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을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연구장비 이용 · 기술이전 · 교육 등을 선택 또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과제 수행 동안 중소기업 인력 1인 이상을 대학에 파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A 네 의무이며,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연구인력 1인 이상을 파견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주관 운영기관 : 지역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기술개발, 연구장비 지원, 기술이전,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의 권역별*로 1개씩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5개 대학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3-15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 예비가젤형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가젤형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성장을 위한 동력 확충

지원 규모 72억원(신규 72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 단,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6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75% 이내)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품목발굴·지정 → 사업공고 → 신청·접수 (www.smtech.go.kr) → 서면평가 (온라인) → 심층평가 → 선정·협약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0347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고성장 유망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여 품목 지정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1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단계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Scale-up 성장 촉진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 규모 2,441억원(신규 1,652억원, 계속 78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 ~ 700억원의 중소기업 중 500만불 이상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투자유치 등 시장성이 검증된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사업내 일부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별도 운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4년, 20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65% 이내)

○ 수출지향형(125억 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9억원)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788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구조개편으로 내역사업 개편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비고
수출지향형 (글로벌경쟁)	최대 4년, 20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시장확대형 (경쟁 단계)	최대 2년, 6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 활용
시장대응형 (역량 초기)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 ▸ 사업전환기업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 ·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기술개발 필요성,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친화도(고용창출 및 유지계획)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이노비즈기업 인증서(해당기업)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해당기업)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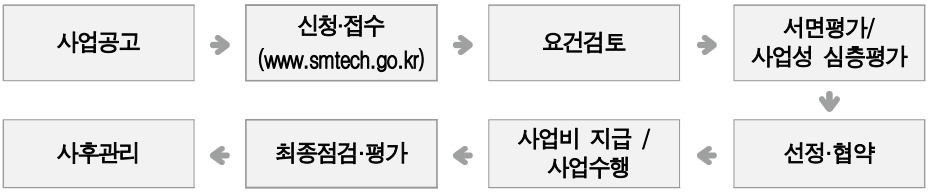

< 시장대응형, 시장확대형 기술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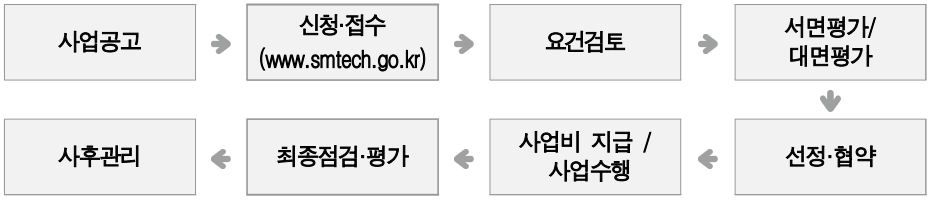

문 의 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Q 사업성심층평가가 무엇인가요?

A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신청기업과의 토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업현장에서 진행하는 평가방식입니다.

3-17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 · 확산 지원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을 대학 · 연구기관 · 조합(단체)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발굴 · 개발 및 보급 · 확산 지원

지원 규모 63억원(신규 6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1단계 : 과제기획)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 개발과제 기획

○ (2단계 : 공동수요기술 R&D) 공동수요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 · 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기술 개발

*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8개 권역. (권역별 최소 2개, 최대 4개 과제 지원)

○ (3단계 : 사업화 R&D 및 보급 · 확산) 공동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R&D 지원 및 지역 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에 보급 · 확산

단 계	지원대상	개발 기간 및 한도	정부 출연금
(1단계) 과제기획	컨소시엄*	6개월, 최대 0.3억원	100% 이내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대학·연구기관	2년, 최대 10억원	75% 이내
(3단계)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중소기업	1년, 최대 1억원	75% 이내

* (컨소시엄)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3개 이상), 지역 조합, 협·단체 등으로 구성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 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보급 · 확산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관련된 근거 서류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4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컨소시엄의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수요기술 R&D를 주관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사업화 R&D를 수행할 권역 내 지역 중소기업 3개 이상, 그리고 공동수요기술의 보급·확산을 수행할 지역 조합 또는 협·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Q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의 민간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사업화 R&D를 수행하는 기업(최소 3곳)과 지역 조합 또는 협·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용어설명

공동수요기술 : 다수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응용기술 또는 선행기술

3-1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한-러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기술 역량강화

러시아의 높은 원천 · 혁신기술과 우리의 ICT · 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 지원

지원 규모 24.4억원(신규24.4억원)

○ (기술진단기획) 약 25개 과제, 연간 3천만원 이내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약 13개 과제,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진단기획) 러시아 협력 원천 ·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로부터 기술기획 및 진단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러시아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진단기획	6개월 이내	30백만원 이내	100% 이내	품목지정
상용화기술개발	2년 이내	4억원 이내	65%이내	품목지정

*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중복수행은 불가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기술진단기획) '20.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상용화기술개발) '20. 1월 중 사전공고, 3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술협력의향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기술진단기획 추진절차 >

< 상용화기술개발 추진절차 >

현지 수요·공급 정보제공 현지기관	→ 사전검토 위원회 전문기관+검토위원회	→ 현지기술 사전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협력의향서 확보 참여희망기업
			↓
현장조사 전문기관	← 서면평가 전문기관	← 신청·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대면평가 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 (전문기관) 기정원 (상용화지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71, 0176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기술협력의향서' 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지원 시, 자발적 기술협력의향서는 러시아 현지기관과 기술협력을 위한 사전매칭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를 중복 수행 가능한가요?

A 아니오, 기술진단 · 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중복수행은 금지됩니다.
단, 기술진단 · 기획 혹은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완료 후 차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19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시장성이 유망한 해외인증 선별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69.75억원(신규 69.75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 · 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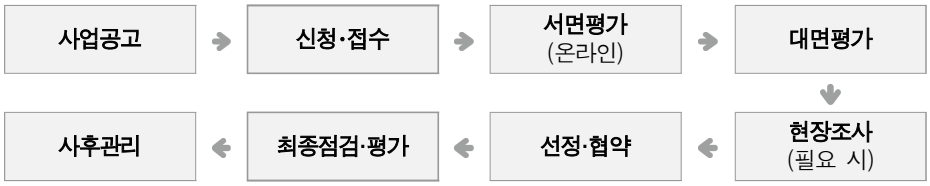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7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수출시 해외인증규격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예,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출시 CE, UL 등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인증제도(국가인증, 강제인증 등)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해외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3-20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처리·분석이 가능한 센서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45억원(신규 4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6억원 이내(정부지원금 비율 65% 이내)

○ 제조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신청 ·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0년 1월	'20년 2~3월	'20년 3월 ~ 4월	'20년 5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심층평가 → 최종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련 근거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www.smtech.go.kr)	→	사전 요건검토	→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사후관리	←	과제관리·최종점검	←	과제선정·협약체결	←	대면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관리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8955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34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스마트센서란?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 고정밀, 고편의성, 고부가가치 센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4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126
4-2 뿌리기업 지원사업 ····· 132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R&D 교육 및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38억원(신규 128억원, 계속 10억원)

- ○ R&D기획지원(38억원) : 130개 과제 내외 / 2,300명 교육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 ○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49억원) : 126개 과제 내외(R&D과제)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R&D 기획지원사업
  - ▪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공학컨설팅센터) 국·공·사립 공과대학 및 출연연
-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포항지역 또는 해당 시도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R&D 全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코칭

○ (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첫걸음 기획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1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매출액 50억원 미만	최대 9개월, 30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6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이내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혁신기업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2~8백만원	100%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위기지역 R&D 지원대상에 포항지역 중소기업 포함

■ 17년도 지진으로 인해 매출감소 및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사업계획서 신청 : 테크노파크 홈페이지(경남, 울산, 전남, 전북, 포항)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등록 완료 후 방문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R&D기획지원) 사업계획서 파트,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 (기획역량강화 교육)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해결계획서,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 · 조회) 동의서

처리 절차

○ 추진절차

■ R&D기획지원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②신청접수 (주관기관) → ③과제평가, 심의확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④ 협약체결 (기획기관/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⑤기획지원 및 사어수행 (기획기관, 주관기관) → ⑥최종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①사업계획수립/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②과제신청·접수·추천 (공학컨설팅센터) → ③심의·확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④협약체결 (공학컨설팅센터/참여기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⑤사업수행 (공학컨설팅센터/참여기업) → ⑥최종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②운영기관 적정성 검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③과제 신청접수·평가 (5개 TP) → ④협약체결 (5개 TP / 중소기업) → ⑤사업수행 (5개 TP) → ⑥성과평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추진일정

구 분		공모차수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 기획 지원	첫걸음 기획	1차/ 2차	'20.1월/4월	2월/5월	3월/6월	5/7월
	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	1차	'20.1	수시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2차	'20.1 / 6	2~3 / 6~7	3~4 / 7~8	5 / 9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1차	'20.1월	2월	3월	4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6, 0741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02-6009-3805, 02-6009-3807

○ 홈페이지

- (기획지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Scale-up) 아래의 각 지역 TP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남TP(www.gntp.or.kr)
  - 울산TP(www.utp.or.kr)
  - 전남TP(www.jntp.or.kr)
  - 전북TP(www.jbtp.or.kr)
  - 포항TP(www.ptp.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의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전략 · 분석보고서)를 과제 수행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Q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위기업종은 각각 무엇인가요?**

A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 · 고성, 전남 목포 · 영암 · 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조선 · 자동차 업종에 해당하며,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지역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Scale-up이란? :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4-2 뿌리기업 지원사업

|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뿌리기술의 육성과 발전 촉진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 인력 양성, 자동화 첨단화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중 아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정요건

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③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④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17.08.29)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지원 내용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

신청·접수 연중 상시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뿌리산업매출액확인서, 품목기술 설명서

처리 절차

회원가입	→	온라인 자가진단	→	전문기업 지정신청	→	현장평가	→	전문기업 지정
기업기초 정보입력		자가진단 (기술/경영)		지정신청 및 온라인 서류 제출		현장 및 서류검토		지정증 발급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중심형 뿌리기술 Academy>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지원 내용

○ 현장의 니즈, 기업별 업무환경, 개별 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뿌리기술, 설비운영, 공정개선, 기술보호 등) 제공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
기능·기술	뿌리기술	현장애로사항 해결, 현장개선, 기초기술이론, 기술고도화, 기술트렌드 분석, 자동화 공정설계, 에너지 관리 등
	기타	품질관리, 장비활용, 생산관리, 기술보호, 표준화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6대 업종별 교육기관 선정 후 재직자 교육 실시 예정

신청·접수 '20년 3월 접수 예정

* 신청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root-tech.org)를 통해 신청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뿌리기술 코칭>

지원 규모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업무환경, 고도화기술, 수행직무 등)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코칭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지원 내용

○ 뿌리산업 코칭전문가(교수, 연구원, 뿌리기술 명장 등)의 핵심공정별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재직자의 기술역량 강화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지원내용
뿌리기업	• 뿌리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니즈, 기업별업무환경, 개별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코칭 지원 •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관련 노하우, 공정개선 실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술명장 중심 → 전문가 Pool을 확대(교수, 연구원)하여 현장수요, 고도화기술, 수행 직무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코칭 실시

신청·접수 '20년 3월 접수 예정,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제출 서류 뿌리기업확인서(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뿌리기술코칭 신청서

* 신청접수 : 뿌리기술 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info.kpic.re.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맞춤형 코칭) 코칭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기술파급효과, 신청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평가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선정평가 (월 1회) → 선정통보 → 코칭전문가 매칭 → 현장진단 및 면담 (전문가) → 코칭계획수립 (협의) → 코칭수수료 청구 및 납부 → 코칭실시 → 현장점검 → 코칭종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현장중심형 Academys는 무엇인가요?

A 현장중심형 기술 ·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Q 뿌리기술 코칭은 어떤 전문가가 오시나요?

A 현장니즈, 기업별업무환경, 개별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코칭을 위해 교수, 연구원, 뿌리기술명장, 설비운영 전문가 등 이 함께 지도합니다.

3.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지원 규모 뿌리기업, 20개사 내외

* '19년 지원 : 23개사 지원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지원 내용

○ 수작업 공정과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기업 전반의 연속 공정 자동화 구축에 따른 설비 도입 및 설치 등 지원

* 지원제외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공간, 수작업기계류, 시험·검사 비용, 재료비, 인건비

○ 지원금액 : 기업당 1억원 한도(정부지원 50%, 자부담 50%)

○ 지원기간 : 8개월 내외

신청·접수 '20년 3월 접수 예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신청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기업의 3년간 재무제표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 실적 명세서 (직·간접 수출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구체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적절성, 공정개선 기대효과, 목표 달성률, 사업비 집행, 보급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

처리 절차

사업계획공고/신청·접수	서류 심사	발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종료 보고	성 과 발표회
구비서류 제출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회	사업주관기관 과제주관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과제주관기관 구축사례 발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뿌리기업 자동화 · 첨단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 「뿌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가능하며, 확인을 위해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를 통해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5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140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 143
5-3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146
5-4 스마트 마이스터 ····· 148
5-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 150
5-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152
5-7 기술보호 역량강화 ····· 154
5-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158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

○ 예산 : '20년 4,150억원(4,125개사 내외)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기업, 여성기업, 군수품 제조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IoT,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 **(정부지원)** 신규구축 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정부지원)** 고도화 기업당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상생형)** 신규구축 최대 0.6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상생형)** 고도화 기업당 최대 0.9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리 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	2. 평가 및 선정 (원가계산 포함) →	3.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4. 중간점검 →	5. 최종점검·최종감리 →	6. 완료 보고 및 승인

문 의 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5, 0853, 0861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 제조기업 공장 로봇자동화 지원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도입 지원', '로봇 활용교육' 등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월말 공고예정)

지원 규모

예산 85억원(30개사 내외)

* '19년 지원현황 : 전국 44개 제조기업 지원(예산 117.25억원)
* 3억원 내외 지원(총 사업비 6억원 내외) 시 30개 기업 내외 지원 예정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우선 지원 제조 분야

① 세계적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조 분야
②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③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④ 첨단제조로봇(협동로봇·무인이송로봇 등)을 활용하는 제조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 내용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내용 상세 >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로봇활용 교육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지원 조건

ㅇ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SI기업 등) 1곳 이상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신청·접수 제출서류 구비 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ㅇ 서류심사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사업비 심의

ㅇ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 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 견적서, 로봇자동화 시스템 사양서, 현금출자 확약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 지원

문 의 처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 053-210-9532(www.kiria.org)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요기업(또는 공급기업)이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 곳의 로봇공급기업이 다수 수요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참여기업(로봇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곳의 수요기업에서 다수의 로봇공급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Q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 현재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사업 내용 중복 불가)

용어설명

로봇공급기업 : 로봇을 직접 제조하는 로봇기업 또는 로봇을 공정별로 설치하는 기술을 보유한 SI(System Integration)기업이 해당되며, 수요기업에게 직접 로봇시스템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3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역량강화(컨설팅 지원)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지원 성과제고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 '20년 30억원(6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전략수립,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자문지원

- **(사전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전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인식제고,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
- **(사후컨설팅)**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구축효과 및 보안 ·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
- **(구축 중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과정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조건

○ 국비 50%, 지자체 40%, 민간자부담 10%(예산소진시까지)

신청 · 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신청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신청서(스캔본 등록)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컨설팅기관 모집 및 선정	③ 참여기업 모집	④ 컨설팅 계획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추진단	추진단	수행기관	신청기업 – 컨설팅기관

⑧ 최종심의 및 완료승인	⑦ 정부지원금 지급	⑥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⑤ 참여기업선정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선정기업, 컨설팅기관	수행기관

문 의 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1644-1736(일반문의), 042-388-0856

5-4 스마트 마이스터

|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대기업 퇴직전문가 파견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 '20년 약 70억원(8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 · 중견기업

*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 우선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등 부적합 업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대기업 출신 전문가(4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3개월간 파견(800개사)

■ 스마트공장 도입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현장개선, 기술애로 해결, 구축 全과정 지도 등)

○ (지원조건) 마이스터 3개월 인건비의 90%(837만원) 지원

마이스터 인건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100%(930만원)	90%(837만원)	10%(93만원)

○ (지원기간) 마이스터 기업당 파견기간 3개월(주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일은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신청 · 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

– 대한상의 중소기업제조혁신팀(www.sbmi.korcham.net)

* 단,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마이스터 활용 체크로 신청 완료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대한상의 중소기업제조혁신팀(www.sbmi.korcham.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구분	제출 서류
1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처리 절차

① 참여기업 모집공고	② 사업 신청 및 선정	③ 기업현장지원	④ 성과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참여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참여기업 스마트 마이스터	대한상공회의소

문 의 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1, 3855

5-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 기업 제조수준의 객관적인 진단 및 수준확인 지원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원 규모 11.9억원(1,190개사 수준확인 지원)

* '19년 지원현황 : 914개기업 수준확인 지원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지원 내용

○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및 로드맵 제공

- 수준확인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자격 부여 및 보증기관 보증료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 조건

○ 수준확인 비용 최대 80만원 지원

신청 · 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자가진단지 및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 자가진단지,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①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	② 수행기관별 사업공고	→	③ 신청기업 모집	→	④ 심사원 배정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수행기관 (수준확인기관)		수행기관 (수준확인기관)		수행기관 (수준확인기관)

↓

⑧ 최종완료	←	⑦ 확인서 발급	←	⑥ 심의위원회	←	⑤ 수준확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수행기관 (수준확인기관)		수행기관 (수준확인기관)		심사원

문 의 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5-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솔루션 지원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단체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솔루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화 애로 해소

지원 규모

40.6억원(10개 솔루션 내외)

* '19년 지원현황 : 12개 솔루션 구축 지원(스마트공장솔루션 8개, 공동활용솔루션 4개)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 포함 5개사 이상 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특화솔루션은 '13 ~ '19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는 신청 불가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다수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하도록 공정의 구성·확장·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지원

○ (공동활용 솔루션) 유사·동업종으로 구성된 협·단체 회원사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솔루션 구축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신청·접수 '20년 1월~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경영혁신플랫폼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6, 086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경영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www.smplatform.go.kr

○ 사업신청 및 과제관리 : it.smplatform.go.kr

5-7 기술보호 역량강화

| 기술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20년 50개사 내외, 해외연계 과제 포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19년 지원현황 : 55개사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 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신청·접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및 신청양식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② 신청·접수	③ 현장조사	④ 심사평가 및 원가계산
중소벤처기업부	컨소시엄, 수요-공급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원가계산기관

⑧ 사후점검	⑦ 최종감리 및 완료	⑥ 과제수행	⑤ 협약체결
운영기관	감리/운영기관	컨소시엄	3자간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4478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기술중재지원팀 : 02-368-8737

○ 기술보호 울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규모 무료(최대 5년간 지원)

* '19년 지원현황 : 7,559건(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진단 및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통합보안장비 미 보유 시 임대료(월9~13만원)는 기업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이동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악성코드 · 랜섬웨어 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기술 유출 예방 및 암호화 방지를 지원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 전송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접수	→	통합보안장비 로그연동	→	24시간 모니터링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접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	24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시 대응·통보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monitor@kaits-info.or.kr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5-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기술보호로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1. 기술보호 상담·자문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3일 무료, 이후 기업부담금 발생)

* '19년 지원현황 : 535건(11월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사전진단)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자문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안분야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신청·접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전문가 배정	→	현장 사전 진단	→	심화자문	→	만족도 조사
(연초)		(상시)		(1주)		(최대 2주)		(최대 4주)		(1주)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 내용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수 수 료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 기업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대전)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제출 서류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처리 절차

신청·접수	→	임치물 동일성 검사	→	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	→	임치계약 관리	→	임치물 교부
(상시)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내)		(필요 시)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53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알려줘요! 중기씨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 · 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 규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및 관련 소요비용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5천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94건('19.11월 기준)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상시 접수)

제출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① 신청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	② 서류검토 및 신청서 접수	③ 위원장 보고	④ 조정·중재부 구성
(안내문 송달)	(사건번호 부여)	(조정·중재부 장 지명)	(3~5인)

⑤ 답변서·보완서 접수	⑥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⑦ 조정·중재부 회의	⑧ 조정안 제시·중재판정
	(필요 시)	(참고인 조사 등)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지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393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 : 02-368-8768, 8706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4.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규모 100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휴 · 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기술유출 · 분쟁 등 기술침해 관련 법적대응, 지재권 분야 및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변호사 · 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 무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술유출·분쟁 등의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과의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등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지원 확대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 ② 법률자문 신청 → ③ 요건검토 → ④ 전문가 배정 → ⑤ 법률 자문 → ⑥ 자문결과 보고 → ⑦ 만족도 평가 → ⑧ 운영 관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39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제3부

인력 지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6장

인력 양성

6-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168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 171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취업맞춤반) ····· 174
6-4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 177

6-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채용연계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지원 규모 230개 특성화고(’ 20년 예산 : 346.4 억원)

* ’19년 지원현황 : 200개 특성화고, 338.5억원

지원 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참여 방법 ’20년 1월 예정

○ (학교)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기업) 참여 희망 기업은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통한 온라인신청)

참여기업 혜택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추진 절차

절차	내 용	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공고 • 사전설명회 개최	1월
↓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월
↓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2~3월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5월
↓		
사업비교부 (중진공)	•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5월
↓		
중간점검 (지방중기청→참여학교)	•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9월
↓		
사업비 정산 (중진공)	•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		
결과보고 (중진공→중기부)	• 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6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15, 9862, 986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확약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연계 전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용어설명

※ **취**업맞춤반

- 특성화고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생,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구분	내 용
학교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학생	기업 맞춤형 교육 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기업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 후 채용

* 3자협약 :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협약을 맺고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 교육 실시 이후 채용 연계되는 프로그램(선매칭-후교육-취업)

* 2자협약 :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맞춤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연계(선교육-후매칭-취업)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9개 전문대학('20년 예산 2,898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12개 사업단(12개 전문대, 17개 특성화고, 9백개 협약기업, 1.2천명 교육

지원 대상

○ 사 업 단 : 전문대(1개) + 특성화고(N개) 컨소시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중소기업

○ 학　　생 : 사업단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사업단(전문대 – 특성화고)이 현장 맞춤형 연계교육과정을 정규과정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참여학생은 특성화고 2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 가능

○ 중소기업은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

대 상	지 원 내 용
사업단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참여학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협약기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기업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 협약 가능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에서 최신정보 확인 가능

참여기업 혜택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자격요건 부여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확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36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나요?**

A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Q **중소기업에서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운영중인 전국 사업단 중 집중 양성 분야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참여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기술사관 운영 현황 (2019년 기준) >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	은평메디텍고, 경민IT고
부산울산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	-
	동의과학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	동의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울산공고, 서부산공고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	영남공고
광주전남	순천제일대학교	자동차기계	-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	평촌공고, 산본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	두원공고, 삼일공고, 이천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동통신	양영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충남대전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백석문화대학교	비즈니스콘텐츠	-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12개 사업단(전문대 12개 + 특성화고 17개)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취업맞춤반)

| 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전문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교육 실시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 가능한 기술인력을 양성, 채용 연계하는 사업

지원 규모 14개 전문대학('20년 예산 2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22개 전문대학, 1,200개 협약기업, 1,800명 교육

지원 대상

○ 대 학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추고 산학맞춤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 기 업 :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 학 생 : 참여대학의 차년도 졸업예정자로 군복무를 완료한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참여대학은 수요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 참여학생은 졸업대상자를 선발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 이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맞춤교육, 현장실습,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인력을 채용

구 분	지 원 내 용
대 학	• 학생연수비, 실습재료비, 학생활동지원비, 훈련지원금, 운영비등
학 생	• 협약업체 직무 맞춤교육 및 협약기업 취업 연계
기 업	• 산학협력프로그램 참여, 전문·고급기술인력 확보

대학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다운로드

대학 심사·평가

○ 서류점검 : 사업계획서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현장평가(20%)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 확인

○ 발표평가(80%) :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대상 대학 선별

기업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산학협력 유형을 선택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 및 참여학생 취업조건부 채용협약 가능

구 분	협회·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특화기능	• 대학과 협회·단체간 산학협력 체결 • 회원사 인력 수요, 공동채용 등 관리	•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체결 • 중소기업별 맞춤 산학협력체제 구축	• 협회·단체형 및 중소기업형 병행 • 참여기업의 50%이상이 회원사로 구성
공통기능	•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은 산학맞춤 기술인력 공급,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채용		

참여기업 혜택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확보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36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동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등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은 사업 참여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은 지정된 대학에 직접 문의하여 협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은 양성된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학과 사전에 산학협력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6-4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규모 전국 51개 주관대학 69개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20년 예산: 114억원)

* '19년 지원현황(가을학기 기준) : 51개 대학, 68개 학과, 참여학생 1,800명

지원 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정' 대학은 제외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학생 요건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지원 내용

○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등록금의 85%, 석·박사과정은 65% 이내 지원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백만원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1인 0.1%)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요망

처리 절차

계획수립 및 공고	→	주관대학 참여신청	→	현장조사/ 대면평가	→	주관대학 선정	→	학생모집 /운영
중기부		대학→지방청		지방청/중진공		중기부		대학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042-481-436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18)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현황

- http://sanhakin.mss.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제 7 장

인력유입 촉진

7-1 내일채움공제 ····· 180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183
7-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185
7-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 187
7-5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190
7-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192
7-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194
7-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196
7-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198
7-1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200

7-1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 공제 금리 : 1.37% (2019년 지급이자율 기준, 분기별 변동)

가입 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공제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부금 납입	→	공제계약 성립	→	매월납입 (60개월)	→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등 /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사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알려줘요! 중기씨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써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 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가입 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공제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부금 납입	→	공제계약 성립	→	매월납입 (60개월)	→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등 /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청년근로자				사업주/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7-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

지원 규모 '20년 250개사 예정(연 예산 2억원)

* '19년 지원현황 : 200개사 지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정 혜택

-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 ○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주요 일간지 보도 등 홍보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심의위원회	→	지 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준 정량·정성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지정

평가 방법

○ 정량·정성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량·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제출했던 자료를 점검

○ 평가 지표

부문	평가지표	증빙서류	구분	배점
CEO의 의지 (10)	1-1.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방문평가	정성	5
	1-2. 우수인재 확보 노력	방문평가	정성	5
이익창출능력 (10)	2-1. 매출액 증가율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2-2. 매출액 영업이익률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성과공유제도 (40)	3-1. 일자리 양 증가수준	고용영향평가지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정량	20
	3-2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실적	성과공유 실적	정량	15
	3-2. 미래성과공유협약	성과공유협약서 온라인 제출 (https://sanhakin.mss.go.kr)	정량	5
근무환경 (25)	4-1. 임금 수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정량	10
	4-2. 복리후생 수준	방문평가	정성	15
교육훈련 (20)	5-1. 교육훈련비	재무제표 등 교육훈련 관련 지출 증빙서류	정량	10
	5-2. 교육훈련 인프라	방문평가	정성	10
합 계				100

신청·접수 '20 하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후 신청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or.kr) 온라인 신청 접수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681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7

7-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 기업 현장중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지원 규모 전국 10개 컨소시엄(중소기업-대학원 컨소시엄) (예산 30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10개 컨소시엄(예산 30억원)

지원 대상 대학원(학과)-기업(기업부설연구소)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중소 + 대학원으로 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총괄책임(주관기관)은 대학원에 부여
- (연구인력) 최소 10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 조건(산학 공동 선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 산학 프로젝트 수행,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전 과정에 기업 참여를 보장
- 기업수요에 따른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참여학생의 실무능력 향상 유도
- 논문 부담 없이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학위 부여 (프로젝트 학위제 운영)
-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실습장비 및 재료비,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 컨소시엄당 연간 3억원내외 최대 5년이내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도 4개 컨소시엄 신규선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전산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세부내용 및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추후 변동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심의위원회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역량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공고 및 신청접수** (전담기관)	→	**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 →
사업수행 (대학원-중소기업 컨소시엄)	→	**정산/사후관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2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02-6009-33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사업에는 학부생도 참여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부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Q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되나요?

A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학원과 공동으로 산학공동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7-5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

지역내 우수 중소 · 벤처기업과 대학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활성화 지원

지원 규모 대학 컨소시엄 6개(예산 18.3억)

* '19년 지원현황 : 대학 TP-컨소시엄 등, 총 6개 과제(예산 18.3억원)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지원

* 지원기준 : 인턴기간(4개월)동안 인턴 교육비 지원(150만원×4개월), 수료시 전공학점 12학점 내외 제공 (학교 내부기준에 따름)
* 산업인턴 : 공과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ICT관련학과 제외)
*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정부 R&D사업 수행 중소·벤처기업으로 인턴에게 R&D 분야 직무 부여가 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처리 절차

기업 발굴,선정		현장 프로그램 개발		산업인턴 선발		이론교육 (Off-JT)		실무교육 (OJT)		산업인턴 평가		학점 인증
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	기업	➡	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	학교 등 연계	➡	기업현장	➡	사업주, 전문가 등	➡	대학
지역기업 연계				180명				4개월				

신청·접수 기업모집은 권역별 주관 대학교에서 별도 공지하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주관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 인천), 대진대학교(경기 · 강원), 한국교통대학교(충청권), 전북대학교(호남권), 금오공과대학교(대경권), 울산대학교(동남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2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산업인턴 참여학생 전공 제한이 있나요?

A 네, 공대소속 4학년생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산업인턴 현장실습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해당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R&D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7-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연구인력 130여명 내외(예산 71.7억원)

* '19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150여명(예산 82.8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 (인력)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추후 변동 가능, '20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 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지원 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기업별 1명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신청·접수 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은 변동 가능, '20년 공고문 확인 필요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파견 인건비 지원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8, 7386, 7382

알려줘요! 중기씨

Q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을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파견가능한 적정 연구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도 신청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지원자격을 유지합니다.

7-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규모 연구인력 768명 내외(예산 157.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711여명(예산 150.6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추후 변동 가능, '20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최대 3년, 2명이내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정부지원액) : 학사 3,000만원(1,500만원), 석사 4,000만원(2,000만원), 박사 5,000만원(2,500만원)(변동가능, 자세한 사항은 '20년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20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채용 인건비 지원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3, 7373, 7365, 7380, 746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7-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중소기업에서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경력을 보유한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

지원 규모 연구인력 230명 내외('20년 예산 84.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156여명(예산 56.7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출신,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3년 이상 경력자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추후 변동 가능, `20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5,000만원 한도)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20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채용 인건비 지원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 02-3460-9123, 9167, 908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7-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규모 700호 내외(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접수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or.kr)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 추천기준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제조 소기업 재직여부·수상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주택 배정 (연중 수시)	→	특별분양 공고 (연중)	→	추천신청 (연중)	→	심사 및 추천 (연중)
주택공급업체 → 지방청		지방청		중소기업근로자		지방청 → 주택공급업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19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통합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인시스템에서는 전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운영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지원 내용 휴양 · 여행, 취미 ·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대해 제휴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이용안내 참조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등

처리 절차

가입 신청 → 가입 승인 →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 서비스 이용

▪ 중소기업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임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임직원별로 개별 아이디를 발급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64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 02-6050-3455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 참조

제4부

판로 지원

함께 알아보는 판로지원 Q&A

Q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있는지요?**

A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Q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Q **2008년부터 기능성 등산스틱을 생산해 온 기업입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등산관련용품을 생산하는 몇 개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A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기업이 5개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한도 내에서 상표개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리며 공동상표의 홍보도 지원해드립니다.(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참조)

Q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A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 AS 지점망을 통해 AS콜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A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험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

Q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저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을받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Q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을 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A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와 판매전에 참여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회의 구매상담회를 통해 2,850개 업체를 지원하고 43회 판매전을 통해 54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구매상담회 지원 사업설명 참조)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마케팅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A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기획부터 상품 및 서비스 기획, 판로 개척 및 활성화 전략, 마케팅 문제 해결 등 총 4단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설명 참조)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8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206
8-2 직접생산확인제도 ····· 209
8-3 계약이행능력심사 ····· 211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 213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215
8-6 공공구매론(loan) ····· 216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 218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19.1.1~'21.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대상제품 지정 현황('19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레미콘, 아스콘 등)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경우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신청 서류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처리 절차

품목신청	→	신청접수	→	공청회, 추천검토,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조합, 협회,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품목추천	→	관리부처협의 및 지정검토,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개최	→	지정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546
-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원 규모 ('17) 27,395개사, ('18) 28,697개사, ('19.10) 22,391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신청·접수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심사·평가내용

-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신청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 절차

직접생산 확인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생산현장 실태조사	→	직접생산 확인 승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18
-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 02-2124-3251~9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8-3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심사 내용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10억원 미만 고시금액(2억원) 이상 : 입찰가격 60점, 납품이행능력 40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5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고시금액 미만 :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 30점 비율로 평가

* 신인도(+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7년 이내)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

제출 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처리 절차

입찰공고	→	응찰	→	개찰 및 심사대상자 선정	→	계약이행 능력심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공공기관		중소 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46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의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적격조합('19.8) 137개 조합, 116개 제품(중복 제외)

확인 요건

-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유의 사항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 내용

-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적격조합신청 (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적격조합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
수시					

구매정보망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적격조합일찰참여 (조합)
즉시		유효기간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6864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 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A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품목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상시 공고)

신청·접수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계약시스템' 에 신청

처리 절차

공공기관	→	중소기업	→	협동조합	→	공공기관	→	협동조합
추천요청		· 정보검색 · 추천신청		· 적격심사 · 추천		· 수의공고 · 견적접수 · 계약		계약결과 입력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546
-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8-6 공공구매론(loan)

| 중소기업 생산, 운영자금 지원 금융서비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지원 규모 ('16)1,121억원, ('17)1,130억원, ('18)1,098억원

지원 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조건 : 금리 및 조건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공공구매론 대출 후 본 계약과 관련된 선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대금을 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함

✓ 채권양도 및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지원 내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및 은행심사를 근거로 신용대출

○ 선금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선금수령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smpp.go.kr 접속)으로 신청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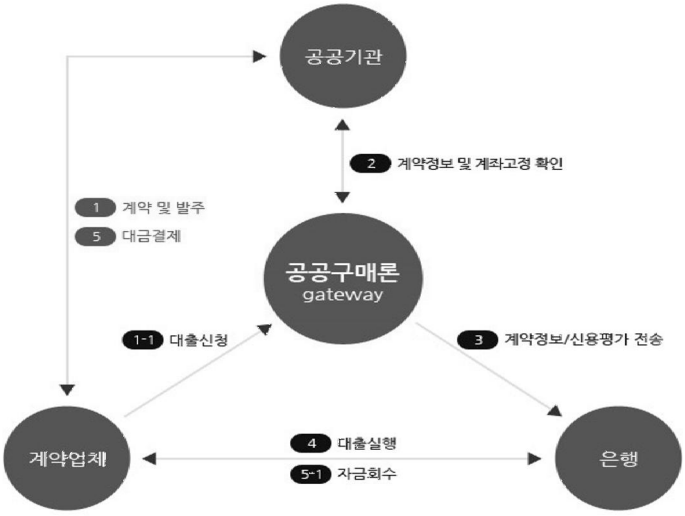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6864

○ 공공구매론 운영(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23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가요 ?

A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6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참여은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 · 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구매수요에 따른 지원규모

지원 대상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과제별 신청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기업

미대상 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지원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기업

지원 내용

○ (혁신성장형) 멘토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 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수입대체형) 소재 · 부품 국산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품질 및 혁신성 제고를 지원

*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역량강화형)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 제고를 지원

*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식

신청·접수 수시접수

심사 · 평가 주요내용 심사 평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평가표 및 점검 항목에 따라 대면평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추진

< 제도 참여시 우대사항 >

유 형	우 대 사 항
혁신성장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시 입찰가점 등 우대 부여 • 직접생산 확인기준 적용 시 특례 적용 가능 • 시장 지배적 현상 해소 등을 위해 입찰 참여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수입대체형	• 입찰 참여 시 입찰가점 등 우대 부여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품질 및 혁신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역량강화형	• 입찰 참여 시 입찰가점 등 우대 부여 • 평가등급에 따라 PQ신인도 가점 또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정거래 가점 부여 •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시 최소협상가격 설계보정율 추가 가점

제출 서류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멘토기업간 상생협약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및 제품규격서 등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자격검토	대면평가	현장평가
온라인 제출 (중소, 멘토기업)	신청자격 검토 (전담기관)	대면평가 실시 (신청기업,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실시 (신청기업,평가위원회)

점검 및 관리	중간 · 완료평가	공공조달 참여	지원대상 확정
실적점검·목표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중간·완료평가 (신청기업,평가위원회)	입찰참여·계약수행 (참여기업,멘토기업)	지원대상 심의 (신청기업,평가위원회)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42-712-5661 ~ 5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466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A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 그리고 공공조달시장의 수입산 소재 · 부품 국산화 및 창업기업 등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 만 아니라 소재 · 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어설명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Mentor-Protege program) : 소기업 및 신생기업이 대기업·조달 경험기업과 조달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미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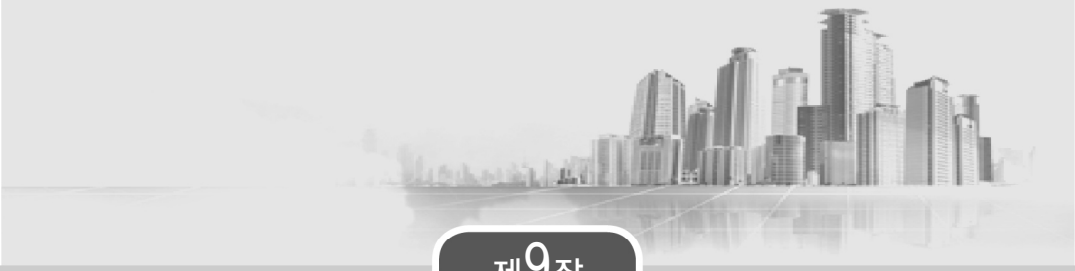

제9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22
9-2 성능인증제도 ····· 226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228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6종)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해당 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15) 3.11조원, ('16) 3.70조원, ('17) 4.50조원, ('18) 4.52조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8종

○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성능인증,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ICT 융합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국가R&D 혁신제품(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 중앙관서의 장 인증 필요),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구매조건부 R&D 사업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제품,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국가R&D 혁신제품 등 11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 18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처리 절차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 신청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www.smpp.go.kr)

문 의 처

○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9	대전·충남	042-865-6155
부산	051-601-5124	울산	052-210-0044
대구·경북	053-659-2233	강원	033-260-1641
광주·전남	062-360-9141	충북	043-230-5370
경기	031-201-6934	전북	063-210-6481
인천	032-450-1134	경남	055-268-2543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 NET (과학기술)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581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525
NET(교통)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044-201-3818	NET(환경)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72
NET(건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9	NET(방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NET(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1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4	우수산업 디자인상품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0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A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품질과 생산 이행능력을 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Q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A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우수조달물품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A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제품**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Q **녹색인증대상제품**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9-2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성능인증 취득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

지원 규모 발급건수 : ('17) 410건 → ('18) 443건

*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규격추가, 연장신청, 법인정보 변경 등으로 나뉘며 해당 건수는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신규발급, 규격추가,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20종

* NET, 적용제품, NEP, 특허제품, 실용신안제품,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제품 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지원 내용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신청·접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심사·평가 주요내용, 처리기간 등 기재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지방청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첨부서류 :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 → 적합성 심사 (전문기관) →

공공기관 규격확인 (전문기관) → 공장심사 / 성능검사 (전문기관) → 성능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팀 042-712-5641~5)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성능인증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 정도 소요됩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 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20~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 후, 공공기관이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66개 시범구매제품 선정(~'19년 누적)

- ○ 창업과제 : 43,970백만원 (~'19.10)
- ○ 일반과제 : 81,350백만원 (~'19.10)
- ○ 소액과제 : 7,598백만원 (~'19.10)

지원 대상

구 분	세부과제	지원대상
공고형 시범구매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일정금액(10~20억) 이하인 제품
소액 시범구매	소액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의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인 첫걸음 기업 (제 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벤처나라),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지원 내용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판로 개척지원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시범구매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첨부서류 : 시범구매 지원제도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참여 구매기관

<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 현황('19.11월) >

(단위 : 개)

행정기관				공공기관					합계
국가 기관	지자체	국가 의료원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16	245	1	1	33	41	13	24	1	375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자격검토	규격검토 (공고형)	구매평가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신청자격 검토 (중소기업유통센터)	규격 적합성 검토 (구매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고형 : 대면평가 소액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실적 점검	**구매계약**	**결과 통보**	**구매심의**
진도관리 및 최종보고	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심의 결과 안내 →구매기관, 참여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평가 결과 조정·확정 (심의위원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과, 042-481-8919)

○ 중소기업유통센터(공공구매지원팀, 042-712-5621~5)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시범구매

알려줘요! 중기씨

Q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뭔가요?

A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호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8종,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특허청 우수발명품**이 신청 가능한 제품으로,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Q 시범구매제품 자격 유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ㅇ **기술개발제품 18종**
: 인증(지정)기간 까지(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제품의 인증(지정)기간 만료시 만료되는 날)

Q 인증을 신청했으나 아직 인증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 시범구매제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시범구매제도 신청 시 유효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Q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 시, 구매기관과 100%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10장

마케팅, 홍보 지원

10-1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 232
10-2 혁신제품 유통플랫폼 ····· 235
10-3 온·오프라인 유통망진출 지원 ····· 237
10-4 정책매장(아임쇼핑) 운영 ····· 240
10-5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243
10-6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246

10-1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 국가공인브랜드를 통한 우수중기제품 판로지원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였음에도,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우수중기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공인브랜드(브랜드K)를 부착한 후 내수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50여개 제품 내외(예산 3.7억원 예정)

* 동일 업체라도 신청 제품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 별도 선발
* 지원규모는 '20년도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성,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조합·단체』

○ 국내 제조기업 또는 단체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Made in Korea)을 생산하는 기업 등

* 단, 기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명기 필요

< 'Made in Korea' 충족요건>

(ㄱ) 『Made in Korea』 요건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ㄴ) 『Made in Korea』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 국내생산 제품임을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생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예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동산업(68),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등 사행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내용

○ 『브랜드 K』 로고(상표) 사용권한 부여

- 현장 실태조사 등 품질인증과정 통과 후 상표 사용권 획득

* 단, 'Made in Korea' 제품으로 인정(제조 주요공정의 60%, 성분·원료의 60% 이상)되는 제품·기업에 한함

○ 주요 국가 행사 시 『브랜드 K』 전용관 설치 · 운영

- 해외인사 국빈 방문, 국제행사 등에 브랜드K 콘텐츠 활용 행사를 추진하고 브랜드K 제품으로 참여기회 제공

* 개별전시회 참여비용 지원 불가

○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공항 ·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상업시설 내 '브랜드K'전용 홍보관 설치 및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온라인 홍보 추진

○ 브랜드 K 참여기업 도약 · 연계지원

- 국내 유통망(TV홈쇼핑, 백화점, 동반성장몰 등)진출 희망 시, 입점연계 지원 및 해외 진출지원 사업인 '수출바우처' 선정 우대
- 대형유통망 연계 '온·오프라인 기획전', 중기제품 전용 정책매장 '아임쇼핑' (휴게소·면세점 등) 입점 신청 시 가점 혜택 부여

신청 · 접수 '20년 수시 진행(e-mail 등 별도 안내 예정)

○ E-mail(marketing16@sbdc.or.kr)을 통한 서류제출

○ 평가 및 선정방법 : 적격심사 → 서면평가 → 선정

* 단, 최종선정 전 생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예정(Made in korea 제품여부 확인)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및 선택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접수

○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OEM 계약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에 관한 증명서 등

○ (선택서류) 수출실적 증빙자료, 제품 카탈로그, 기타 제품관련 인증서류 등

처리절차

모집	→	적격심사	→	서면평가	→	품평회
'19년 12월		'20년 1월 초		'20년 1월 초		'20년 1월 중순

* 단,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 가능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44, 9346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및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0-2 혁신제품 유통플랫폼

|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우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 전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중소기업과 국내외 유통채널(MD)들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우수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3,000개 제품(예산 8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및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상품 중 '혁신제품 유통플랫폼'에 등록을 신청한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 식품,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상품정보 제공) 국내외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실시간으로 혁신제품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화) 창업·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선별,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등록정보를 유통MD가 상품성, 시장성 검증 후 DB화

신청·접수 수시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상품성, 가격경쟁력,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발굴 · 등록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정보카달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제품선별	→	DB표준화
1월		1~12월		4~10월		4~10월

문 의 처

-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833, 9835
-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아임스타즈에 가입조건이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하신 후 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0-3 온 · 오프라인 유통망진출 지원

|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진출을 통한 온라인 기획전, 특별판매전을 비롯한 오프라인 기획전, 대한민국 마케팅Fair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홍보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온 · 오프라인 기획전, 대한민국 마케팅Fair 진행 등 (예산 93.6억원 예정)

○ (온 · 오프라인시장진출) 온라인 기획전(온라인쇼핑몰 등) 170회/ 오프라인 기획전 연간 10회 등

○ (대한민국 마케팅Fair) 중소기업 200개 업체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 · 제조한 제품 등

○ (온 · 오프라인시장진출) 중소기업이 제조 · 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대한민국 마케팅Fair) 국내 중소기업 및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세부내용은 `20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온 · 오프라인시장진출)

- 온라인판매 관리지원,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TV홈쇼핑 방송지원, V커머스 홍보판매 등
- 민간유통채널(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및 공적유통채널(지자체 판매전 등) 진출지원

○ (대한민국 마케팅Fair)
-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중소기업 판로유공자 시상식, 히든 스타 상품 공개오디션 등 진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O2O 등 유통 트렌드 반영 온라인 기획전 확대 진행
○ TV홈쇼핑 방송지원을 T커머스까지 확장
○ V커머스 VOD제작·홍보지원 외 라이브 방송판매 지원으로 확장

신청·접수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세부일정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 혹은 마케팅지원사업 공고문 등 참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카달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증서류 등

처리절차

○ 온라인기획전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제품선정	→	사업진행
1월		2~4월		4~5월		4~12월

○ 오프라인기획전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판매전 POOL 선정	→	기획전 참여
1월		연중		분기별 선정		연중

○ 대한민국 마케팅Fai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상품선정	→
3월		3월~5월		5월	

간담회 (유통센터, 참여기업, 유통망)	→	부대행사 준비 (유통센터, 참여기업, 유통망)	→	마케팅대전 진행 (중소기업유통센터)
3월 ~ 5월		3월 ~ 5월		6월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온라인시장진출 : 02-6678-9326, 9324, 9325, 9329
- 오프라인시장진출 : 02-6678-9711, 9716
- 대한민국 마케팅Fair : 02-6678-9322, 9325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알려줘요! 중기씨

Q V커머스가 무엇인가요?

A 비디오(Video)와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거래행위를 포괄합니다.
최근 온라인시장 성장세에 맞추어 인터넷방송, 동영상광고 등의 영상제작 및 온라인쇼핑몰·SNS 등과 연계한 홍보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Q 히든스타제품TOP5 공개오디션은 무엇인가요?

A 국내 중소기업제품 중 아이디어가 넘치는 제품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끄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대상의 행사(공개오디션)입니다.
1차 전문가 평가 및 2차 중간평가를 거쳐 뽑힌 Top5 제품은 마케팅대전의 공중파 생방송에 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0-4 정책매장(아임쇼핑) 운영

| 중기제품전용 오프라인판매장 운영을 통한 시장검증(TEST-BED) 수행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인 '정책매장(아임쇼핑)'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홍보/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검증으로 테스트베드(TEST-BED) 기능을 수행

지원 규모 연간 3,000개 내외업체 정책매장(아임쇼핑) 입점지원 (예산 19.6억원 예정)

* '18년 지원현황 : 710개 업체신청 中 378개 신규업체 선정 (경쟁률 1.88 : 1)

지원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잘 판매될 수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소비재 완제품

* 규모 및 업태 : 중소기업(제조 및 유통사)
* 생산지 : 국내 제조 및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기업, 단순수입제품, 1차식품, 냉장냉동을 필요로하는 식품 등 제외
* 단, 선정심사 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점 가능

* OEM제품의 경우 증명서류 미구비시 선정제외 및 입점불가
* 상품선정위원회 시 반영되는 가점사항

가점 및 선정 필요자료(해당시 제출)	가점사항
스마트공장 생산제품	자동선정
창업사업관련기관(TIPS, 사관학교, 선도대학 등) 추천기업 추천서	자동선정
R&D 성공기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추천서	자동선정
경영혁신마일리지(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	최대 3점
지역특구소재기업(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준함)	1점
지역우수(스타)기업 (지역우수기업 지정서)	1점
여성대표기업(여성기업확인서)	1점
명문장수기업(명문장수기업확인서)	1점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선정 확인서	3점
마케팅역량강화 사업 완료 기업 중 우수 평가 기업	3점

지원 내용

○ 자체 판매장 개설이 어렵거나 신상품의 신규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제품 및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공간 제공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독립매장 또는 샵인샵 방식으로 매장 운영하며 전시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제공, 판매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판촉·홍보

○ 전매장 입점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반응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간 결과전달 및 레포트 추출 기능 구축(아임스타즈 마이페이지 활용)

○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다양한 기획전 및 판매행사 등을 통해 유통망 진출 및 판매성과 제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아임쇼핑 전매장 내 브랜드K관 개설

○ 아임쇼핑 매장 11개소에 '브랜드K' 제품관을 설치 · 운영
→ 국가주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의 판로확대 및 홍보전개

* 브랜드K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부족한 인지도로 인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그리고 중소기업이 민관합동으로 만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신청 · 접수 아임스타즈 홈페이지 (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집기간 : 상시

○ 처리기간 : 사업신청일자에 따라 처리기간 상이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한 당월 말일 상품선정위원회 평가 → 다음달 2주 이내 결과통보 예정

* 15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月) 다음달 말일 상품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 후 2주 이내 결과통보

〈심사·평가 주요내용〉

○ 매장별 입점가능업체수를 감안하여 적합성 30점, 상품성 30점, 마케팅력 30점, 수출잠재력 10점 (총 100점, 70% 환산) 및 고용지표(총 100점, 30%환산)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고용지표 : 중소기업고용영향평가시스템에서 일자리 양, 일자리 질, 고용질서 준수 등 각 항목 평가하여 책정한 점수 반영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아임스타즈 사업신청 시 서류 업로드

○ (필수서류) 대표상품기술서, 제품리스트, 희망매장표기서, OEM증명서

○ (선택서류) 제출희망 인증관련 서류, 수출실적인증서, 현대/신세계백화점 입점 필요 품목별 인증서류(품목별 인증서류 참고)

* 필수서류 미구비시, 상품선정위원회 담당자가 별도로 이메일 발송(미구비서류 요청)

* OEM증명서의 경우 국내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불필요

처리절차

○ 신청업체 입점 선정위원회 : 매월 선정 (필요 시 추가 개최가능)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입점업체 선정	→	매장입점 및 운영
1월		1 ~ 12월		매월 말 진행		1 ~ 12월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 - 9720~9729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0-5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제목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A/S 시스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50개 업체(예산 62.3억원 예정)

* 지원규모는 '20년도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제품 등)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등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 기업부담금 제도 시행 중(정부지원 70%, 기업 자부담 30%)

지원 내용

○ A/S고객센터를 통해 제품 사용법·고장·교환·반품 등 각종 고객민원 통합 대응 및 관리

○ 기업현황에 따른 맞춤형 A/S INSIGHT 제공

* DATA기반 민원 트렌드 분석, 제품인지도 개선을 위한 사후마케팅 지원

○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 A/S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체 실무자 대상 A/S핵심직무 역량강화 교육

신청 · 접수 수시모집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평가 시 접수한 증빙서류 및 업체 현황(사무실, 공장 등) 방문확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계약서(국내외 주생산만 해당),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최근 2년), 카탈로그, 기타 인증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현장조사 (사무실 및 공장 등)	→
1월		1~12월		1~12월	

업체 선정	→	업무협약 및 계약체결	→	A/S지원 * 매월 참여기업 비용 정산
2~11월		2~11월		2~11월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41~3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의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는 참여 후 3년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A/S 인프라 및 운영 역량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 3년 지원 후 2년 유예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답니다.

Q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신다면 아래 17개 품목(완제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기기, 멀티미디어, 차량제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제품, 소프트웨어, 산업용기기, 생활용품, 패션잡화, 뷰티, 홈인테리어 · 홈데코 품목

Q **아임스타즈를 통해 지원했는데, 그 이후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아임스타즈를 통해 지원해주셨다면, A/S센터에서 지원 제품(업체) 여부 등의 확인을 거친 후 3~4일 내에 전화로 회신을 드립니다. 업체 방문 일정과 서류 제출 등 이후 단계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6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소모성자재 납품기업(MRO) 판로지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케팅지원, MRO 납품관리 시스템을 통한 구매대행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900개사(예산 6억원 예정)

* '19년 지원현황 : 온라인 교육(100개사, 현장 컨설팅(80개사), MRO납품 관리 시스템(5개사), 입찰정보 분석제공 등 판로지원(640개사), 상담(75개사)

지원 대상 국내 소모성자재(MRO)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구매대행기업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재 구매대행업자

지원 내용

○ MRO 시장의 마케팅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및 1:1 컨설팅) 및 판로 지원 (공공기관 입찰정보 분석제공), MRO납품관리 시스템 지원 등 입체적 중소 납품업체 지원 서비스

○ 세부지원내용

분 야	내 용
온라인 교육	•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령 및 시스템 이용법 등 공공 MRO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 교육 - 조달입찰,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국제기구 조달(UN/주한미군) • MRO 물품 구매 관리, 물류 관리, 시스템 구축 등 MRO 시장 마케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분 야	내 용
판로정보 제공	• 구매기관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중소납품업체 현황, 취급제품 등 납품, 구매와 관련된 종합정보를 지원
현장 컨설팅	• 전문 MRO 구매 대행 업무를 위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취급 품목 및 목표시장 등 회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제시
MRO 납품관리 시스템	• 납품관리시스템 무료 사용 지원을 통한 고객사와 주문, 납품, 결제, 상품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활용

신청 · 접수 수시모집

○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 문의 필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

* 신청양식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 세부 공지사항 참고

처리절차

사업공고 (수시)	→	업체선정	→	지원사업 진행	→	사업결과 보고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중기부

* 지원사업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1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2-481-8969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 및 대표전화(1544-090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중소납품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납품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구매대행기업은 납품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구매대행기업이란 구매시스템 및 물류/배송 체계을 구축하고 있거나 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소모성자재 납품기업입니다.

※ 구매시스템 : 계약을 통한 B2B 구매대행을 영위할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종 소모성자재의 상품소싱, 주문, 배송, 정산, 거래처관리, 실적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

※ 물류/배송 체계 : 구매시스템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주문사에 전달하는 수송 및 보관체계

Q **비소모성자재로 분류되는 물품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A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원자재(건축 철강, 목재, 시멘트, 모래, 석유, 석탄 등) 및 식자재, 간행물(신문, 잡지 등), 유형고정자산(선박, 차량, 전동차, 기계설비 등)

용어설명

소모성자재(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MRO) :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

제5부

수출 지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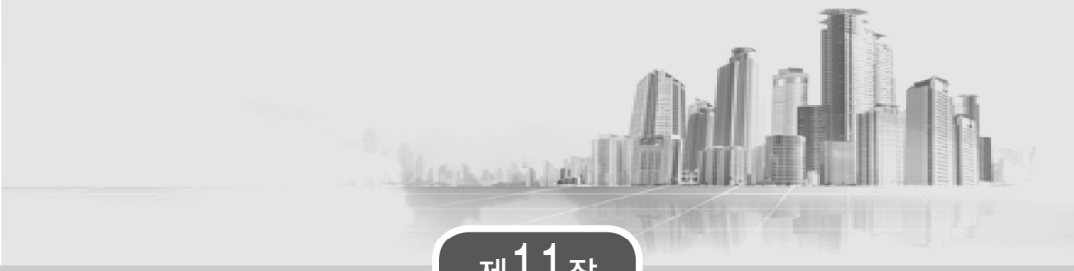

제11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1-1 수출바우처 ····· 252
11-2 수출컨소시엄 사업 ····· 256
11-3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 259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261
1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64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267
11-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270

11-1 수출바우처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수출규모별(스타트업,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934여개사(전체 예산 998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스타트업	43억원	141개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창업 7년 이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	최대 3,000만원
내수기업	253억원	936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초보	237억원	878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유망	216억원	48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5,000만원
수출성장	139억원	279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8,000만원
글로벌강소	110억원	22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1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최대 1억
합 계	**998억원**	**2,934개사**		

* 브랜드 K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동일한 수출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공고 시 예외로 정한 별도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외국어 포장 디자인, 홍보·광고, 전시회, 인증 등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 (VAT 별도,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70%, (100억~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 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 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영역	지원항목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 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 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 방식 수출바우처사이트(www.exportvoucher.com)를 활용, 디자인개발, 시장조사, 수출전략,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바우처 :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신청·접수 '19.12월, '20.5월(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출마케팅 활동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콜센터 1357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62-8580(www.exportvoucher.com)

알려줘요! 중기씨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 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1-2 수출컨소시엄 사업

|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사후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140개 컨소시엄 내외, 155.5억원

* '18년 지원현황 : 63개 컨소시엄, 총 60억원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중소기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상담장 임차·장치, 차량)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비율 : 사전준비 50~70%, 현지파견 50~70%, 사후관리 50~70%

사전준비(1단계)		현지파견(2단계)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비용**	⇨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상담장 임차·장치, 차량) 등 **현지파견 비용**	⇨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 비용**

신청·접수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주관단체→참가신청"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정보→수출컨소시엄→참가신청"

○ (오프라인) 사업모집공고 신청 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 제출
- 주관단체 :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각 지방청으로 제출
- 참여기업 :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제출 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 단체별 요구 자료

처리 절차

○ 전체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19.11월		'19.11월		'19.12월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	컨소시엄 파견·사업수행 (주관단체·참여기업)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20.1월		수시('20.1월~'21.2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

○ 참여기업

신청 · 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선정평가 (컨소시엄별 주관단체)	→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총 사업비의 약 30%)
'20.1월		'20.1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3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 온라인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스타기업 육성, 온라인수출 교육 강화 및 공동물류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820개사(359억원)

* '18년 지원현황 :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2,011개사, 독립몰 육성지원 47개사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독자적인 글로벌 쇼핑몰 계정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계정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전문셀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수출을 지원

○ (온라인수출 기업화) 글로벌 플랫폼(B2C, B2B) 입점을 위해 온라인수출 교육, 중점대학 운영, 글로벌 플랫폼 계정 생성 및 마케팅 등 지원

○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자사 쇼핑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축 및 마케팅 등 지원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 집적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전시회) 3D 등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별,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 상시 개최 지원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 상품의 시장 경쟁력(수출품목 시장성,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해외규격인증 획득 여부, 현지어 포장) 등

○ 스타기업 육성 : 주요 수출국, 해외시장 진출 준비현황(현지어 포장, 메뉴얼 보유), 무역 및 마케팅 인력 현황, 온라인 마케팅 활용 계획 등

○ 온라인수출 기업화 : 수출준비도(외국어 포장, 홈페이지 보유여부), 상품성(상품경쟁력, CS 대응) 등

○ 공동물류 : 주요 수출국, 역직구 쇼핑몰 사이트 보유 여부, 월평균 배송물량, 이용희망 물류사 등

○ 온라인전시회 : 사업성(시장니즈, 진입가능성), 기술차별성(제품 경쟁력), 수출준비도(수출전문인력, 인프라)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서류평가, 선정위원회 → 사업설명회, 수행기관 매칭 등 → 마케팅 등 지원

문 의 처

○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CFD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50여개 사, 전체 예산 106.5억원

＊ 19년 지원현황 : 650여개사, 총 106.5억원 지원

지원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등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컨설팅기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함

○ 신남방·신북방국가, 중국 인증의 경우 인증 신청 건수 제한 없음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전년도 매출액기준 30억원 이하 기업 : 70% 지원, 30억원 초과 기업 : 50% 지원

신청·접수

구분	1차	2차	3차
접 수	3월	6월	8월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후 관리기관 평가, 지방청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일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주요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조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시험·인증기관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청구서) 1부 - 시험+인증비용이 1건당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 제출

(선택 서류)

- ○ 시험·인증기관의 접수증 또는 견적서(청구서) 1부 - 시험+인증비용이 1건당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 제출 (제출 시 평가 점수 반영)
- ○ 해외 특허, 상표 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 ○ 현재 보유중인 해외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만 제출)
- ○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의 수출 또는 해외인증 교육 수료증, 자격증, 학과 졸업증, 회사 조직도 및 인원현황표 1부
- ○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1부.
- ○ 외국어카다로그 1부.
- ○ 여성기업 확인서 1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관리기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신청업체 평가	관리기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지원대상업체 선정	지방청 (선정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지원금 조정)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참여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 실시
중간보고(필요시)	참여기업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등 보고
완료보고	참여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관리기관	▸ 인증사실확인 ▸ 정부지원금 정산 지급

문 의 처

- ○ 관리기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 전화 : 02-2164-0172~8, FAX : 02-507-8118, E-mail : mail@ktr.or.kr
  -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1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중기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0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선정현황 : ('17년) 771개사, ('18년) 1,056개사

지원 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국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무료컨설팅 등

신청·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

제조업 평가기준	
▸ 수출신장유망성 6개항목	45점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 기술성 3개항목	15점
▸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서비스업 평가기준	
수출신장유망성 3개항목	3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서비스제공 능력 5개항목	25점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제출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 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3월, 9월)	→	신청·접수 (4월, 10월)	→	현장평가 및 진단 (5월,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지원기업 선정 (6월 초, 12월 초)	→	지정증 교부 및 지원 (6월 중, 12월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문 의 처

○ 중소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사업참여시 가점 또는 우대지원을 받으며,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각종 수수료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A 지정 후 2년동안 유효하며, 4회에 한합니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18년 하반기 부터 일부 사행성 업종을 모든 업종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임차료의 80% (2차연도는 50%) 지원

해외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 주요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및 현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15개국 23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19년 기준) 총 283개 독립실 : BI 13개국 21개소, KSC 3개국 2개소

지원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업종 해당 기업
- ①일반유흥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 · 법률 · 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스타트업 투자연계, 엑셀러레이팅, 네트워크 등 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일부 사업은 공고 예정)

○ (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하고, 제출 서류에 대해 우편 접수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진공 국제협력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 접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입주)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 등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지사화사업참여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진공 Family 기업 우대

필요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처리 절차

입주 신청·접수 (중진공)	→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	해외시장성 평가 (중진공/KOTRA)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진공·KOTRA, 기업)	←	계약 및 입주 (중진공, 기업)	←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및 지역본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3, 9682, 968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예비창업자 등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소정의 실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독립실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 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 가능합니다(최대 2년). 1년 입주 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용어설명

공유오피스 : 예비창업자 등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해외 출장 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 내에 중기(3개월 수준) 또는 단기간(1개월)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사무 공간 등 지원

11-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전시회(Booth in Booth)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260개사 내외 ('20년 : 125억원)

* '18년 지원현황 : 1,189개사, 기업 당 평균 약 6백만원 지원(※ '19년 사업 진행 중)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

지원 내용

○ 해외거점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업종 · 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업종 공통/특화, 이업종 융합 동반진출 지원

○ 해외홈쇼핑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지원

○ 한류연계 : 한류(K-POP, K-Food, 드라마/예능, 게임 등) 연계하여 뉴미디어(인플루언서, SNS, V커머스 등) 및 한류스타 IP 활용, 수출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일괄지원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사업유형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해외거점 활용지원	▪ 수출유형·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활동 60% 이내 지원 (최대 3년 장기과제 지원 가능, 단 2·3차년도 정부보조율 50% 이내, 년도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판단) ▪ 대·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700 ~ 2,300만원 한도 (지역별 차등화 적용, 공동수주 또는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현지화 개발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 해외홈쇼핑 방송 및 소요비용 70% 이내지원 ▪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중소기업 부담금 있는 경우 7:3 비율로 지원)	▪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등 * 인서트 동영상,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 ** 디자인,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홈쇼핑 연계 해외시장 진출 활동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임차료, 통역 및 상담주선 용역비, 해외마케팅비, 간담회비 등
한류연계 지원	▪ 행사, 콘텐츠 연계 해외 프로모션 등 60% 이내 지원 ▪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300 ~ 1,700만원 한도 (B2C, B2B 프로그램 모두 포함, 지역별 차등화 적용) * 스타마케팅은 중소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	▪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부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可

신청·접수 '20.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

사업공고 ('20.1)	→	신청·접수 ('20.1~2)	→	선정위원회 개최 ('20.3)	→	선정결과 통보 ('20.3)	→	수행 ('20.3~ '21. 1)	→	결과보고 및 정산
협력재단		대기업 및 공공기관, 협·단체		심의조정 위원회		협력재단		주관기업·참여기업		주관기업·참여기업/협력재단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52~58
-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 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참여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함께 알아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역기업 지원

Q **가사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 등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화, 판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에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립니다.

Q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기업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서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검토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여성기업확인서 발급사업설명 참조)

Q **여성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디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쉽게 물어보고 저의 일 같이 해결해주는 곳은 없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의 해결방법을 찾아 낼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가 직접 애로해결을 도와 드릴수도 있습니다.

Q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기술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궤도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마케팅를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12장

여성기업 지원

12-1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276
12-2 여성창업경진대회 ····· 279
12-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281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283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287
12-6 TV 홈쇼핑 판매지원 ····· 290
12-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292
12-8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 294
1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296
12-1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298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300

12-1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

초기 여성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분야별 전문상담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17개 지역센터 226개 창업보육실 운영

지원 대상 예비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여성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지원 내용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2년 연장가능)

* 입주공간면적 : 33.1㎡ 내외

-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제품판매 플랫폼 입점지원) 등

○ 여성기업 경영환경 조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등

신청·접수 해당 지역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육실 공실 발생 시 입주기업 수시 모집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자역량, 사업계획서 타당성, 상품화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해당자에 한함), 대표자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처리 절차

입주 신청 및 접수 (해당지역 센터)	→	심사 및 발표 (접수 센터별 심사, 발표)	→	입주
센터별 공실 발생시 입주기업 수시모집		입주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원 내용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제품판매 플랫폼 입점지원) 등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중앙	(02) 369-0943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001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0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경기북부	(031) 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충북	(043) 236-6561	2855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1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충남	(041) 569-0572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알려줘요! 중기씨

Q **입주시 임대보증금,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 관리되나요?**

A 전국 17개 지역센터에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300만원에 관리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입주사 사무실 전용면적에 센터별로 책정된 m2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모집 대상에 예비여성창업자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신청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반도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만 입주를 할 수 있기에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며, 여성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 육성사업 연계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12-2 여성창업경진대회

|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창업분위기 조성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 및 육성하여 여성의 창업을 촉진합니다.

지원 규모 32개팀(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4, 특별상 2, 입상 20)

지원 대상 창업 5년 이내 여성 창업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템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과거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 내용

○ 시상 및 포상(1인 최대 상금 1,000만원 이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투자유치 연계, 교육·네트워킹, 판로·마케팅 지원 등

신청·접수 '20.1 ~ 4월(예정)

○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기술성 사업성, 경영진, 재무계획성,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가자 지식재산권 서약서 각 1부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참가자 신청· 접수	→	수상자 선정· 지원	→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센터		센터		센터		센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원 내용

○ 언론홍보, 글로벌 창업지원,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 강화

12-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여성가장 대상 창업자금(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 지원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2.0%의 저렴한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0명 내외

* '19년 지원현황 : 10명 신규지원, 지원금액 605백만원, 1인당 평균 6,050만원 지원('19.12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신용등급 1~7등급

○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등급 8, 9, 10등급)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의 경우
✓ 창업 업종이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간이주점의 경우

○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신청·접수 '20. 1. 1 ~ 12. 31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 사업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자금 → 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장창업자금 → 해당 지회 문의 → 각종 증빙서류 방문 및 우편발송

심사·평가내용

○ 신청자의 경영능력, 자금조달 능력, 해당업종 종사여부, 사업실현가능성, 시장전망, 건물 채권확보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앞, 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혹은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시세확인서 등(우편발송 가능)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약 13,000개사

*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지원 내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회원가입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신청 서류

○ 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 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처리 절차

여성기업 확인신청	→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수시모집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 지역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지회)

지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회	(02) 369-0932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93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56-0006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6028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1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인천	(032) 260-3602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33-550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2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충북	(043) 231-7807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0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6008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세종충남	(041) 569-0570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1-2612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한양애드가 4층
경기북부	(031) 868-8313	11473)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하시면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저희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나의 업무→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에서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 연락 하시면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용어설명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및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및 입찰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입찰정보와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19년 지원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1,607개사, 14,605개 제품 등록)

지원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 등록·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증대

- 여성기업제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입찰실무교육을 통해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 입찰의 개요 및 절차, 계약방법, 투찰금액 산정 및 적격심사 등 입찰관련 교육 제공

신청·접수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일반회원가입(가입시 회사정보입력) → 확인업체 자동인증 → 제품등록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사이트 내 입찰실무교육 공고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 절차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①온라인 제품등록	→	②제품등록 승인	→	③제품등록 완료 및 게시
여성기업		사이트 관리자		홍보사이트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①서비스 이용신청 (회원가입)	→	②관리자 승인	→	③입찰정보 이용 (사이트 및 이메일)	→	④교육 신청 및 참여
여성기업		사이트 관리자		여성기업		여성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을 의미합니다.

Q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업체수 : 약 38천개).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6-49호)「여성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2-6 TV 홈쇼핑 판매지원

| 여성기업의 TV홈쇼핑 진출지원

품질이 우수하고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여성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150개사

* '19년 지원현황 : 163개사 교육 및 상담회 참가, 16개사 방송 송출

지원 대상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여성기업

지원 내용 교육, 품평회, 방송수수료, 홈쇼핑 인서트영상 제작비 등

신청·접수 '20.1 ~ 3월(예정)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제품소개서, TV홈쇼핑 입점지원 신청서

처리 절차

○ 홈쇼핑 입점교육

① 교육신청 (신청서 제출)	➔	②신청서 검토	➔	③수강생 선정	➔	④교육수강
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 상품품평회

① 품평회 신청	→	②신청서 검토	→	③대상자 선정	→	④풍평회 진행
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문가 코칭

① 대상자 선정 (품평회 합격자에 한함)	→	②홈쇼핑 매칭(MD)	→	③홈쇼핑 방송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 방송지원

① 대상자 선정 (코칭 진행자에 한함)	→	②홈쇼핑 매칭(MD)	→	③TV홈쇼핑 인서트 영상 제작지원	→	④TV 홈쇼핑 방송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2-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교육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수출기업화 25개사, 해외전시회 24개사, 수출교육 100명

지원 대상 수출유망 여성기업

지원 내용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교육 등

○ 수출기업화 : 수출초보기업 20개사, 수출도약기업 5개사

- 수출전문가 1:1 매칭 컨설팅
- 해외마케팅(개별 전시회 참가 등 현지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패키지 제작 등)
-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
-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 해외지사화 참가

○ 해외전시회 참가 : 수출희망 여성기업 24개사

- 부스임차 및 장치비 80%

* 한국여성기업관 구성

- 현지 마케팅비 80%

* 바이어매칭,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방송 보도 등 전시회별 상이

- 통역비 100%

○ 수출교육 : 수출희망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100명

-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실무 기초교육
- 해외 전시 마케팅 및 SNS 마케팅 전략 교육
- 교육비 및 교재비 100%

신청·접수

'20.1 ~ 3월

○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인터넷(e-mail)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 (기본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수출활동계획서 및 수출품목 설명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추가제출서류) 카다로그 등 제품 소개자료, 재무제표 사본1부(최근 3년), 수출실적증명원 사본 1부(최근 2년),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등

처리 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참가업체 신청, 접수	→	참가업체 선정심의	→	사업 참가	→	사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2-8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 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여성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구인정보 등록부터 일자리 지원정책 연계 · 상담 · 교육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여성기업 : 여성을 대표로 하는 중소 · 벤처 · 초기창업 기업

○ 전문인력 : 분야별 경력자, 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남녀 무관)

지원 내용

○ 프로젝트(구인) 등록부터 완료까지 1:1 전담매니저가 관리

○ 일자리지원 제도 발굴 및 매칭 · 교육 · 상담 등 구인구직 지원 사업 연계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의 인력검증 및 인재추천 등 자문 컨설팅

○ 업무용 소프트웨어(MS오피스, Adobe, CAD등) 클라우드 방식으로 무상 제공

○ 결제대금 예치제,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신청·접수

○ PC 및 모바일에서 개인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등록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www.iljarihub.or.kr)

처리 절차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 지원 절차

회원가입 → (구인)프로젝트 등록 → 지원자 모집 → 미팅 및 계약 조율 → 계약 및 프로젝트 완료

○ (전문인력) 매칭 지원 절차

회원가입 → (구직)프로필 등록 → 지원 접수 → 미팅 및 계약 조율 → 계약 및 프로젝트 수행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전화 상담은 02-369-0963, 이메일 문의는 iljarihub@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www.iljarihub.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1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여성기업인의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 접수 및 해결 창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 DESK 상담위원들이 수시 상담하여 해소해 드리고, 정책 아이디어 건의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17개 권역 운영

지원 대상 (예비)여성창업자 및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

지원 내용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분야별 전문가)이 여성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상담

- 경영, 회계, 세무, 인사, 노무, 생산관리 등 경영 분야 애로사항
- 기술,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 수출/외환, 해외마케팅 등 해외 수출 분야 애로사항
- 벤처, 투자 등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 경영애로사항

○ 신청 및 상담분야

구 분	내 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및 동향, 지식재산권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신청·접수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여성기업종합정보망(www.wbiz.or.kr)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별도 신청서류 없음)

처리 절차

여성경제인 DESK 접수 (해당지역 센터)	→	전문위원 상담 (센터 또는 기업방문)	→	관계부처 협의 및 해결 (중소벤처기업부)	→	결과 안내 (여성경제인)
정책건의 및 현장경영애로 신청접수 (17개 지역센터 접수)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 및 해결		미결과제 및 부처간 협의 필요사항 이관 · 해결		처리결과 종결 및 회신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02-369-0900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센터: 02-369-0934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중앙	(02) 369-0934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7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31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42-0552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5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935-2864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3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49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경기북부	(031) 868-8313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충북	(043) 236-6561	2855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325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세종충남	(041) 569-0574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1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여성CEO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 경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역량강화 및 경영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여성CEO 300명

* '19년 지원현황 : 여성CEO 295명

지원 대상 여성CEO 및 임원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 경영실무 교육 (HRD, 마케팅, 홍보, 재무, 경영전략 등)
○ 협상스킬 교육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
○ 네트워크 프로그램 (입학식 및 수료식)

신청·접수 '20. 2~11월 중(지역별 개최일정 상이)

○ 사업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회원가입 → 교육/일자리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② 각 지역별 개최계획 수립 및 공고	③ 지역별 수강생 모집	④ 교육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지역별 개최 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당 지역의 지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교육/일자리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온라인 신청

Q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원이시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전국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여성CEO

* '19년 지원현황 : 전국 여성CEO 800명

지원 대상 전국 여성CEO 누구나 참여가능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 전문가 초청강연, 네트워크 프로그램, 여성기업지원사업 홍보, 문화체험 등

신청·접수 '20.1 ~ 3월,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가능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참가 신청서

처리 절차

①사업공고	➔	②참가신청	➔	③세부일정안내	➔	④연수시행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9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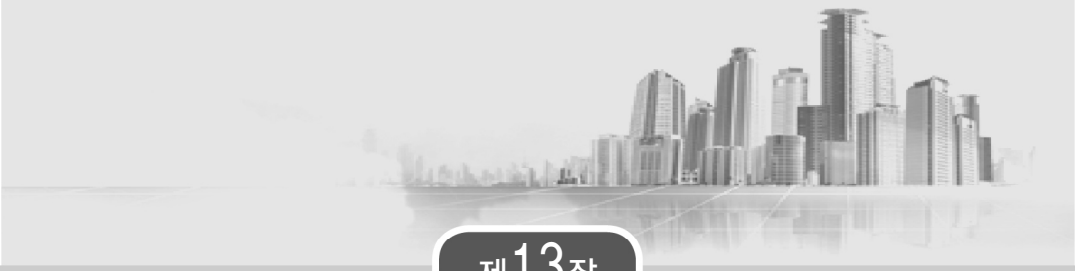

제13장

장애인기업 육성

13-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302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304
13-3 장애인 창업 육성 ····· 307
13-4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 310
13-5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 312
13-6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 314
13-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 316
13-8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318

13-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 경영안정 지원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공간 및 사무기기 지원, 기업지원정책 등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전국 16개 지원센터, 132개 보육실 운영(6.5억원)

* '19년 보육실 지원현황 : 전국 132개사(6.5억원)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IT관련업, 제조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지원 내용

○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 등 제공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등 각종 정보제공

신청·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한 연중 수시 신청 · 접수(공실 발생시)

심사·평가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입주공고	신청·접수	서류 및 면접평가	입주기업 선정	계약 및 입주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육성실 : 02-2181-6535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서울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T) 02-2181-6500
대구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T) 053-600-8070
광주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T) 062-511-8330
부산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T) 051-329-8230
대전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T) 042-932-9077
경기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T) 032-322-1940
인천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T) 032-817-1364
경남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T) 055-763-3556
울산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501호	T) 052-294-7230
강원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T) 033-747-6823
제주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T) 064-749-8234
전북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T) 063-237-5354
전남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92, 에드가2차 201호	T) 061-285-7867
충북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201호	T) 043-238-8243
충남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8-6	T) 041-331-0505
경북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T) 054-842-3773

알려줘요! 중기씨

Q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게시됩니다, 이후 모든 서류가 구비,제출되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기업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기업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장애인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 조사를 통한 장애인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제출 서류

No	제 출 서 류	개인기업	법인기업
1	•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x	○
2	• 동업계약서 1부(공동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제출)	○	x
3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	○	○
4	• 기타 해당사항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5조의4 1항)	해당 시	

처리 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1월~12월(연중수시)		접수 후 7일 이내		심사 후 7일 이내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서울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T) 02-2181-6500
대구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T) 053-600-8070
광주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T) 062-511-8330
부산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T) 051-329-8230
대전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T) 042-932-9077
경기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T) 032-322-1940
인천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T) 032-817-1364
경남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T) 055-763-3556
울산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501호	T) 052-294-7230
강원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T) 033-747-6823
제주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T) 064-749-8234
전북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T) 063-237-5354
전남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92, 에드가2차 201호	T) 061-285-7867
충북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201호	T) 043-238-8243
충남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8-6	T) 041-331-0505
경북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T) 054-842-3773

알려줘요! 중기씨

Q **조달청(나라장터)입찰 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장애인기업으로 확인 받으신 경우 자동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확인업체로 등록이 됨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언제든 출력이 가능합니다.

13-3 장애인 창업 육성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 아이템 기술교육, 전문가 창업멘토링, 우수아이템 발굴 · 포상,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교육생 1,500명, 아이템경진대회 11명, 사업화지원 65명,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2개소

* '19년 지원현황 : 창업교육 1,500명, 아이템경진대회 11개, 사업화지원 90명

지원 대상

○ (창업교육, 사업화자금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교육 수료 후 창업 멘토링, 사업화 지원 선별 지원

○ (아이템경진대회)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

지원 내용

○ (창업교육) 창업의 기초소양 중심의 창업기초 온라인교육
- 장애인 특화업종에 대한 기초 및 기술교육
- 전문가와 아이템 및 입지선정 등을 위한 창업코칭 및 멘토링

○ (사업화지원)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자금지원

○ (아이템경진대회) 경쟁력 있는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 포상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창업을 위한 훈련 및 실습, 최대 2년간 입주 지원(설비 및 기자재 등)

신청·접수 ① 창업교육 : 연중수시(온라인), ② 사업화자금지원 : 연2회(3월, 6월 예정), ③ 아이템경진대회 : 3월 예정, ④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 2월 예정

○ (창업교육)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

○ (사업화지원)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 (아이템경진대회)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화지원)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 (아이템경진대회) 서류평가 → 모의크라우드 펀딩 → 발표평가

* 창업자의 전문성,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 (창업교육)

지원신청 및 접수	→	창업교육 및 코칭	→	창업멘토링 (컨설팅프로그램)
연중수시		연중수시		2월, 5월(4주)

○ (사업화지원)

지원신청 및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사업화자금지원
3월, 6월(3주)		4월, 7월(1주)		4월, 7월(1주)		5월, 8월

○ (아이템경진대회)

지원신청 및 접수	→	서류평가	→	모의크라우드 펀딩	→	발표평가	→	시상
3월(5주)		4월(1주)		4월~5월(2주)		5월(1주)		6월(1주)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지역선정	→	설비구축	→	창업자 모집	→	사전교육	→	개소 및 입주
1월(4주)		1월~6월(20주)		2월~3월(4주)		3월~6월(12주)		6월(1주)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20

○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

알려줘요! 중기씨

Q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네, 직전년도 이후 창업교육 수료증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2019년~2020년 창업교육 이수 시 가능합니다.

Q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시설 및 인테리어, 물품비, 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장애 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A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13-4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기술개발 초기 시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4개사 내외(5.6억원)

* '19년 지원현황 : 24개사(5.6억원)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모형 및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지원

구 분	내 용	정부지원한도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에게 기술멘토링, 제품디자인 개발 및 모형제작비용 지원	총사업비의 70~90%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비용 지원	총사업비의 70~90%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신청·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접수(start.debc.or.kr)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 (서류/면접)	→	1차 기술멘토링
2월 중		2월(3주)		3월(2주)		3월 중

↓

성과조사	←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	←	협약진행	←	기술멘토링 및 원가분석
지원완료 후		협약기간		원가분석 후(2주)		3월(2주)

문 의 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A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90% 이내, 소기업은 80% 이내, 중기업은 70% 이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분야는 최대 10백만원, 시제품금형분야는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 가능하며, 여러 분야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A코스)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3-5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활용 컨설팅 및 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약 80개사 내외(1.3억 원)

* '19년 지원현황 : 122개사(2.3억 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MAS 컨설팅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AS 계약 완료시 까지 전문 컨설팅 지원

○ 입찰컨설팅 :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진출 역량강화 지원

신청·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접수(start.debc.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업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지원금 지급 및 컨설팅 지원	⑤사후관리
2월 중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지원금 : 인증획득 후 컨설팅 : 12월 말까지	지원완료 후

문 의 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입찰컨설팅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기업지원(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진단), 신용평가(공공조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 지도), 공공입찰(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 예비점검, 공공기관별 예가 기록을 종합 분석 후 최적 낙찰 구간 설정, 주요 발주처 별 특성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성향 분석)에 대해 지원해드립니다.

13-6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약 35개사 내외(1.3억 원)

* '19년 지원현황 : 38개사(1.3억 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번역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합도지원(부가세 제외)

구 분	세부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장치비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 데스크 및 의자 등
• 홍보물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 (국외)통역비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국외)번역비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소비자용 매뉴얼 번역비

신청·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start.debc.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 → 완료보고서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업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완료보고서 제출	⑤지원금지급
2월 중	공고 후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전시회참가 후	매월 말

문 의 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A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는 지원불가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학술세미나)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3-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국내외 입찰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제품 전시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입찰정보제공 :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입찰정보 접근성 제고

* 입찰 전문지식이 없는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온라인 입찰 강좌 제공

○ 장애인기업제품 온라인 전시몰 : 장애인기업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통해 제품이미지 및 기업홍보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공판로 마케팅 기회 제공

장애인기업제품 온라인 전시몰(드림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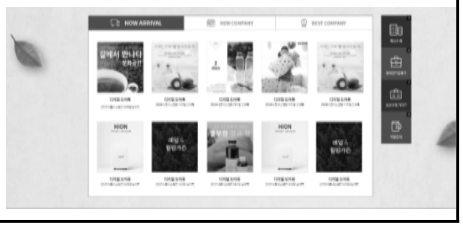

신청·접수 연중수시

○ 입찰정보시스템(http://biz.debc.or.kr/bid/) 접속 후 회원가입

○ 드림365(www.dream365.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제출 서류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

처리 절차

회원가입 → 가입승인요청 → 가입승인 → 시스템활용

문 의 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입찰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분야 입찰 및 낙찰정보를 제공하여, 입찰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검색어 서비스, 내 서류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입찰정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초보자를 위한 온라인 입찰실무 강좌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13-8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200개사 내외(4.2억 원)

* '19년 지원현황 : 40개사(2.4억 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해외온라인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지원구분	인증마크명
1 타겟국가 온라인홍보	• 키워드검색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홍보관 해외 방문자 유입 지원
	• 셀링오퍼 & 인콰이어리 수신지원
2 타켓 바이어 마케팅	• 기업별 타겟 관심국가 내 현지어 버전 구글 마케팅
	• 타겟 바이어 기초시장 조사
	• 관심 바이어 상세정보/컨택 보고서 제공
	•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
3 맞춤형 추가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시 바이어 정보 제공
	•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지원
	• 글로벌 SNS 게재

○ 무역사절단파견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지원내용	인증마크명
1 항공·교통·통역지원	• (항공) 1개사 1인 왕복 항공료 50% 지원(이코노미 기준)
	• (교통) 무역사절단 파견 기간 내 현지 전용 버스 상시대기(50인승 버스), 공항, 호텔 간 전용차량 이용(장애인 지원차량 및 현장 인원 1:1밀착 지원)
	• (통역) 업체와 품목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파악한 통역원 기업 당 1인 밀착 지원하며, 현장에서 바이어 미팅 시 상담일지 작성 지원
2 바이어 발굴 및 검증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인터뷰를 통해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출, 수입규모, 홈페이지 및 기타 정보를 통해 미팅 적합성 검증
3 수출상담회 지원	• 상담장 홍보물 및 테이블 설치, 필요 기자재 비치, 바이어 대기 공간 운영

○ 수출교육 :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 대상 무역실무 교육,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 진입 지원

– 글로벌 온라인 셀링 교육(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등) 추진

– 수출입 주요 절차 및 각 단계별 주요내용, 주요 무역용어 안내,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보험 수출입 통관, 무역 마케팅 사례 소개 등

신청·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심사 → 서면평가

* 고용기여도, 수출준비도, 수출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컨설팅지원/ 무역사절단파견	⑤사후관리
2월 중	공고 후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컨설팅 : 12월 말까지 무역사절단 : 추후공지	지원완료 후

문 의 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무역사절단파견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현지에 파견(4~5일 일정)하여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며, 파견 시 항공(50%), 교통, 통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제14장

지역기업 지원

14-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322
14-2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324
14-3 지역특화산업육성 ····· 327
14-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지원 ····· 332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 335
14-6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338

14-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신청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 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에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신청·접수 연중상시

* 세부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와 협의

제출 서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기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정책정보란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처리 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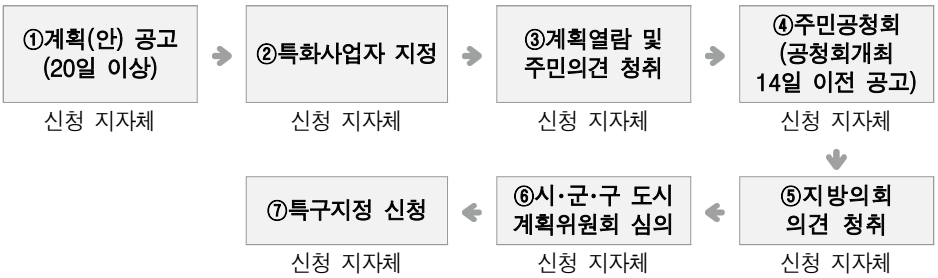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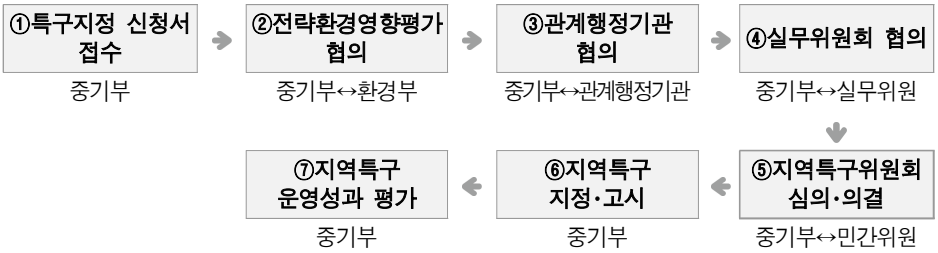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042-481-1605

14-2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지역기업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대응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 · 통영 · 고성 · 창원 진해구)의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문제해결 서비스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산업 · 고용 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 · 통영 · 고성 · 창원 진해구) 소재 중소기업 80개사 내외(예산 6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위기대응 4개 지역 총 179개 기업 지원(본예산 64억원, 추경예산 40억원)

지원 대상

○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위기업종 및 관련 전 · 후방 연계업종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수혜기업 대상 밀착 컨설팅 이후 외부혁신기관 연계 후속 사업화지원

- (컨설팅지원)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사업다각화 및 기술 고도화 등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지원 전주기 전문가 컨설팅
- (사업화지원)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문제점 및 수요에 따라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특허출원, 인증, 바이어 초청 등 기업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신규거래선 발굴 또는 제품 다변화 촉진 등 사업(다각)화 지원
- (컨소시엄지원) 개별기업 이외 기업 간 공동협력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기획 지원 등 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예시: 협동조합, 기업 간 연계모델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존 출연금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환

신청·접수 시 · 도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관(TP)) 정책지정(사업공고) → 발표평가 → 현장실사(필요시)
- (수혜기업)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제출 서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 절차

○ (위기대응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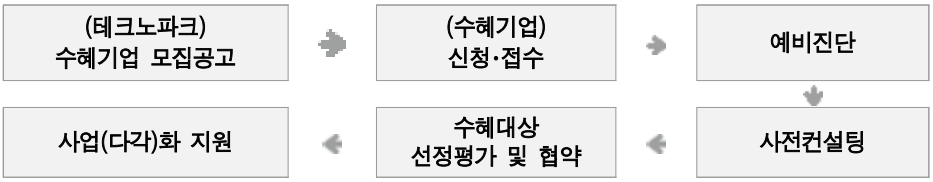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 : 02-6009-374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위기기업의 사업분야 다각화 ·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시제품제작, 마케팅, 인증, 특허, 공정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예산은 컨설팅 6백만원, 사업(다각)화지원 5천만원이며 사업(다각)화지원은 기업부담금 10% 이상이 필수조건입니다.

Q **기업수요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新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R&D, 장비구축, 인력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기업 소재지가 위기대응지역에 속한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검토 · 심사 단계를 거쳐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기지역에 소재하였더라도 관련업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3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에게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원 규모 비수도권 4,000개 기업 내외(예산 862억원)

* '19년 지원현황 : 비수도권 4,282개 기업, 총 211개 과제(예산 865억원)

지원 대상

○ (기업지원서비스) 지역혁신기관 선정 후 해당 지역 기업 별도 모집 · 지원

○ (지역혁신 바우처)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기업 별도 모집 · 지원

○ (시군구 연고산업) 시군구 혁신기관 선정 후 사업화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스타기업 지원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수출새싹기업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기업지원서비스

- 지역혁신기관의 기술자원, 사업화자원, 마케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분야 수혜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내외, 1,800개 기업 내외)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지역혁신 바우처

-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지역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공급기관을 통한 상시적 맞춤형 지원 (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 이내, 600개 기업 내외)

○ 시군구연고산업

- 지역 시·군·구내 연고산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의 사업화 지원 (과제당 최대 5억원, 23개 과제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을 연간 200개사 선정 · 지원(기업당 최대 5천만원 내외)

○ 수출새싹기업지원

■ 지역주력산업 내수 중심 지역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출전문 역량을 활용한 밀착형 수출 전주기 지원(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내외, 100개 기업 내외)

신청·접수

○ 주관기관(혁신기관) : k-pass 홈페이지(www.k-pas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수혜기업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 · 도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관(지역혁신기관)

■ (기업지원서비스)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역혁신바우처)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시군구 연고산업)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혜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 절차

○ (기업지원서비스)

사업공고 → (주관기관)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주관기관)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신청·접수 → 예비진단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혜기업 지원

○ (지역혁신바우처)

(테크노파크)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신청·접수 → 예비진단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혜기업 지원

○ (시군구 연고산업)

(지역혁신기관)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신청·접수 → 예비진단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혜기업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

(테크노파크)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신청·접수 → 예비진단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혜기업 지원

○ (수출새싹기업지원)

(태크노파크)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신청·접수 → 예비진단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혜기업 지원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기업지원, 스타기업) : 02-6009-374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지역혁신바우처) : 02-6009-374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시군구연고산업) : 02-6009-372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수출새싹기업지원) : 02-6009-374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k-pass 홈페이지 (www.k-pass.kr)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rips.or.kr)

알려줘요! 중기씨

Q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수혜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A 본 사업은 기업지원이 가능한 지역혁신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후, 해당 주관기관에서 수혜기업을 모집하게 되는데, 2월경부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해 지역별로 통합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시군구 연고산업 기 자원 및 산업도 지원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하며, 후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 구비해야합니다.

Q 지역우수(스타)기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내 매출액 50~400억 이면서, 시·도별 자체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용어설명

지역혁신기관이란?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등

14-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지원

| 국가융복합단지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국가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지원 규모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 대상 61개 과제(128억원)

지원 대상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 지원
(자유공모, 최대 2년, 연 3억원 내외)

* '20년 신규과제는 단년(1년) 지원 예정

* 동 사업은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한하여 지원, 입주확약 기업의 경우 신청 시 확약서 제출

< (참고) 시·도별 국가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

시·도	위치	시·도	위치
부산	센텀, 문현, 동삼지구, 북항일원 등	충북	청주, 혁신도시, 증평, 괴산, 충주일원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일원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전북	전주·익산·완주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대전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전남	빛가람동 일원
울산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중산동, 달천동, 남구 두왕동 일원 등	경북	김천시, 구미시 일원
세종	조치원 산업단지, 명학산업단지 등	경남	항공MRO집적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 외국인 투자 지역 등
강원	원주혁신도시 및 횡성 일원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혁신도시 일원 등

신청·접수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기술개발 지원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6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어떤 기업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관기관의 경우 국가융복합단지에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으로는 타지역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서 언급된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시 · 도별 지정된 국가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입주 확약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 입주(예정)기업으로 간주합니다.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R&D 지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규모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 대상 493개 과제 (999억원)

지원 대상

○ (지역주력산업육성)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자체에서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 시 · 도 지역주력산업분야(시 · 도별 3~4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신규고용,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상용화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참고)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신청·접수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기술개발 지원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4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기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나요?**

A 그간 지역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오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이 '19년부로 일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2019년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6년간(20~25년), 1조 3,15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

A 주관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지역스타기업은 무엇인가요 ?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반드시 지역스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

A 지역스타기업은 지자체에서 고용 및 매출성장,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관은 지역스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6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제조 중소기업 집중지원으로 기업혁신 촉진

성장가능성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혁신 촉진

지원 규모 2,000개사 내외(예산 584.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지역별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제외 업종 :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 기업진단을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90%~50% 차등지원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90%	최대 50백만원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바우처 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규제대응 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재기 컨설팅	진로제시, Pre-회생,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 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구설계, 금형, 제품디자인 등
	기술개발관련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규격인증	규격인증을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 분석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사업 기간 최대 1년

신청·접수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진단 · 평가 → 심의위원회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제조혁신바우처 활용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사업」 참조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원사업 중 "제조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설명 메뉴에서 "소기업 판단기준"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1 부

창업기업 지원

함께 알아보는 창업·사업전환

Q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A 자격 조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제한조건이 있으니 별도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1명은 영어 혹은 진출국가 언어에 능통자여야 합니다.

Q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진출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정부지원금의 20% 이내)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

A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예비창업패키지 ····· 346
1-2 창업성공패키지 ····· 348
1-3 초기창업패키지 ····· 352
1-4 창업도약패키지 ····· 354
1-5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357
1-6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 359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361
1-8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365
1-9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367
1-10 창업성장기술개발 ····· 372

1-1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사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예비창업자 1,700명 내외(1,113.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8,403명 / (선정) 2,205명

지원 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이용자에게 금액 한도를 정하여 사업화 자금 지급 ⇒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주요 사업절차 >

예비창업자 선발		창업교육		전담멘토 매칭		바우처 지원
일반, 특화분야	➔	비즈니스모델 등 기초교육	➔	'창업·경영 전문가' –'예비창업자' 매칭	➔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멘토·주관기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과 지속적 성장 위해 창업지원 사업간 연계 추진(실전창업교육, 초기창업패키지 등)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 · 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공 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교육	→	협약체결
중기부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K-Startup		K-Startup						K-Startup

문 의 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487, 4379, 4352, 438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1-2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CEO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진출지원

제조업 위주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 · 육성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청년창업사관학교) 1,035명(개사), (글로벌창업사관학교) 50명(개사) 내외(예산 1,041억원)

* '19년 지원현황 : 청년창업사관학교 1,000명(팀)(예산 922억원)

지원 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CEO 중 글로벌 진출 유망 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후 중도탈락·포기 또는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자(기업) (일부제한)
✓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창업 인프라)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및 제품개발 장비 등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디자인 지원을 위해 제품개발실 운영, 신속시제품 제작장비 등을 통한 One-Roof 제품개발 지원
- (판로개척) 국내 · 외 전시회 참가 지원(독립부스 · 통역비 · 운송비 등)
- (해외진출)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지원
- (후속 연계지원) 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 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관지원

- (글로벌화 지원금) 최대 2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제품·서비스 현지화, 글로벌 인력 채용, 해외 마케팅, 현지 파트너 구축비용 등 지원

- (글로벌역량진단) 제품 · BM/기업현황/인적역량 관련, 입교자의 글로벌 진출 준비도 진단
- (교육 및 코칭) 전문적 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한 수준별, 진출 국가별 맞춤형 교육 · 코칭
- (현지화 지원) 창업기업의 현지진출 및 국내지원 프로그램 동시 운영을 통한 시너지 강화

* (해외) 글로벌 창업기관 파견, KSC 및 글로벌 BI 입주, (국내) 해외마케팅, 제품보완, 해외인증 등

- (혁신성장 지원) 정책자금(융자), 투자유치 등 정책패키지 일관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규 추진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제출 서류

사업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1. 사업공고 → 2. 사업대상 선정 → 3. 협약체결 및 지원 → 4.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 5. 최종평가 및 졸업 → 6. 후속 연계지원

문 의 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주 소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031-490-1351, 1544, 1382, 1384
	서울(서울)	02-2130-1431, 1433, 1436~8
	인천(인천)	032-858-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7~8
	강원(원주)	033-748-0967~9
호남권 및 제주	광주(광주)	062-250-3031~4, 3039, 3042~3
	전북(전주)	063-276-8219~20
	전남(나주)	070-4243-0958~9
	제주(제주)	064-759-9649
충청권	충남(천안)	041-589-0832~0838, 0840
	충북(청주)	043-903-9357~8
	대전세종(대전)	042-862-9937~8
영남권	경북(경산)	053-819-5052~58, 5062
	경남(창원)	055-548-8050~4, 8020, 8062, 8064
	대구(대구)	053-656-8177~8
	울산(울산)	052-276-8937, 8939
	부산(부산)	051-305-9930~1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327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sbc.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Q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평가 합격 후 PT발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발표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9년 기준)

1-3 초기창업패키지

|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사업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30개사 내외(예산 1,0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1,078개사(일반기술트랙 최대 1억원 / 특화트랙 최대 1.5억원 지원)

지원 대상 창업 3년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신청하려는 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고급기술 및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일반기술과 특화(실험실/연구중심병원)로 트랙을 구분하고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하여 지원

* 일반기술트랙(최대 1억원), 특화트랙(최대 1.5억원)

○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초기기업에 아이템 실증검증, 투자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주관기간별 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초기창업기업에 더욱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트랙을 나누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을 세분화 · 고도화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처리 절차

사업 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 의 처

○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또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54~8

알려줘요! 중기씨

Q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 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신청 시 나이제한은 없나요?

A 예,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1-4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

지원 규모

1,350개사(성장촉진 프로그램 포함) 내외(예산 1,2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6,016개사(성장촉진 프로그램 포함), 선정지원기업 976개사, 평균지원금액 사업화 1.5억원, 성장촉진 25백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최대 3억원)

○ 성장지원 서비스 : 창업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유통, 수출, 제품개선 등 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유형별 맞춤지원 : 데스밸리 극복, R&D연계, 혁신성장 등 지원 분야를 다각화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제공

○ 고기술 중심으로 개편 : 고기술 중심으로 해외전시회를 개편하고, 디자인 개선프로그램 등을 통한 성장촉진 강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1~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 · 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공 고	→	창업기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대응자금(현금) 입금 등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수행	→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문 의 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042-480-4301, 4482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09, 3991

알려줘요! 중기씨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1~3년)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중복으로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5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규모 글로벌 진출 30억원, 희망기업 60개사

* '1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42개사, 선정 기업 60개사, 평균지원금액 기업당 20백만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11년~'15년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또는 '16년~'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기 수혜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6주) : 국가별 현지 보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자와 매칭된 1개의 액셀러레이터가 시장조사, 아이템 현지화 등 밀착지원
- 정부지원금(20백만원) : 액셀러레이팅 참가비로 약 10백만원 집행 후, 잔여 사업비로 현지 마케팅, 특허 출원, 체재비 등으로 집행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다 준비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 '20년 3월경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로 상이하며, 글로벌 진출 준비도가 높은 창업기업의 신청 · 접수 서류를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평가 후 대면 평가 진행

제출 서류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상이(영문 사업신청서,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발표평가	→	현지보육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해외액셀러레이터		해외액셀러레이터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총괄과 : 042-481-6815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부 : 02-3440-7326, 732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 진출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약 6주) 등을 제공합니다.

1-6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유치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지원 규모 외국인(재외동포) 참가팀 60개팀

* '19년 지원현황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40개팀 선정

지원 대상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 해외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국내정착금 및 상금(4천만원 내외 차등 지원), 창업공간 및 헬프데스크 등 보육인프라, 창업비자 취득 및 법인설립 등 후속지원

구 분	세부내용
액셀러레이팅	▪ 선정된 60개 창업팀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혜택 부여 ▪ 약 3.5개월간 보육(컨설팅, 비즈니스 연계, 교육 등) 및 행정 지원
비자발급 연계	▪ OASIS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착지원금	▪ 보육기간 동안 60개 팀에 생활비(각 10,840달러) 지원 ▪ 데모데이 선정 30개 팀에 정착지원금(각 10,840달러, 3.5개월) 추가 지원
우수팀 선정	▪ 우수팀으로 선정된 4개 팀에 최대 10만달러 상금* 지급 * (1위) 10만달러, (2위) 4만달러, (3위) 2만달러, (4위) 6천달러

신청·접수 '20.2월 ~ 6월 예정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 신청양식은 www.k-startupgc.org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처리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2월~6월 예정)	→	서류평가 (6월 예정)
K-Startupgc.org		온라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데모데이 (11월 예정)	←	액셀러레이팅 (8월~11월)	←	오디션 (7월 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 액셀러레이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8909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31-8016-1771
-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c.org)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 · 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 (Pre-TIPS) 총 예산 30억원, 30개팀 내외

○ (TIPS) 총 예산 1,777억원, 300개팀 내외

* (R&D) 1,456억, (연계사업) 321억(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Post-TIPS) 총 예산 144억원, 40개팀 내외

지원 대상

○ (Pre-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20년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화'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TIPS)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추천일(운영사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Post-TIPS)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팁스 프로그램 성공판정 기준)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연간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시 "성공"판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Pre-TIPS)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 지원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TIPS)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 (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 지분투자)를 추가 지원 가능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Post-TIPS) 제품 · 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신청·접수

○ (TIPS) 상시 접수 (팁스타운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TIPS 운영사 홈페이지)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TIPS 운영사별 자체 평가

○ (Pre, Post)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Pre)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발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Post) 성공가능성, 후속성장계획(글로벌 진출 등), 고용창출 효과 등

제출 서류

○ (TIPS) 사업계획서(각 TIPS 운영사별 별도 양식)

○ (Pre, Post)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처리 절차

○ (Pre-TIPS 선정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발표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TIPS 선정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창업팀→운영사) → 투자심사 (운영사) → 창업팀추천 (운영사→관리기관) → 서면평가 (관리기관) → 대면평가 (관리기관) → 협약체결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업관리 (관리기관)

○ (Post-TIPS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 수행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3, 8947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5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

○ K-Startup(www.k-startup.go.kr),
팁스타운 홈페이지(www.jointips.or.kr)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8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유망 사내벤처팀의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규모 총 200억원, 150개 내외(사업화 지원 100개, 사업화 실증 50개)

* '19년 지원현황 : 운영기업 57개사, 사내벤처팀 133개사 선정·운영 중

지원 대상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 및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내용 운영기업이 발굴 · 추천한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및 R&D 자금 등 연계지원

Track-1 (사내벤처팀)	민간(1억)+정부(1억) (1년, 2억원 이내)	▷	Spin off	▷	R&D연계 (2년, 4억원 이내)	▷	사업화 실증* 연계 (1년, 2억원 이내)
₩							
Track-2 (분사창업기업)	사업화(1억)+R&D연계(4억) (2년, 5억원 이내)						

* 사업화 실증 : 부품·소재·장비 등 분야 전략과제 (TOP-DOWN) 최대 2억, 全분야 일반과제 (BOTTOM-UP) 최대 1억원

* 세부내용(지원조건, 선정절차 등)은 운영기업 및 지원대상에게 별도 안내

신청·접수 2020년 1월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내벤처 운영(예정)기업 (이하 '운영기업') 모집공고	→	운영기업 신청 및 접수	→	운영기업 선정평가	→	운영기업 선정 및 공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이하 '전담기관')		전담기관 (K-Startup 홈페이지)

→	내부 사내벤처팀 선발 (아이디어 공모전 등)	→	우수 사내벤처팀 추천	→	사내벤처팀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운영기업		운영기업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창업 추진	→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
	전담기관·운영기업·사내벤처팀		사내벤처팀		사내벤처팀, 운영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7, 7303, 7305, 73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9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2조 5,5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002개사 중 10,1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 · 혁신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 · 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 · 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0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4,598억원(신규 1,815억원, 계속 2,78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핀오프, 벤처 · 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TIPS 과제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5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디딤돌 창업과제(641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 · 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단,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기업 제외)

○ 전략형 창업과제(71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459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 · 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 · 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TIPS 과제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

○ 재도전R&D 사업이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 강화, 지원 요건(매출액 20억원미만) 추가 설정

현행			개선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과제		TIPS 과제 (성장 단계)
			▲ Scale-up / ▼ 차단
창업기업과제	선도형 창업과제	➡	전략형 창업과제 (검증 단계)
	혁신형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디딤돌 창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 초기)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디딤돌 창업과제 >

< 전략형 창업과제 >

< TIPS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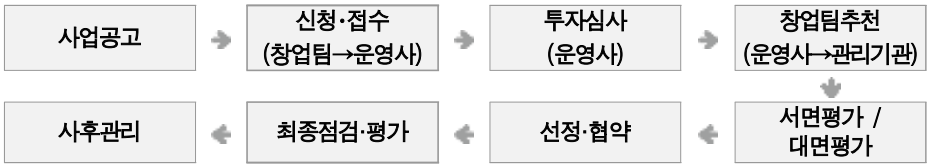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
-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 R&D는 2개 R&D 동시수행을 제한 (총 4회 졸업제 적용)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Q **디딤돌 창업과제 內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장

창업저변 확대

2-1 청소년 비즈쿨 ····· 378
2-2 창업에듀 ····· 380
2-3 메이커 문화 확산 ····· 381
2-4 실전창업교육 ····· 383
2-5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385
2-6 도전! K-스타트업 ····· 387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389
2-8 K-스타트업 ····· 392

2-1 청소년 비즈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20년 예산 : 66.68억원, 전국 약 495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19년 지원현황 : 495개 기관(초등 144개, 중등 91개, 고등 220개, 특수· 25개, 대안 4개, 센터 11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신청·접수 2월 접수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9년 기 선정된 비즈쿨 운영학교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비즈쿨 운영학교의 자진 포기, 평가에 의한 탈락 등 잔여 TO를 확인하여 추가 모집 예정

* 비즈쿨 운영학교 잔여 TO에 따라 '20년은 비즈쿨 운영학교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등

처리 절차

공고 ('20.2)	→	신청·접수 ('20.2)	→	평가 및 선정 ('20.3)	→	사업수행 ('20.3~'21.2)	→	중간점검 ('20.9)	→	최종점검 및 사후관리 ('21.2~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지방청·창진원		선정학교		지방청·창진원		지방청·창진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 042-481-1651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1~2, 4464, 4465, 430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2-2 창업에듀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지원 내용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초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강의 주제 300여개 제공

▷ 창업자 역량 개발에 필요한 기초 내용은 슬라이드 형태의 강좌 50여개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청·접수

○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 의 처

○ 심층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45, 4394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3 메이커 문화 확산

| 메이커 창작활동 등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과 동아리,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메이커 창작활동 등 300여개 과제(44억원)

* '19년 지원현황 : 320개 과제(62억원)

지원 대상

○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내용

○ 메이커 인력 양성, 메이커 창작활동, 연구조사 및 성과확산 등 지원

- 동아리 지원 : 청소년 등 메이커 동아리 활동 지원
- 메이커 전문교육 : 스페이스 운영자·교원 등 대상 메이커 전문교육 제공
- 메이커 창작활동 :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 주도적 메이커 창작·복합 프로젝트 지원
- 이동형 교육 :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메이커 행사 : 메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메이커 문화행사 개최 지원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활동계획 및 역량 등(세부사업별 평가기준 상이)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발표평가 ↓
결과제출 및 공유·확산 ←	사업 수행 ←	선정 및 협약체결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2-4 실전창업교육

| 비즈니스모델 구체화를 위한 실전형(Learning by Doing)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반응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교육생 2,700명 내외, 시장검증 270명 내외(48억원)

* '19년 지원현황 : 3,060명(팀) 교육, 332명(팀) 린스타트업 선정, 평균 788만원 지원

지원 대상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아이디어 개발→비즈니스모델 수립→린스타트업' 등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아이디어 개발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정립을 위한 사전학습
- 비즈니스모델 수립 : 아이디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고객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지원
- 시장검증 : 최소요건제품 제작 및 고객반응 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모델 검증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

사업공고 ('20.1~2예정)	→	창업실습 교육 (연 3~4회)	→	시장검증	→	최종보고 등
(K-Startup 홈페이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445, 4394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2-5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세무 · 회계,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 · 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초기 창업기업 18,000개사 내외(예산 1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15,000개사 내외(예산 160억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19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세무 · 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 · 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 • 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 · 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연간 최대 100만원
기술보호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

공고 ('20.1~2월)	→	신청·접수 ('20.2월~)	→	요건검토 및 선정 ('20.3월~)	→	사업수행 ('20.4월~)	→	수시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K-스타트업		우선 신청자 순		4주 내외		12개월 내외		필요시 수시		사업수행 종료 후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 042-480-4481, 4476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6 도전! K-스타트업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지원

지원 규모

○ 전체 예산 23.5억원, 20개팀 내외

지원 대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창업 아이템에 상관없이 팀원 전원을 합산한 금액)

지원 내용

○ 왕중왕전에 진출한 20개팀 전체에 대통령상 등 상장과 총 13.5억원(최고 3억원)의 상금 지급

○ 본선 진출팀 중 우수팀에 창업 사업화,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 우대

처리 절차

○ 부처별 예선* → 본선 → 결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 중기부(혁신창업리그-전체 대상), 교육부·과기부(학생리그-학생 대상), 국방부(국방리그-군인 대상)

공고 ('20.1~3)	→	부처별 예선 ('20.4~8)	→	본선 ('20.8~9)	→	결선 ('20.9~10)	→	왕중왕전 ('20.10)

신청·접수

○ 1~3월 중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통합 공고 후 부처별 신청 · 접수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470, 4399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890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 대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지원 내용

-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 기업지원플러스(http://g4b.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사용가능

처리 절차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 등록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설립 등기신청 → 사업자등록 → 4대 사회보험 신청

제출 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지자체 (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문 의 처

-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 042-480-4372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042-481-1684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외국인의 경우 현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2-8 K-스타트업

|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한 곳에! 창업 시작부터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사이트 주소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지원 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① 창업준비(전시 · 행사, 경진대회, 창업교육, 멘토링 · 경영지원) ② 창업실행(사업화, 판로·마케팅, 글로벌·수출, 재도전) ③ 창업성장(융자·보증, R&D) ④ 창업인프라(창작공간, 입주공간, 지원센터)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기초, 창업실전, 창업특화 등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강좌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제공 : 전국 12,000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사용 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제3장

창업지원 인프라

3-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394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396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398
3-4 창조경제혁신센터 ····· 400
3-5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402
3-6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404
3-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406

3-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조성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메이커 스페이스 전국 누적 191개소(312억원)

* 연도별 지원현황 : ('18년) 65개소, 235억원 → ('19년) 63개소(누적 128개소), 285억원

지원 대상

○ 민간·공공 기관 및 단체

지원 내용

○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 전문형으로 구분하여 장비 구입, 공간 리모델링, 시설 등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구 분	전문랩	일반랩
유 형	전문창작활동 및 창업인프라 연계 사업화 지원	메이커 입문 교육 및 착형 창작활동 체험
지원규모	최대 15억원	최대 1.75억원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대응투자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응투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경우 '18~'19년도 기구축 지역(서울, 경기, 대전, 대구, 경남, 광주)은 선정하지 않음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추진역량, 공간 입지·인프라, 사업추진계획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현장·발표평가
성과평가 등	사업 수행	선정 및 협약체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창업지원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7개소 내외('20년, 44.6억원)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 야	내 용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처리 절차

신청공고 ('20.2~3월)	→	신청·접수 ('20.연중수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센터↔기업)	→	입주공간 등 지원(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지자체, 대학 등)				

* '20년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일정 및 교육시간, 프로그램 등 협의 후 진행(연중수시)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417, 4423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4101	울산	동구	052-209-1510
	성북구	02-941-7257		울주군	052-277-1997
부산	부산시	051-581-4050	인천	인천시	032-726-3883
대구·경북	계명문화	053-589-7558	강원	춘천시	033-240-9832~3
	달서구	053-643-7994~5	경기	경기	031-259-6079
	수성구	053-784-8261		성남시	031-707-5961~2
	칠곡군	054-973-9604~9605		의정부시	031-850-5815~7
광주·전남	광주시	062-236-3262		고양시	031-936-7485
	전남	061-280-7499, 7494	경남	경남	055-751-3610
충북	청주시	043-254-8666		영산대	055-380-9573
	충북	043-217-1311~2		김해시	055-346-8440
충남	당진시	041-354-8558	전북	익산시	063-841-7480
대전	대전	042-939-4740		전북	063-717-1321
제주	서귀포	064-732-0039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지원 규모 전체예산 127억원

* '19년 지원현황 : 운영비 지원 190개 BI, 보육프로그램 지원 82개 BI, 리모델링 지원 7개 BI

지원 대상 창업보육센터, 3년 미만 (예비)창업자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경영평가 기본요건 미충족(60점 미만) 창업보육센터는 제외

지원 내용

○ 초기(예비)창업자 : 창업 사무공간 제공 및 기술·경영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접수

○ 초기(예비)창업자 : 연중 수시(창업보육센터별 상이)

○ 창업보육센터 : 2020.1월 ~ 2월(운영비 지원, 보육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접수 없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보육센터 : 입지 및 건립계획, 사업추진계획, 기업지원 계획 등

제출 서류

○ 초기(예비)창업자 : 입주 신청서 등

○ 창업보육센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응투자자금 조달 확약서, 창업보육 사업 계획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등

처리 절차

접수 → 요건확인 및 현장점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문 의 처

○ (사)창업보육협회 : 042-346-9622, 9607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홈페이지(www.bi.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3-4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98.12억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지원 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 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0, 1692~1693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2-480-4410~4414, 4416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0005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015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64~7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28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8138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3-5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예산 62억원

* '20. 1월 중 입주공고 예정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기타 창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교육, 전문가멘토링, 투자유치,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 지원

○ 통 · 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글로벌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활용 지원

구 분	지원내용
통·번역센터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제작보육실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테스트베드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 및 대면평가 → 선정·공간 배정 → 입주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창업존운영팀 : 031-5182-9102~5, 910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3-6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의 유산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70명(51억원)

지원 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 전통적인 골목산업 뿐 아니라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창업자

지원 내용

○ (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초기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BM, Branding, 디자인 등)

○ (액셀러레이터 연계 성장 지원) scale-up단계, 플랫폼 등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액셀러레이터가 선별하여 先투자(1,000~2,000만원)하는 경우에 사업화 자금을 일정비율(2~3배)로 매칭 · 지원 및 보육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공모

처리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발표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성과평가 등

문 의 처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41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3-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원 규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50개소 내외('20년 53억원)

지원 대상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시설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중 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지원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세무·회계·법률 등 전문가 상담지원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교육·멘토링	•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지원
네트워킹	•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신청·접수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정회원 승인 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

STEP1	STEP2	STEP3
정회원 신청 및 승인 K-Startup 홈페이지	패밀리 카드 발급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센터 입주신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STEP6	**STEP5**	**STEP4**
사후관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지원(최대 2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선정평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47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0년 지원시책」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1인 창조기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제2부

재도전기업 지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재도약 지원자금 ····· 412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415
4-3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 417
4-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419
4-5 재도전성공패키지 ····· 421

4-1 재도약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100억원 규모('20)

* 사업전환 960억원, 구조개선 240억원, 재창업 9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지 원 요 건
사업전환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전용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구 분	지 원 요 건
재창업	①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은 제외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전환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구조개선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시설자금 없음)
재창업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신청·접수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상시, 자금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사업전환 융자신청서 등
○ 구조개선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재 창 업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처리 절차

① 사업전환

신청대상	→	상담 및 계획제출	→	심사 및 평가
기업		절차안내/신청대상 확인 (중진공)		진단 및 타당성 평가 (중진공)
				↓
대출	←	지원결정	←	승인
사용내역점검/사후관리 (중진공)		융자지원 결정 (중진공)		사업전환 계획승인 (지방중기청)

② 구조개선

신청대상	→	상담	→	신청접수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대상여부		절차안내/신청대상 확인 (중진공)		신청접수/실태조사 서류안내 (중진공)
				↓
대출	←	지원결정	←	기업평가
사용내역점검/사후관리 (중진공)		융자지원 결정 (중진공)		사업성/기술성평가 (중진공)

③ 재창업

신청대상	→	상담	→	신청접수	→	성실경영평가
(예비)재창업자		절차안내/대상 확인 (중진공, 신복위)		신청접수(온라인) (중진공, 신복위)		도덕성 등 평가 (중진공, 신.기보)

대출	←	지원결정	←	기업평가
사용내역점검/사후관리 (중진공, 신보, 기보)		융자지원 결정 (중진공, 신복위심의)		사업성/기술성평가 (중진공, 신보, 기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8965, 453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2, 96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정리 및 기업회생 정보제공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50여개 기업(예산 9.5억원)

* '20년 지원현황 : 275개 기업 선정완료, 기업당 평균 2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 회생절차 등의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자금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 내용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전문가: 회계법인 전문 회계사 및 사업정리 컨설팅 수행 경력이 있는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접수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신청·접수 컨설팅 승인	→	수행기관 배정·승인	→	협약 및 컨설팅	→	진로제시
신청서 제출 대상여부 검토		수행기관 배정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3~5일)		사업정리 및 회생여부에 대한 진로제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35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3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기업회생 정보제공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경영위기 기업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사업, 마케팅, 생산, 인력, 재무 등 사업전반의 구조개선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여개 기업(예산 10억원)

* '20년 지원현황 : 30개 기업 선정완료, 기업당 평균 2,4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경영애로로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B, C, 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
②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중인 기업
③ 회생절차인가 중소기업(관할법원의 추천시 인가이전에도 지원가능)
④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⑤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⑦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자금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 내용

과제분류	컨설팅 내용
영업 마케팅 구조개선	거래처 및 산업 제품 서비스 분석, 마케팅 전략, 수출지원, 품목확장 및 다각화 전략 등
생산 / 구매 / 관리 구조개선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화, 원가비용 절감방안, 재고관리 등
조직 구조개선	인력효율화, 인건비 절감, 인사체계 개선 등
재무 구조개선	증자 등 자금조달, 유휴자산 매각 등

신청·접수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신청·접수	검토 • 승인	지원기업선정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컨설팅 실시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 검토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실사)	지원기업 선정 후 협약서류 제출 및 체결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중간점검, 완료점검

문 의 처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042-481-4530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 운영기관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본부 070-7458-849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90여개 기업(예산 27억원)

* '20년 지원현황 : 95개 기업 선정 완료, 기업당 평균 2,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없이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 : 서울회생,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제주, 전주, 청주, 춘천지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자금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 내용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 컨설팅 범위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신청·접수	→	컨설팅 승인	→	수행기관 선정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중진공)		컨설팅 대상여부 검토, 승인		수행기관 선정

↓

컨설팅 실시, 중간관리	←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착수점검, 중간점검, 완료점검		부담금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업/수행기관/ 중진공 간 협약체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35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5 재도전성공패키지

| 성실실패 기업인에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우수한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기반 재창업 지원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총 1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297개사, 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사업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 제품 ·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실패원인분석,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재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별도 평가 예정)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 등

처리 절차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	사업 설명회	→	신청·접수	→	성실경영 평가	→	서면·대면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재창업자 ↔ 창업진흥원						

선정 및 협약	→	사업수행(재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	성과평가
(예비)재창업자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 042-480-4434~38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475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1 부

소상공인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Q **지금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A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업종전환희망자를 선발해 재기의욕 고취, 이론·실습 등 60시간 내외의 재창업패키지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창업패키지 사업설명 참조)

Q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Q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3,660개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53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Q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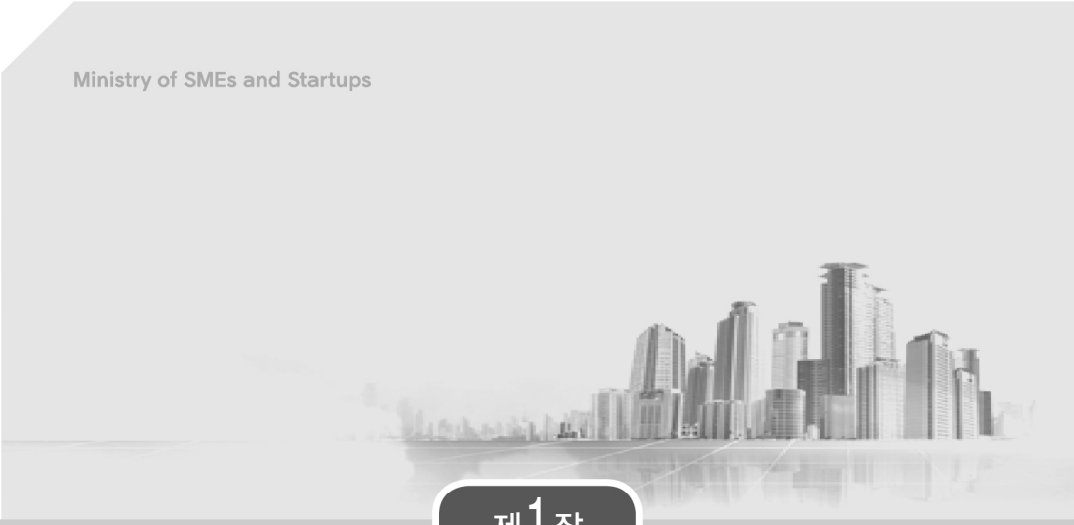

제 1 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430
1-2 상권정보시스템 ····· 433
1-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436
1-4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438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450명 내외(예산 166억원)

* '19년 지원현황 : 388명(예산 187억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이 안되는 점포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 창업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등 지원

○ 창업 기초교육 및 상품화 지원 : 창업을 위한 일반과정 및 MD 연계하여 제품 ·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약 4주)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점포체험 교육 (약 16주)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20.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대상자 선발(12개지역, 기수 당 225명 내외)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 락 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02-723-0174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051-463-0212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053-353-7667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062-367-0135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042-363-7494

* 인천, 경남, 전북 및 하반기 신설되는 3개 지역의 경우 별도 계약한 교육장 활용

○ (창업자금)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제출 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등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기초교육 및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	사업화지원
11기	'20.1월중 ~'20.2월중	'20.2월말	'20.3월초 ~4월초	'20.4월말 ~8월말	'20.9월초 ~12월말
12기	'20.5월중 ~'20.6월말	'20.7월초	'20.7월중 ~8월말	'20.9월초 ~12월말	'21.1월초 ~'21.4월말

* 12기 사업화 보조금 지원의 경우, 2021년 예산으로 지원 예정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고객센터: 1357

알려줘요! 중기씨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사업 아이템 분야의 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사업화 지원 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총 사업비의 50%, 예정)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 예시 :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디지털 장례업, 반려견 놀이방 등

1-2 상권정보시스템

|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와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 업종별 상권 · 입지 · 경쟁 · 수익정보 등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 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全국민(소상공인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창업중인 자)

지원 내용

○ (상권분석) 특정 지역·영역·업종의 업종, 매출, 인구, 지역정보 등의 상권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중분류 95종 소분류 837개

업종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추이, 유사업종 추이, 전년대비 증가·감소 업종, 음식업종 업소 변화 추이, 전년대비 업소수 비교, 업소변화 추이, 한식업종 업소수 증감 추이, 한식/백반/한정식업종 업소수 증감, 중·대분류 업종별 창/폐업률 및 업력 통계, 선택업종·유사업종·시설
매출	월평균 매출액 비교, 건당 매출액 비교,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중분류 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주말/요일별 매출 비율, 시간대별 매출 비율, 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인구	인구 구성, 주거인구·직장인구·유동인구 현황,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세대 규모별 아파트 단지 현황, 아파트 면적별 세대수, 아파트 기준기사별 세대수, 아파트 동/세대수 추이, 선택상권의 배후지 인구 변화 추이,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추이
지역	주요 집객시설 현황·추이,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지역별 점포 평균 임대시세 추이, 학교시설 현황, 교통시설, 지하철 이용 현황, 지하철 승하차 인원 추이, 기업체수 통계, 브랜드지수, 지역별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 (수익분석)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쥬얼스포츠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 (경영컨설팅) 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음식(5)	커피전문점/카페/다방, 한식/백반/한정식,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치킨, 라면/김밥/분식

○ (점포이력)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 (업종추천)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 (창업기상도) 7개 광역시의 3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에 대한 유동인구 · 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신규 제공 서비스〉

○ (창업자가진단) 예비창업자들이 현 상황에서 창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안내

○ (프랜차이즈정보 제공) 상권정보시스템의 위치정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프랜차이즈 정보를 연계하여 관련 정보 제공

* 프랜차이즈 상호명, 평균매출액, 임직원수 등

이용 방법

○ (포털)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앱 설치 후 이용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 1644-530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전략실 : 042-363-7152,7154

알려줘요! 중기씨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언제 갱신되나요?

A 15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6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되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창업 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융자 지원(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지원 규모 1,000명 내외(발굴 6.36억원, 연계자금 150억원)

* '19년 지원현황 : 3,000명(1인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사업자 포함)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창업자 역량, 사업성 등을 서면 및 대면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처리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1차 평가 (서면) → 2차 평가 (대면) → 3차 평가 (사업장 실사) → 성공불융자 지원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생활 혁신형 창업이란?

A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주변에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생계형과 기술창업의 중간)를 말합니다.

용어설명

성공불 융자 : 해외자원개발 등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1-4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소상공인 사업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소상공인 교육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지원 규모 소상공인 전체

* '19년 지원현황 : 159,638명 수료

지원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면대면 교육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

신청·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접속 후 e-러닝 교육 신청

문 의 처

○ 교육신청_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 자금, 오프라인교육 문의(1357)

○ e-러닝 교육 시스템 문의(1644-5302)

제2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 440
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442
2-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444
2-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446
2-5 나들가게 육성 ····· 449
2-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452
2-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455
2-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458
2-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461
2-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463
2-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465
2-1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467
2-1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469
2-1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471
2-15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 473
2-16 백년가게 육성사업 ····· 476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소상공인이 경영 · 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7,000명 내외(예산 12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 내용

○ 전문기술교육(20,000명)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7,000명)

- 소비자 트렌드, 업종별 경영전략 및 CS교육 등 경영개선교육 지원(국비 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신청·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경영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	교육신청·접수	→	교육수강	→	교육비 지원신청
공단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생 ↔ 공단

○ 경영개선교육

교육생 모집	→	교육신청·접수	→	교육수강	→	만족도 조사
공단		교육생 → 공단		교육생 ↔ 공단		교육생 ↔ 공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용어설명

민간교육기관 : 학원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점포운영·경영진단·세무·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5,000개 업체 지원(지원예산 79.8억원)

* '19년 지원현황('19.11. 기준) : 4,551개 업체에 경영 및 기술전수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 업종전환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진단컨설팅 시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컨설팅 신청 (시행공고일~예산소진 시)	사전진단컨설팅 (컨설팅분야 및 업종 결정)	자부담금 납부 및 전문컨설턴트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컨설팅계획서 작성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사후관리/ 성과평가
전문컨설턴트	전문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 042-363-7832~4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컨설팅 자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전진단컨설팅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컨설팅 분야 등이 결정되면 자부담금 납부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합니다.

Q 컨설턴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부담금을 납부하신 다음 시스템을 통해 컨설턴트의 경력 등을 확인하신 후 직접 선정이 가능하십니다.

2-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500개 업체 지원(예산 1억원)

지원 대상

○ '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법인사업자사업 수혜업체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

처리 절차

신청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상담 및 지원결정		사건처리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 의 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4,604,000원, 4인가구: 5,649,000원 <2018년 기준>

2-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50개 조합(207억원)

* 공동사업(250개 내외), 판로사업(200개 내외)

지원 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협동조합은 사업참여 가능)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토막광고,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역판매전, V-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 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협동 조합 활성화	① 소상공인 협업 사업신청·접수	→	②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	③ 협업전문교육 및 협업사업지원	→	④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소진공 (지역센터)		중기부&소진공		소진공 (지역센터, 협업아카데미)		중기부&소진공

처리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7720~5),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2-5 나들가게 육성

|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들가게 신규 개점, 점포경영 지원, 나들가게 선도지역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700여개 나들가게(지원예산 52억원)

○ 점포경영 지원 : 1,200개 내외 나들가게

○ 나들가게 선도지역 : 10개 선도지역, 500개 내외 나들가게

지원 대상 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① 점포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지원 내용

○ 점포경영 지원

- (점포경영 개선) 부진점포 회생지원(자부담 10%), POS 활용교육 등 지원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나들가게 선도지역 : 나들가게 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 시설 및 경영 개선, 점주역량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신청·접수 '20.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신규개점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점포경영 지원 : 나들가게 POS를 통해 지원 신청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각 선도지역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계획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 신규개점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점포경영 지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나들가게 POS로 신청

처리 절차

○ 나들가게 신규개점

신청·접수 (수시)	→	현장평가·선정	→	현장교육·협약	→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	개점완료
희망 점주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POS 설치업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 나들가게 점포경영 지원

사업계획 공고 ('20.1월)	→	위탁업체 선정 ('20.2월~)	→	지원점포 신청·접수 ('20.2월~)	→	점포경영 지원 실시 ('20.4월~)	→	점포경영 지원완료 ('20.12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희망 점주		위탁업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문 의 처

○ 나들가게 POS 콜센터 : 국번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3952, 4583

알려줘요! 중기씨

Q **나들가게 온라인 상품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에 저렴한 상품공급을 위해 온라인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공급사별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별로 수시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개 내외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지역에 위치한 나들가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경영 개선, 점주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가맹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맹본부 지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가맹점 교육 및 경영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6천만원 지원)

* '19년 지원현황 : 15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업력 최소 1년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지원 내용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형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가맹점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항목	내 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써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업체당 개발비용 80%지원, 최대 60백만원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 코드 등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팜플렛,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신메뉴 개발		시장조사, 현지화, 소비자 기호조사, 등록·인증 등	
가맹점 교육		법률, 세무, 노무, 금융 등 가맹점 운영관련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이후 기타분야 신청가능)		- 시스템 체계 구축	선택형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구축			- IT환경 구축	
-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지원	
			- 신메뉴 개발	
			- 가맹점 교육	
② 홍보, 멘토링, 교육	-		② 홍보, 교육(예비가맹창업자)	-

신청·접수 '20. 1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 · 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본, 최근2년 재무재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1차 통과(서류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재무재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공고 ('20.1월중)	→	지원업체 선정 ('20.2월~3월)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금 지급
중기부		공단		지원업체, 개발회사, 공단

→	중간평가 (중간점검)	→	최종보고 (최종평가·잔금 지급)
	지원업체+개발회사 ↔ 공단		지원업체+개발회사 ↔ 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9, 7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 직영점 보유 :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 직영점 미보유 :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지원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 등급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II 등급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II등급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IV등급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통	• 박람회 참가 지원(비용일부 자부담) •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준평가 심사비 국비 일부 지원

신청·접수 '20. 2~3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이메일(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160만원)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20.1월중)	→	신청·접수 ('20.2월~3월)	→	현장평가 및 가맹점 서베이 ('20.4월~5월)	→	평가결과 확정 ('20.6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원 조사 전문업체		운영위원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9, 7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평가 이후 연계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2-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6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34개 센터 설치·운영(예산 131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 내용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 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기술 · 경영 애로 해소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작업환경개선 : 소공인 작업장의 환풍시설, 분진제거기, 집진기, 위생작업대, LED 조명 등 설치·교체 지원(45억원)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지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신청서 등

처리 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사업수행	→	결과보고
소공인→센터		평가위원회		소공인		소공인→센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 7904, 79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19년말 기준) >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및 장비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070-4170-5973
2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및 장비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031-354-3641
3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 장항 인쇄 센터	031-913-6611
4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032-234-5911
5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031-423-6726
6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031-8067-5040
7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 (제과제조)	성남 상대원 식품제조 센터	031-776-2692
8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 (한복)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	062-228-2348
9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 서남 인쇄 센터	062-236-5013
10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053-661-2357
11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제조 (안경테)	대구 노원 안경 센터	053-355-0994
12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 정동 인쇄 센터	042-226-5556
13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속가공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042-939-4827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4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042-629-7728
15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051-631-2050
16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051-636-7510
17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	051-890-2334
18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02-2277-2922
19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02-741-5366
20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02-2634-7727
21	경기	양주시(남면)	섬유	양주 남면 섬유제조 센터	031-860-0994
22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02-919-9623
23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02-741-8755
24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 (커튼·블라인드)	서울 반포 섬유(커튼·블라인드) 센터	070-4848-0972
25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02-865-9213
26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032-723-9982
27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063-219-0341
28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순창 장류제조 센터	063-652-1030
29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 인삼(식품) 센터	041-750-1653
30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 중앙 인쇄 센터	043-225-1028
31	대구	서구(평리동)	의류봉제	대구 평리 의류 봉제 센터	053-721-7442
32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경기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031-454-4881
33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 대봉 의류 봉제 센터	053-783-3399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	김해 진례 도자 센터	055-345-6161

2-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7개 내외 구축(예산 115.2억원)

* 지원현황 : 전국 23개 집적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지원 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지원 내용 공동기반시설(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2/3 지원 (1곳당, 14.4억원 내외)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 절차

사전검토	→	현장실사	→	종합평가	→	집적지구 지정	→	인프라 구축
중기부, 공단		현장실사단		평가위원회		중기부		지자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2, 79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50개사 내외(예산 80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261개사 지원(예산 80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 내용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보조 비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80%
온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인건비 등) 지원	
뉴미디어 마케팅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영상・광고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디자인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인증 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조사・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해외배송	EMS(특급우편), K-packet(해외배송), 항공특송, 대행비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월에 1회만 공고(2019년에는 1월, 3월 2회 공고)

○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항목별 한도를 폐지(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광고)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신청·접수	→	서류평가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소공인→공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소공인↔공단		소공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9, 7908, 79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2-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지원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5개사 내외(예산 3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69개사 지원(예산 39.2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 내용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50백만원, 80% 한도)

과제유형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혁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정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월에 1회만 공고(2019년에는 1월, 3월 2회 공고)

○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 스마트공정 구축 신설

○ 스마트공정 전문기관을 통한 소공인의 스마트공정 인식변화 및 활용역량 제고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과제 요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신청·접수	1차 평가	사업계획 수립	2차 평가	협약체결	사업 수행
소공인→공단	서류 평가	전문기관↔소공인	현장 평가	공단↔소공인	소공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3, 791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집적지 혁신성장 기반의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복합지원센터 구축 2개 내외(예산 50억원)

지원 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지원 내용 소공인 집적지에 입주부터 기획 ·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 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25억원 내외)

신청·접수 '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 절차

사전검토	→	현장실사	→	종합평가	→	센터 지정	→	센터 구축
중기부, 공단		현장실사단		평가위원회		중기부		지자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전국 62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접수 전국 62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홈페이지 접수(http://www.semas.or.kr) 등

처리 절차

피해상담 신청 (연 중)	→	기본상담 진행	→	전문상담 진행 및 연계지원	→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등) 및 전문기관(공정거래조정원 등)		소상공인진흥공단

문 의 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363-7754, 7742

알려줘요! 중기씨

Q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거래,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인가요?**

A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광고행위, 수위탁/하도급거래에서의 대금 미지급, 대규모유통업거래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부당한 반품,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1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소상공인 판로지원확대를 위하여 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 지원,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500만원 지원(313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홈쇼핑 입점 지원

- ○ (TV홈쇼핑·T-커머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 및 수수료 지원 ('19. 200개사 → '20. 300개사)
- ○ (V-커머스) 민간 쇼핑몰(예: CJ 쇼크라이브 등) 입점, V-커머스 방송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19. 200개 → '20. 1,000개)
- ○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쇼핑몰 메인화면에 소상공인 제품 노출 ('19. 25회 → '20. 100회), O2O 플랫폼에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사)
- ○ (해외 채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 지원('19. 50개사 → '20.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105개국)
- ○ (1인방송 커머스) 1인 크리에이터, 방송전문인력(PD, 편집)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력 교육('19. 200명 → '20. 500명), 콘텐츠 제작 지원('19. 100개사 → '20. 1,000개사)

신청·접수 '20. 2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아임스타즈(http://www.imstar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주요상품정보(카달로그 등),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제품선정		사업진행
중소기업 유통센터	→	소상공인 → 유통센터	→	유통센터 및 전문기관 평가	→	유통센터 및 전문기관 컨설팅 진행 및 입점 지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2

○ 소상공인마당 : http://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5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 0%대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여 등록해야 함)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인프라 및 홍보 · 마케팅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인프라	QR키트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POS기기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QR단말기	보급형 단말기 보급	
홍보·마케팅	지역별홍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예산	지방비 매칭
	홍보물제작 등	디지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협업공동마케팅 등	결제사업자 및 협·단체와공동 마케팅	

○ 소비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공공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신청·접수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제출 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 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페이지 가입	→	가맹점 등록신청	→	QR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 설치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수령	→	신청서 작성·제출	→	QR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 설치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3990, 453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로페이팀 : 042-363-7691, 7696~7699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01~5929

○ 콜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알려줘요! 중기씨

Q **제로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 건가요?**

A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ㅇㅇ페이,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소비자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도 결제할 수 있는가요?**

A 아니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기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A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2-16 백년가게 육성사업

|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300개 내외 업체

* '18~'19년 지원현황 : 300여개 백년가게 선정, 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지원

지원 대상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 (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지원 내용

○ (컨설팅) 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 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 융) 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공고문 참조)

○ (홍 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20년도 우대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신청기간) '20.2월~11월말(연중 수시신청)

○ (평가기준)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2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3	증빙자료(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해당부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
4	사업자등록증	1부	업력, 업종 등 확인

처리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진단)
중소벤처기업부 ('20. 2월)	소상공인 등→공단 ('20. 2월~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중기부, 공단, 컨설턴트 (신청·접수 2주 이내)

지역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홍보 등 연계지원	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6, 8, 10, 12월)	중소벤처기업부 (4, 6, 8, 10, 1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년)

문 의 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1/7985/7986),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042-481-3914/3916),
홈페이지(www.mss.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제3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1 희망리턴패키지 ····· 480
3-2 재창업패키지 ····· 483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485
3-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487

3-1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45억원, 25,000여개 업체

* '19년 344억원, 22,500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채무관리,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 철거 · 원상복구 지원 : 점포 철거 · 원상복구 관련 컨설팅 및 실행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 재기교육 :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취업성공패키지 : 3단계(취업상담 →취업훈련→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만 18~69세,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

○ 법률자문 지원 : 폐업시 각종 법률(세무 · 노무 · 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권리금·보증금 보호, 채무 및 신용관리, 세금정산, 근로자 퇴사 및 임금정산, 미수급 지급 등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법률자문 지원 규모 : ('19) 500건 → ('20) 3,000건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 기관 모집·선정 ('20.1)	→	사업 공고 ('20.1)	→	신청·접수 ('20.2)	→	컨설팅, 재기교육 등 지원 ('2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전직장려수당은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3-2 재창업패키지

|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75억원, 6,000여개 업체

* 19년 75억원, 6,000개 업체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 비과밀업종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마케팅, 현장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과정당 60시간)

○ 재창업멘토링 : 재창업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마케팅, 세무, 창업 절차 등에 대한 멘토링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 및 선정	→	교육신청·접수	→	교육과정 운영	→	멘토링 지원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생 → 멘토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1588-5302, 042-363-7827

알려줘요! 중기씨

Q 재창업패키지사업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가입 방법

○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앱

○ 방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공제금 지급 지급내용

○ 지급 사유 :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기준이자율 : 폐업·사망시 2.7%, 노령·퇴임시 2.4%('20.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기타 혜택

○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1~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중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며,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위기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연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과 달리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 가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공제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제부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으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0% 한도 내에서 연이율 3.4%('20년 1분기)로 저리대출이 가능합니다.

3-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고용보험 가입률제고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22.06억원, 9,5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또는 전국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 팩스 신청

처리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환급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7867

○ 국번없이 1357

알려줘요! 중기씨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소상공인(사업주)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시면 3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4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1 소공인특화자금 ····· 490
4-2 성장촉진자금 ····· 492
4-3 일반경영안정자금 ····· 494
4-4 청년고용특별자금 ····· 496
4-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498

4-1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4,5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2 성장촉진자금

| 장수 소상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2,3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3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11,025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4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 규모 4,475억원

지원 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700억원

지원 대상 혁신형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기준금리 + 0.2%p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부

전통시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5장

전통시장 지원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504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507
5-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509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 512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514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518
5-7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522
5-8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525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 528
5-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530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 시장(1,424억원)

* '19년 지원현황(1,469억원) : 73곳(주차장 건립지원), 28곳(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지원이 안되는 시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지원 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 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하주차장 건립지원 허용(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지원)

○ 지역과 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설계·디자인 공모 의무화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접수 '20. 5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시·도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20.5월)	신청·접수 ('20.5월)	현장평가·진단 ('20.6월)	선정위원회 최종선정협의회 ('20.7월)	심의조정위원회 ('20.8월)
중기부	시·군·구	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시·도, 지방청	중기부, 시·도

사업비 교부 (선정 이후, '21.1월~)	사업 추진 ('21.1월~)
중기부 → 시·도 → 시·군·구	시·군·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통시장 40곳 내외(60억원)

* '19년 지원현황 : 50개 시장 ('19년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지원이 안되는 시장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지원우대

-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선지원)
-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
-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지원 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지자체 부담가능)

○ 시장당 5억원 이내(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신청·접수 '20.1월 중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20.1월)	→	신청·접수 ('20.1월)	→	현장평가·진단 ('20.2월)	→	서류평가 ('20.3월)	→	심의조정위원회 ('20.3월)
중기부		시·군·구		지방청, 시·도, 외부전문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중기부

→	사업비 교부 (선정 이후, 4월~)	→	사업 추진 ('20.4월~)
	중기부 → 시·도 → 시·군·구		시·군·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5-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바우처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 바우처 지원 부문 : 전국 350곳 내외*, 1곳당 최대 6천만원

*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6곳 등 포함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곳

✓ '20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지원 대상은 제외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30%~90%를 지원

< 선정 등급별 바우처 지원 한도 >

바우처 등급	가	나	다
바우처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상인연합회, 계속지원시장은 바우처 지원 한도 별도 운영

○ 바우처 활용 범위 : 지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 · 추진 가능

구분	분야	바우처 활용 범위
사업지원 바우처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지원, 문화공연, 플리마켓, 브랜드(BI, CI)개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 디자인개발(브로셔, 포장지 등), 전통시장 지도 제작, 스토리 북 제작, 외국어자료, 리플렛, 브로셔 제작, TV·신문·잡지·SNS 홍보, PPL, 포털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판촉전 등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경영교육, 마케팅교육, 서비스교육. 제품개발교육, 세법·회계교육, ICT교육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지원
	컨설팅	코칭, 경영멘토링, 경영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특허·인증 전략 컨설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의 시장 자문
	홍보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곳 이상(단, 제주는 5곳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상품전시회" 개최·운영 경비 지원
인력지원 바우처	배송 서비스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 2명(배송기사 1, 전화상담원 1)의 인건비 지원
	매니저 지원	유통, 마케팅, 기획, 회계, 세무 등 상인회 행정·사무 지원을 위한 시장매니저의 인건비 지원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 · 소매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시장 진출* 등 판로 확대 지원 강화

*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배송비 일부 보조 등

○ ‘21년 지원대상 신청·접수 : ‘20. 5~6월 예정

* ’20년 지원대상은 ‘19. 9월 조기 선정 완료

* 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지원대상 확정 (중기부·소진공)	→	사업계획서 제출 (상인회→소진공)	→	사업 수행 (상인회·수행기관)	→	정산 및 완료보고
’19.12월		~’19.12월		’20.1~11월		’20.12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1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7, 8929

알려줘요! 중기씨

Q 바우처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바우처는 사업·인력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로 관리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된 바우처를 수행기관(교육기관, 이벤트회사 등)에 제시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기관에 지급)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시중의 14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

발행규모 '20년 2.5조원 규모 발행계획

상품권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4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모바일상품권 : 6개 금융기관 및 3개 간편결제사 앱(APP)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농협, 체크페이 · 비플 · 머니트리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0)에서 확인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용 전 BC카드 홈페이지(https://bccard.com)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등록 필요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가맹 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	가맹점(가맹시장) 자격요건 심사	→	가맹점 승인 및 등록
상인, 상인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 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 카드 수수료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 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3, 7646, 7632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8930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9곳 내외('20년도 예산 2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규 104곳 포함 179곳, 361억원 지원(국비 기준)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신청접수예정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20억원 이내('20년 신규 2곳 이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20년 신규 44곳 내외-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에서 도약하는 시장 포함)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20년 신규 30곳 내외)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시장 당 15백만원 이내 ('20년 신규 20곳 내외)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은 국비 100%)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 지원우대 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전된 곳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총액이 적은 곳
-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글로벌명품, 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 등)을 지원받았거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곳
✔ 공고마감일 기준, 중기부 및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은 곳
✔ 사업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자세한 내용은 '20년도 공고 확인)

지원 내용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

- 시장 대표상품(특화 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경제형 서비스 제공(작은도서관, 미니식물원 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노후 공간 및 시설 등에 시장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재생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 추진 전,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시장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3대 고객서비스 혁신 /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 등 2대 역량강화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2년 연속지원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기초역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혁신 전략수립, 상인조직 역량배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난해) 당해연도 상반기 공모하여 사업 착수 및 추진

○ (올해) 전년도 공모선정을 통한 사업조기 착수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신청·접수 매년 5월경 다음년도 지원시장 선정공고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 등)
②고객신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③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②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 서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후보시장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름

사업 절차

사업 공고 ('19.6.28)	신청·접수 ('19.7월)	지원대상 선정평가 ('19.8월)	지원대상 선정 심의·발표 ('19.9월~12월)	사업 추진 ('20.1월~)	성과조사·평가 ('20.11월~12월)
중기부·소진공	상인회·지자체 → 지방청	소진공	중기부·소진공	사업단, 상인회	소진공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47, 45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781, 762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또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의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단계를 생략하고 기반조성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단계 : ①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②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③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④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Q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지역선도시장)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금번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최상위 단계의 지원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성화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旣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 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3곳 내외(22.5억원), 기존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17곳 내외(53.5억원),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19년 지원현황

* 청년몰 조성 : 6곳 120억원 (1곳 당 10~30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청년상인 도약지원 : 218명 (1인 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90~100%, 자부담 0~10%)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 2곳 8억원 (활성화 최대 3억원, 확장 최대 10억원,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청년몰 대학협력 : 12곳 16억원 (1곳 당 1억원 이내, 국비 100%)

지원 대상

○ (청년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청년상인) 만39세 이하로 청년몰 입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이며, 도약지원의 경우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

*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창업보육형 청년몰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및 상권르네상스 선정지에 포함된 경우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중이거나, 설치한 곳

지원제외(청년몰)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시장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중인 시장

지원제외(청년몰 입점 청년상인)

✔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의 참여자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에 선정 후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 지원 우대사항(청년몰 입점희망 청년상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 창업관련 수상실적, 유사 창업경험자

지원 내용

○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10~3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조정(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창업지원(청년몰 입점) : 창업교육,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보조,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청년몰 입점 및 창업 지원

- 비용 지원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등 직·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불가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지자체·상인회 추천 → 심사·선정 → 전문가 컨설팅 → 시작품·디자인 개선 지원

○ 청년몰 활성화(몰 당 3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 청년몰 확장(몰 당 10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조성 :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사업수행
중기부 및 공단	시장 및 청년상인 → 지방 중기청·공단	지방중기청, 공단	중기부(심의위), 공단	사업단, 청년상인등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78, 7774
- ○ 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 : 042-252-1427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Q 지원대상인 전국 청년몰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청년상인육성사업- 청년몰조성에서 전국 청년몰 지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만39세를 초과하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5-7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해당 구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 단위 지원사업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 · 운영, 페스티벌, 문화 · 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상권활성화구역 당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19년 지원현황 : 총 12곳('18년 3곳, '19년 9곳) 선정하여 지원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해당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신청요건〉

-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 ▪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 이하 제한 등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사업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공고시 지정한 기한까지) 및 상권관리기구 설립이 필요

〈지원우대〉

- 해당 구역에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구간별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지자체 ·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 · 커뮤니티 · 청년 창업, 힐링(문화 · 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사업(H/W)과 상권활성화사업(S/W)을 추진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를 확대하고, 상권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 (기존) 상권당 80억원 → (변경) 상권당 60~120억원(평균 95억원 수준)

총 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신청·접수 '20년 상반기 공고예정

*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로 송부

〈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 · 발표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역량, 경제성, 향후 관리계획 등 평가

제출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지방비투자 확약서, 시·도 추천서,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임차인 · 상인)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사업 공고 ('20. 상반기 예정)	→	신청·접수 ('20. 상반기 예정)	→	서류·현장평가 ('20. 하반기 예정)	→	최종 선정 ('20. 하반기 예정)	→	사업 추진 ('21년~)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심의조정위원회 (중기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상권관리기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1, 7779, 755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상권 르네상스(상권 활성화)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50%이며, 민간부담금(10% 이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합니다.

Q 상권관리기구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상권관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 사단법인)이며, 상권활성화사업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정산, 상권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5-8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사업 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 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시장(상인회) 및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배상책임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원)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원)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안전관리팀 : 042-363-7773, 7976

○ 콜센터 : 1599-5460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처리 절차

가입설계 및 가입 상인(회) → 공단	**계약접수** 공단(전산시스템)	**서류 심사 및 공제료, 가상계좌 안내** 공단 (심사)담당자	**공제료 수납** 상인(회) → 공단
사고접수 공단(전산시스템)	**사고통보** 상인(회) → 공단	**사고발생** 전통시장	**확인서 및 약관 발행** 상인(회)→전산시스템
현장조사 손해사정업체	**지급공제금 결정 및 통보** 공단 → 상인(회)	**공제금 청구** 상인(회) → 공단	**공제금 지급** 공단 → 상인(회)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 · 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62개 시장(상점가) 내외(예산 2,458백만원, 국비 100%)

지원 대상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 · 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추진 절차

대상선정	점검기관 선정	사업시행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중기부 (지자체 추천 시장)	공단 (분야별 점검 기관 협약 체결)	점검대상별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기관)	분야별 점검 기관 → 상인회	분야별 점검기관 → 중기부, 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안전관리팀 : 042-363-7970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알려줘요! 중기씨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5-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지원 규모 2.3만점포(132억원)

지원 조건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및 민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민간부담금(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부담금 지자체 부담가능)

지원 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추진 절차

①신청·접수	②현장평가 (70%)	③서류평가 (30%)	④결과 통보 (현장+서류)	⑤대상선정
시장→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지방 중기청	소진공	소진공 → 중기부	중기부

⑥선정결과 통보	⑦사업비 신청	⑧사업비 교부	⑨사업시행	⑩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중기부 → 지자체	지자체 → 소진공	소진공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소진공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4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알려줘요! 중기씨

Q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나요?

A 네,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한 소방서와의 연계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신청점포수가 전통시장 영업점포수의 30%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영업점포수 30% 이상의 점포주(상인) 동의서명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미리 녹음되어 있는 멘트로 소방서(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비

주소형감지기: 화재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감지기

제3부

보증지원 제도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6장

보증지원 제도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536
6-2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539
6-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542
6-4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544
6-5 플러스 모바일 보증 ····· 547
6-6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 549
6-7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 551
6-8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554
6-9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557
6-10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560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26.4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	`19 11월
보증공급	건 수	375,150	448,844	464,329	478,419	497,304	538,953
	금 액	85,057	106,386	111,849	116,229	120,743	132,654
보증잔액	건 수	756,842	833,213	910,813	984,378	1,035,658	1,128,399
	금 액	144,501	162,423	179,713	191,673	204,606	228,820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6-2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 규모 2조원

지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급여대장, 근로·고용계약서 등 • 법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기업)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명단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추가 우대사항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 인원수에 따라, 추가한도(1인당 300만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 조합설립신고필증 및 출자지분표 사본 (협동조합 등) • 마을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서 (자활기업)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6-4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단, 1~3등급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문체부 융자지원 대상업종별 접수서류 등(업종별 상이)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무엇인가요?**

A 일반 · 국내 · 해외여행업, 관광 · 소형 · 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등 총 33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6-5 플러스 모바일 보증

| 모바일 기반 금융회사 공동지원 신용보증

생업유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바일 기반의 보증으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20년 16.7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취급 금융회사 :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지원 대상

○ [모바일보증]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으로서, 실제 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개인기업

○ [플러스대출] 모바일보증 대출취급 대상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지원 내용

○ [모바일보증] 업체당 최대 17백만원 이내 보증지원

○ [플러스대출] 금융회사 평가결과에 의해 대출지원

신청·접수

○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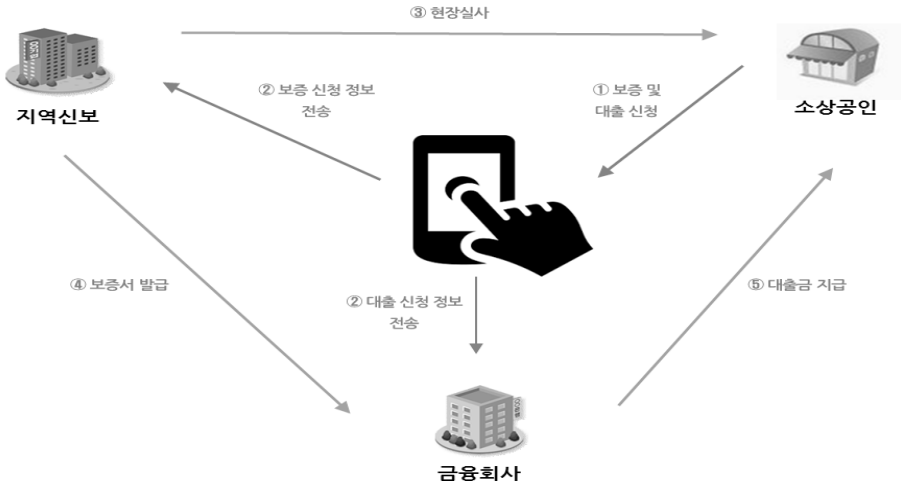

6-6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수출환경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기반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 취급금융회사 :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제주, 전북

지원 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가동)중인,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예정인 잠재수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신청 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의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잠재수출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실적 확인용)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잠재수출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수출실적은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면세점*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납품실적은 없으나, 납품계약서를 보유한 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상거래 수출역량강화사업' 에 참여한 수출창업기업를 의미합니다.

6-7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종결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 결정된 기업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대위변제 기업>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재단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

✔ 재단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1. 재단 대위변제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 연대보증인
2. 재단 대위변제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 대위변제기업의 연대보증인

<법적채무 종결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거나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기업), 또는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관리종결기업>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 단, 대위변제기업의 경우 본건 3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사업재기계획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 심사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도덕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 보증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A 재도전 심의 평가는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업의 사업성(제품경쟁력, 영업전략의 확보 및 미래성장성 등), 도덕성(채무상환노력, 체납사실, 법규위반 등), 경영의지 및 경영능력(대표자의 경영의지, 경영능력 및 자금조달·운용계획), 실현가능성(사업재기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6-8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20년 16.7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지원제한업종 예외 기업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용 소상공인정책자금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받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0백만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중 적은 금액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재해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신보,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지원 불가능한가요?**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권에 신보, 기보 채무 포함
- 위 면책으로 신보, 기보가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

6-9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20년 16.7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요건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장애인확인증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장애인확인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업력 6개월 이상" 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6-10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 채무보증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단위 : 건/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	누계 (3개년치)
보증 공급	건수	34,226	35,246	31,515	100,987
	금액	3,579	3,895	3,545	11,019
보증 잔액	건수	113,046	116,755	116,824	346,625
	금액	7,829	8,162	8,374	24,365

지원 대상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구 분		햇살론(자영업자)
지원목표		4조원('10.7.26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업무위탁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상환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2천만원 / 창업자금 5천만원 /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이행) •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 •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제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 접수서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용 보증재단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부 록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 564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568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209호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능동로275, 비전빌딩2층(군자동)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605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6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4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지점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 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두암동)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5층 (신대리1988)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수원시, 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 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빌딩 505호	광명시, 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031)788-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 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 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2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중구, 동구
(충남)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 2청사 1동 3층	서산시, 보령시, 태안시, 당진군, 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청양군, 세종시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 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정문 옆 별관1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 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279-3번지, 경남은행 서부영업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중앙회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재 단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임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제4편

공통사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1 부

기 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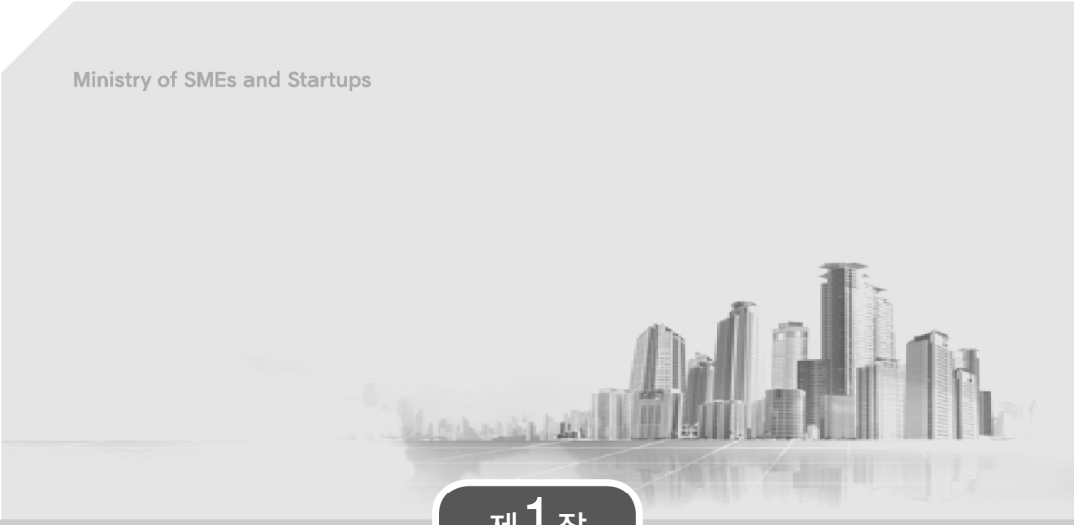

제 1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1-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574

1-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전문가가 기업의 인사 · 노무, 세무 · 회계, 법률, 마케팅 등 각종 경영 애로를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 (전문가 상담) 제한없음, (현장클리닉) 2,000개사 내외

* '19년 지원현황 : (전문가 상담) 10만 건, (현장클리닉) 2,012개 업체

지원 대상

○ 전문가 상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현장클리닉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해결(통상 3일, 최대 7일)

현장클리닉 지원 제한

< 지원제외 업종 >

-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지원 조건 상담은 무료, 현장클리닉은 1일당 35만원 (기업부담금 20%, 7만원)

상담 신청

○ 전 화 : 국번없이 1357

○ 인터넷 : http//www.bizinfo.go.kr/link

○ 방 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아래 참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592, 4397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 화	주 소
서울	02-2110-6351~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2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2층
광주·전남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41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광주·전남 제주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6호
인천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천안)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울산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7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충북	043-230-530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063-210-643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2-1 거래 공정화 ····· 578
2-2 성과공유제 ····· 584
2-3 협력이익공유제 ····· 587
2-4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 589
2-5 상생결제제도 ····· 591

2-1 거래 공정화

|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기업 간 수 · 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신고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신고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 공정거래 교육, 납품대금조정협의 지원

지원 대상

○ (법률상담, 신고·분쟁조정)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정거래교육)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 (납품대금조정협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가 필요한 수탁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신고 · 분쟁조정)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수탁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고조사 및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을 통해 피해해결 지원

○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 지원사항: 강사료, 임차료,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의 신고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용이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단체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추가 설치

* 총 69개소 : 기존 29개소(중기부, 지방청, 협력재단, 사업자단체 15개소) → '19년 40개소 추가('19.6)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법률상담) 상담전용 번호(1357+내선9)

○ (신고 · 분쟁조정) 온라인, 유선, 우편 · 방문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 수 · 위탁거래 종합포털(poll.mss.go.kr)
- 유선접수 : (신고 ·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전분쟁조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공정거래교육)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lhy@win-win.or.kr / 팩스 : 02-368-8940
- 우 편 : (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9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제출 서류

○ (신고 · 분쟁조정)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1부, 신고의 원인 및 사실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등

*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별지 1호 서식 참고

○ (공정거래교육) 교육 신청서 1부

처리 절차

○ (법률상담) 상담전용 번호(1357+내선9)를 통해 법률상담

○ (신고 · 분쟁조정)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해 신고 · 분쟁조정 절차 진행

신청서 제출 (* 온·오프라인) → 신고 또는 분쟁조정 접수 → 피해사실 및 확인조사 → 위반기업 시정조치 또는 분쟁조정 성립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

–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조정 신청 (수탁기업→위탁기업) ⇒ (10일) 조정 개시 (수탁기업↔위탁기업) ⇒ (30일) 조정 성립 / 분쟁조정 신청 (수탁/위탁기업 → 중기부)

–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 신청하는 경우

협의 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 (20일) 조정 신청 (협동조합 → 위탁기업) ⇒ (10일) 조정 개시 (협동조합 ↔ 위탁기업) ⇒ (30일) 조정 성립 / 분쟁조정 신청 (수탁/위탁기업/조합 → 중기부)

○ (공정거래교육) 재단과 일정, 내용협의 후 교육(선착순 지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895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 02-368-8470(lhy@win-win.or.kr)

알려줘요! 중기씨 Q A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사업자단체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8958 F)042-481-8960	중소기업중앙회(KBIZ)	02-2124-313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470 02-368-8463 F)02-368-8940	벤처기업협회	02-6331-7004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F)02-2110-066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INNOBIZ)	031-628-9633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55 F)031-201-6959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032-680-3922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5 F)032-818-020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3 F)051-335-4335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6 F)052-283-0354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F)055-262-5560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F)053-626-2602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F)062-366-9613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32 F)063-210-6460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9 F)042-865-6139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F)043-235-249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F)033-260-1629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사업자단체명	연락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3481-9900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협동조합	02-3474-712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02-556-03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4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02-865-9213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다이캐스트공업 협동조합	02-716-1611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02-786-4116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02-6240-1153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71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소프트웨어개발 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사)IT여성기업인협회	031-8023-9953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 사업자협동조합	010-5318-3066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10-3805-0158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010-5414-0151
한국전등기구엘이디 산업협동조합	032-675-9742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2-2 성과공유제

| 대·중소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한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대기업·공기관·1차(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추진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 내용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매출 확대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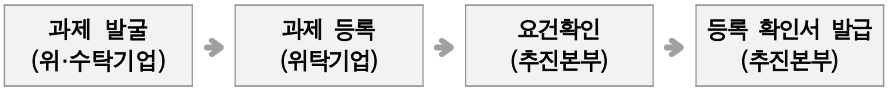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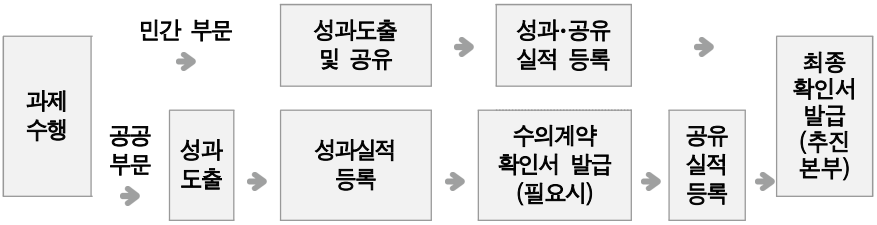

대표모델

① 신제품·신기술 개발	②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 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③ 기술이전	④ 공정개선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고 품질, 비용 및 납기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⑤ 성능개선	⑥ 원가절감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⑦ 관리시스템 개선	⑧ 서비스 용역개선
위탁기업이 협력사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사 개선 목표 달성 시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 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5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84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2-3 협력이익공유제

| 대·중소기업의 협력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활동을 하여 발생시킨 재무적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대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등록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사업 내용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의 협력활동을 협력이익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www.winplus.or.kr)을 통해 확인

○ 협력이익공유제의 요소

① 협력관계

* 이익 공유 대상에 상생협력 활동의 대상이 되는 대·중소(중견)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등 등록·협력기업

② 협력이익

*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협력이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재무적 성과'로 한정

③ 공유방식

*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등록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하되, 다수의 협력사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

–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④ 사전계약

* 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

○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세 부 내 용	수 행 주 체
자율협의·계약	자가 체크리스트 실시 계약	등록기업·협력기업
과제등록·승인	과제등록 과제등록 심사	등록기업 추진본부
과제수행		등록기업·협력기업
협력이익공유		등록기업·협력기업
과제확인	과제확인 신청 과제심의 확인서 발급	등록기업 심의위원회 추진본부

과제유형

1 협력사업형

R&D등 공동의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등록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하여 공유하는 계약모델

2 마진보상형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협력사의 단가, 수수료, 마진율 등 수수료 인하·면제에 연계되도록 하여 협력사에 추가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모델

3 인센티브형

등록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협력사가 노력한 기여분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이익을 추가 공유하는 계약모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5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83

○ 협력이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winplus.or.kr

2-4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 · 운영

| 대·공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개방

대·공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합니다.

사업 개요

대·공기업 및 협력사 간 동반성장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

-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상생누리 운영 흐름도>	<상생누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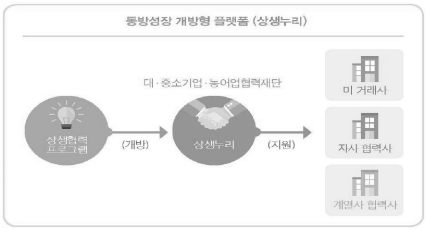	

지원내용

○ 상생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

- 166개사 3,106건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등록('19.11 기준, 누적)

* 대기업 107개사 1,162개 프로그램, 공공기관 59개사 1,944개 프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상생누리 카드뉴스 발행 및 배포

- 매월 등록된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과 상생협력 관련정보 제공

* 홈페이지와 메일을 활용하여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에 배포

이용절차

○ 회원가입

▪ 회사 정보 등록 필요, 대 · 공기업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정보 등록 및 승인 필요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검색 조건 설정 가능

○ 신청접수

▪ 상생누리를 통해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기업 자체 접수(이메일, 유선 등)

○ 선정결과 확인

지원분야

○ 대 · 공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7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업혁신지원부 : 02-368-8407, 8441, 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2-5 상생결제제도

| 중소기업에게 안전한 대금지급 보장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결제제도입니다.

사업 개념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

* 상환청구권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상생결제 흐름도 >

활용 혜택

이용 절차

1. 상위기업(구매기업)의 약정여부, 약정 은행 확인(미도입 시 도입요청)
2. 상생결제 약정 체결(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3. 은행별 상생결제 사이트(www.winwinpay.or.kr내 은행별 현황 참고) 회원가입
4. 상생결제 사이트를 통해 상생결제제도 이용

구매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1차 거래기업	2~N차 거래기업
◦ 대금 결제방식 개선 - ERP, 펌뱅킹 연계 등 ◦ 결제방식 변경 안내 -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 도입 안내	◦ 금융기관 약정체결 - 구매기업 협약 금융기관 중 선택하여 약정 체결 ◦ 거래기업 대금결제 홍보 - 상생 매출채권 발행안내, 하위 거래기업 도입 안내 ◦ 매출채권 발행 - 수취금액 범위 내 상생 매출채권 발행	◦ 금융기관 약정체결 - 1차 기업 약정 금융 기관과 동일 약정체결 ◦ 거래기업 대금결제 홍보 - 상생 매출채권 발행안내, 하위 거래기업 도입 안내 ◦ 매출채권 발행 - 수취금액 범위 내 상생 매출채권 발행

도입 은행

○ 총 9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제일, 하나, 경남, 대구은행)

문 의 처

○ 상담번호 : 1670-0833(약정/시스템이용), 0834(제도 운영)

○ 홈페이지 : http://www.winwinpay.or.kr

용어설명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이란?

상위 거래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하위 거래기업 할인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거래기업들의 안전한 대금 회수를 보장합니다.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3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3-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 596
3-2 벤처기업 확인제도 ····· 598
3-3 이노비즈 확인제도 ····· 602
3-4 메인비즈 확인제도 ····· 605
3-5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608
3-6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 610
3-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613

3-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

중소기업인 여러분! 기업마당에 접속해서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기업경영에 힘이 되는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요

○ 중소기업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적시 제공하는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운영

이용 대상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기관 사업담당자 등

주요 기능

○ (정책정보 제공) 최신 분야별 지원사업, 정책뉴스, 정책브리핑(동영상)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 앱, 휴대폰 문자,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화면 : 대화형 정책검색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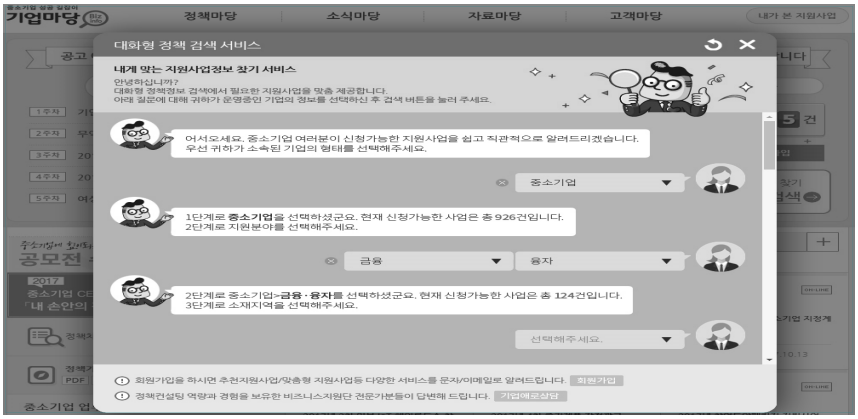

○ (부가서비스) 대화형 정책검색서비스(중기씨의 정책톡),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및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제공

○ (기업애로상담) 경영애로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하면 분야별 전문가(경영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24시간 이내 답변

< 기업마당 접속 첫 화면 >

기대효과

○ 여러 기관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적시 제공해줌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탐색 시간 절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042-481-6861

○ 중소기업연구원(운영기관) : 02-707-8230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주소

– 웹사이트 : www.bizinfo.go.kr

– 모바일웹 : m.bizinfo.go.kr

–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

3-2 벤처기업 확인제도

|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선별·육성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벤처기업 제한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심사 후 확인서 발급

유형	확 인요 건	확인기관
벤처투자	◦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 투자금액이 자본금 대비 10%(문화콘텐츠 7%)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연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증대출	◦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 기술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 부문 52점 중 31점 이상) *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기술성평가만 적용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40점 중 24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 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 벤처인(www.venturein.or.kr) 접속 후 기업등록 등 신청 (기술보증기금 ☏ 051-606-7653)
↓	
유형별 벤처확인	· 확인기관별로 유형별 벤처확인 실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확인서 발급	· 확인기관별로 유형별 벤처확인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원 혜택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6①②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58의3①②
	• 법인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벤처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지방세특례제한법§58의3③
특허	•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기업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포함	특허법시행령§9 실용신안법 시행령§5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최소업력(3년→미적용), 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 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7①
	• 중기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 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중기부공고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 제한법§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 제한법§58②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창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되기 위해 휴직 가능(5+1년)	벤처특별법§16①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 가능	벤처특별법§16의2①

분류	내 용	법적근거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 §3의2②
인력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특별법§16의3①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일반 10%, 상장 15% → 벤처 50%)	벤처특별법시행령 §11의3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시행령 §16의2①
기술임치	•기술임치 수수료 1/3 감면(신규300천원→200천원, 갱신150천원→100천원)	기술임치제도 운영요령§15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kobaco 규정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1635

○ 기술보증기금 : 051-606-765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586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2156-2133

3-3 이노비즈 확인제도

|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 · 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기준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기업 자체 실시) →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평가

* R&D 활동, 혁신 기술 개발·생산화 능력,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등

제출 서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기업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 기술사업계획서(이노비즈넷에서 온라인 입력 후 현장평가 시 인쇄) 제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9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선정 절차

온라인신청 및 자가진단 (연중)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 후 기업등록 •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및 개별기술수준평가 B등급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통과 * 기술보증기금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해당지역 평가센터 ☏ 1544-1120
↓	
확인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청에서 확인서 발급)
↓	
종합연계지원	•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지원 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평가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최대 50억)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10%) •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최대 30억)
	금리 우대	• NH농협은행 이노비즈 채움금융(최대 1.65%) • KB국민은행 운전 및 시설자금 (최대 2.8%) • 신한은행 소재·부품/스마트공장 혁신지원 (최대 1%) • 하나은행 소재·부품·장비 금융지원 (최대 1.3%) •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0.2% + 추가우대 최대 0.6%)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 자본금 30억 이상)
정책	R&D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기술혁신개발사업,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등 R&D 사업 참여 우대
	판로 및 수출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우대 •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가점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비 감면
	인력 및 기타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3-4 메인비즈 확인제도

|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선정제외 대상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영위기업
✓ 국세체납 및 신용도 취약기업(직전년도 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등)

선정 기준 경영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신청·접수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메인비즈 평가지표

○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 평가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

제출 서류

○ 메인비즈넷에 접속해 기업정보, 주생산품, 서비스품목, 재무사항 등 입력

○ 3년간 재무제표, 산업재해율확인서, 경영계획서 등 현장평가 시 제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9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고객지원센터 : 1666-5001

○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선정 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접속 후 기업등록, 자가진단결과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신청 가능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1666-5001)
↓	
현장·경영평가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평가지표에 의해 700점 이상이면 현장평가 통과 · 평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02-724-1057),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1544-1120)
↓	
확인서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	
연계혜택지원	·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 메인비즈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유예기간(3년)을 거쳐 자동 취소

지원 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정기세무 조사유예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 * 단, 탈루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관세조사 유예	•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별도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 단, 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기업은 제외
	금융지원 협약보증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0.1%)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10%할인
	금리우대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혁신기업에포함(지역별상이) • 농협 대출금리 최대 1.65%우대,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무료제공 외 • 정책자금 융자기업평가 및 한도 우대, 신성장진출지원 자금 우대
정책	R&D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가점 • 도시주택 기술.제품개발 지원가점
	판로·수출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해외규격 인증사업 가점 • 방송 광고비 감면,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지원 우대
	인력	• 산업기능 요원제도, 일학습병행제, 연구인력 파견지원 • 인쿠르트,사람인 취업포탈사이트 홍보
	컨설팅·홍보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지원사업

알려줘요! 중기씨

Q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답니다.

3-5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규제애로 해소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도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중소기업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신고·접수

○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2-2100-4941),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가능

제출 서류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처리 절차

○ 규제·애로 신고서 처리

규제애로 신고	→	접수·등록	→	조사·분석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의견제출자→옴부즈만)		규제정보시스템 등록 (옴부즈만지원단)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옴부즈만 전문위원)
				↓
사후관리	←	완료	←	부처협의
소관부처 규제개선 이행여부 점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애로 처리결과 통보 (옴부즈만→의견제출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조회 및 기관의견 재검토 (옴부즈만 전문위원)

○ 규제 의견 수렴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 원탁 협의)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

○ 규제개선 현황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원클릭 바로 알림)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업종·업태·지역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 지도 나침반)에서 지역별 규제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문 의 처

○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 옴부즈만지원단(대표) : 전화 02-2100-4900

○ 분야별 전문위원 연락처

부 서 명	전 문 분 야	연 락 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입지, 환경, 기술	02-730-2471
	판로, 기술, 상생	02-730-2408
	판로, 입지, 세제	02-730-2474
	보건, 창업, 환경	02-730-2461
	환경, 규지스 관리	02-730-2492
	금융	02-730-2477
	기타, 지방규제	02-730-2410

3-6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선정 규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제외업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 등에 따라 아래 명기된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지원 내용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제작·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신청 방식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 제출처 : (0415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5층)

심사·평가내용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혁신역량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일자리창출(3점) 기여 기업

☞ 가점 포함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지역평판, 공개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지원 내용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첨부서류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3~'18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3~'18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세청 납세증명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3년~'18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3~'18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중 4번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및 자격확인 (관리기관)	서면평가 (관리기관)
선정 및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관리기관)	현장평가 및 검증 (관리기관)

문 의 처

○ 신청·접수(관리기관)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5, 3146)

○ 신청·접수(관리기관) :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02-3275-3098)

○ 정책문의(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042-481-4363, 4376)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

○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홈페이지(www.dle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자발적 기술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드리는 혜택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내용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 (상시 적립가능)

신청·접수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을 통해 마일리지 상시적립 및 사용 가능

적립 방법

○ 교육마일리지 :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대상별로 마일리지 적립

총점 = 대상(CEO 10점, 임직원 5점) × 교육인원 × 교육시간

○ 활동마일리지 :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적립

총점 = (혁신활동 수 X 300점) + 추가가점 (혁신성과 있을 시)

○ 혁신성과 :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14. 7 이후 성과에 대해 적립)

①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 140마일리지
* 중복적립 불가, 최초 1회만 적립

② 정부사업 참여기업 : 건당 100마일리지
* 성과보상기금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③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혁신(경영, 기술)과 관련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또는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④ 매출 또는 고용증가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30% 이상 증가기업(중복 허용)

처리 절차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 교육마일리지 적립

교육프로그램 선택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마일리지넷 참조)
↓	
교육이수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	
마일리지 적립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교육기관에서 적립절차 진행)
↓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 활동마일리지 적립

혁신활동계획서 등록	경영혁신 활동계획서 작성 및 등록
↓	
혁신활동 수행결과 제출	활동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후 해당결과 제출
↓	
혁신활동 승인	평가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제출 결과보고서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
↓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활 용 처

○ 마일리지 활용가능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10억
보증	신용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기술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수출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1점
	수출컨소시엄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판로	마케팅 역량강화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정책매장 운영	
	온라인 시장진출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인력	산업기능요원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가점 5점 / 한도 외 추가 1점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1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9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83

○ 마일리지 공식홈페이지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Q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사업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면(탈락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었으나 지원대상에서 탈락 시에는 사용한 마일리지는 반환처리 되지 않습니다.
단, 확인서 발급을 받았지만 변심으로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기 전 상태에서만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 618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 621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626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 제외)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L	
임대업		N76	
교육 서비스업		P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3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창업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 후 4년 이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75%, 2년간 50%(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은 제외)은 50%)

* 청년(15~34세) 및 생계형(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0%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자 포함) 등기 및 창업 중 벤처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시 면제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도권	수도권 외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도·소매업, 의료업 5% • 상기 업종 외 15%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3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 엔젤투자 세제지원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비과세(연간 2천만원 한도)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7.5%),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 배제

4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7% 세액공제

○ 기타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	7%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기술유출 방지설비등 투자	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 투자	7%
환경보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투자	10%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6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공제규모
고용증대세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 세액 공제	700~1,100만원 (청년은 100만원 추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7백만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시 세액 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7 가업상속 지원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10년 미만:200억원, 20년이상:300억원, 30년이상:500억원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 20%) 저율로 과세

8 기타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사업(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백만원, 4천만원~1억원 3백만원, 1억원 초과 2백만원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사업자(직전년도 공급가앱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일정액을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소속	연락처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2-2110-6350 (팩스) 02-2110-066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51-601-5111 (팩스) 051-338-5180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53-626-2601 (팩스) 053-626-260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본관동 2층
경북북부사무소	(전화) 054-859-8167 (팩스) 054-859-8169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62-360-9205 (팩스) 062-366-9126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584)
전남동부사무소	(전화) 061-727-5715 (팩스) 061-727-5418	(58034)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로4로 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31-201-6800 (팩스) 031-201-6804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전화) 031-820-9001 (팩스) 031-820-901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32-818-8323 (팩스) 032-818-7469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42-865-6100 (팩스) 042-865-6189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사무소	(전화) 041-564-2286 (팩스) 041-564-3855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52-210-0011 (팩스)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33-260-1600 (팩스) 033-260-1609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전화) 033-655-4145 (팩스) 033-655-4149	(25440)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43-230-5300 (팩스) 043-235-2491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63-210-6400 (팩스) 063-210-6428	(54966)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055-268-2511 (팩스) 055-285-5382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20년 1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6859, 8913

팩 스 : (042)481-6860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